

PCT 수리관청 방식심사 매뉴얼

2026. 06.



지식재산처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국제출원과

Contents



제1편 국제출원 서류 방식심사	5
제1장 일반사항	7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수리관청 개요	7
2. 수리관청 주요 업무	7
3. 업무기간 절차	7
4. 국제출원서 접수의 의의	8
5. 국제출원을 구성하는 서류와 배치 순서	8
6. 국제출원서(중간서류 포함)의 접수방법	9
7. 서면 국제출원서의 날인 처리	10
8. 국외 통지서 접수방법	12
9. 특허넷시스템 PCT 수리관청 메뉴화면	13
제2장 국제출원서 방식심사	14
1. 의의	14
2. 특허넷시스템 『국제출원서 화면방식』 화면조작요령	15
3. 방식심사 점검사항	17
4. 『국제출원 화면방식』 주요 통지서 작성	24
5. 서면 출원서 방식 완료 후 기록원본 전자파일 생성	50
제3장 중간서류 방식심사	52
1. 중간서류의 종류	52

2. 특허넷시스템 RO 중간서류 화면방식	54
3.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55
4.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62
* Case Study 기록변경(RO/113) 통지서 작성요령	65
*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기록변경 통지서(PCT/IB/306)의 처리 ...	71
5. 포괄위임장 제출서	72
6. 수수료납부서	73
7. 보정서(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	78
8.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84
9. 서류제출서(국제조사용번역문)	85
10. 취하서의 처리	86
11. 보정서(국제출원 보정)의 처리	92
1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서 처리	97
* 중간서류 전자전송 확대 관련 스탬프 찍는 방법	100
 제4장 국제출원서 등의 전자적 전송(WIPO)	104
1. 기록원본 및 우선권 서류 등의 WIPO 송부	104
2. RO 통지서 및 중간서류 WIPO 송부	110
3. RO 조사료 납부 정보 WIPO 송부	114
 [참고] 국제출원서 등의 송부	115
1. 국제출원서 등의 표기사항	115
2. 서류의 발송	118
3. 우편을 활용한 서류 송부(서류송부통지서(RO/118) 작성)	119
4. 국제조사기관에 우편을 활용한 선조사결과 송부	121

제5장 기간관리	123
1. 기간관리의 의의	123
2. 기간관리의 대상 및 방법	123
3. 특허넷 시스템을 통한 기간관리 방법	124
 제2편 국제출원수수료	 130
제1장 수수료 점검	131
1. PCT 국제출원수수료 점검의 의의	131
2. PCT 국제출원수수료	131
3. 납부기준 및 반환	132
4. 수수료 확인	133
 제2장 수수료 송금	 137
1. PCT 국제출원수수료 송금의 의의	137
2. PCT 국제출원수수료 : 외화금액(스위스프랑) 송금	137
3. PCT 조사료 : 한화금액을 송금당일 환율로 환산한 외화금액 송금 ...	137
4. 특허넷시스템 화면조작요령	138
 제3장 수수료 변경	 141
1. 국제출원수수료 변경의 의의	141
2. 국제출원수수료 책정	141
3. 변경 수수료의 적용	142
4. RO 환율 입력/수정	150

제3편 기타	153
1. PCT 체약국 현황	155
2. WIPO 표준 국명코드 목록	156
3. PCT 수리관청 주요 기간	159
4. PCT 국제출원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160

제 1 편

국제출원 서류 방식심사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국제출원서 방식심사

제3장 중간서류 방식심사

제4장 국제출원서 등의 송부

제5장 국제출원서 등의 전자적 전송(WIPO)

제6장 기간관리

제1장 일반사항

PCT Manual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수리관청 개요

출원인(개인 또는 법인)이 PCT 국제출원을 위한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관청을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이라고 한다. PCT 국제출원서의 경우 출원인 중 최소 1인이 국적 또는 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이 관할 수리관청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PCT 제도상 이 수리관청에서의 절차를 시작으로 국제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서의 절차까지를 통상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라 하고, 이후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라 한다.

2. 수리관청 주요 업무

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PCT 출원서에 대해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나. 출원이후에 제출된 아래 중간서류에 대해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 1) 보정요구에 대한 국제출원 보정서
- 2) 수수료납부서(원화, 외화 각각)
- 3) 명칭, 주소, 명의 변경, 대리인 선임 등의 변경요청
- 4) 취하서(국제출원 또는 우선권) 등

다. 기록원본, 조사용사본, 중간서류 등을 해당 기관으로 송부한다.

라. PCT 국제출원 수수료 송금 및 수수료고시 업무를 수행한다.

3. 업무기간 절차

국내출원이 존재하고, 해당 국내출원을 우선권주장하여 그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국제출원을 진행하였을 시의 기본적인 국제단계 기간 예시는 다음 페이지 그림과 같다(기간의 단위는 “월”이다).



4. 국제출원서 접수에 의의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관청인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특허법 제28조]

5. 국제출원을 구성하는 서류와 배치 순서[Section 207]

가. 출원서(Request)

- 1) 선언(Declarations) 또는 추가용지(Supplemental sheets) -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된다.
- 2)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 국제출원의 일부분이 되지 않고, 용지 계산되지 않는다. 즉, 수수료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의무 제출 서류는 아니다.

나. 발명의 설명(Description)

- 1) Rule 5.2(b)에 언급된 free text 형태의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 필요한 경우 포함된다.
- 2) 생물학적 물질의 발명에 관한 미생물기탁증 - 필요한 경우 포함되며, 해당 부분이 출원시 발명의 설명에 포함되어야 인정되는 지정국을 고려하여 가능한 발명의 설명 마지막 부분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한다.

다. 청구범위(Claims)

라. 요약서(Abstract)

마. 도면(Drawings) -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되나, 대부분의 국제출원은 도면을

포함하고 있다.

바.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부분(Sequence listing part of description) -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 기타 첨부서류 : 위임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함께 제출한다.

※ ‘가~라’는 국제출원을 구성하는 필수 서류이며, ‘마~사’는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다.

※ ‘가~다’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다.

※ 서열목록은 파일(xml)로 만들어 전자출원시 첨부하거나 또는 서면출원시에는 저장매체(CD-R 등)에 담아 제출되어야 한다(출원시 전자파일을 규정된 형태로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국제조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출원서류 방식심사 단계에서는 별도의 보정 지시를 하지 않는다).

6. 국제출원서(중간서류 포함)의 접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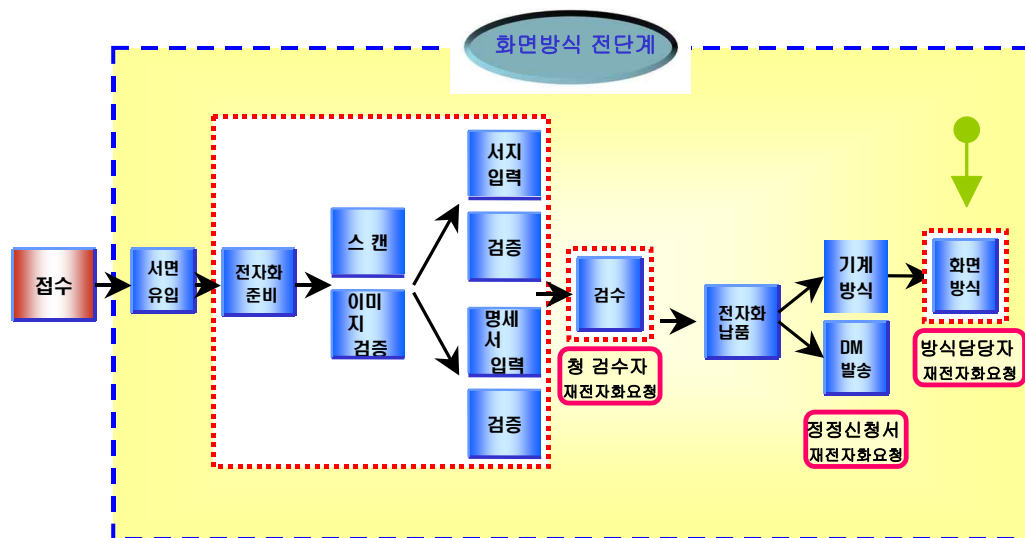
가. 방문에 의한 접수 : 서울사무소 또는 고객지원실에서 접수가능하며, 접수증을 즉시 교부한다.

나. On-line에 의한 접수 : 화면상에서 접수증을 교부한다(출력 가능).

다. 우편에 의한 접수 : 접수일은 우편물 소인일이 아닌 우편물이 지식재산청 운영지원과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팩스에 의한 접수 : 우편접수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팩스로 제출된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원본제출서를 이용하여 14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한다[Rule 92.4].

☞ 접수 후 화면방식 前 프로세스



7. 서면 국제출원서의 날인 처리[Section 305, 308, 705bis]

- 가. 출원서 : 서울사무소 또는 고객지원실에서 인계된 서면 출원서류의 출원서 (Request)에는 원본 서류 1부에는 “RECORD COPY”, 사본 1부에는 “SEARCH COPY” 인장을 각 출원서 표지(첫 페이지) 상단 좌측에 날인한다. 용지 우측 수리관청 사용란에는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및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인장을 각각 날인한다. 출원서의 마지막 페이지 수리관청 사용란에는 “국제출원으로 접수된 서류의 실제 접수일” 항목란에 해당 출원서의 접수일 인장을 날인한다. 출원서 표지(첫 페이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페이지는 용지 상단 우측에 각각 국제출원번호를 날인한다.
- 나. 출원서를 제외한 부분(발명의 설명 등) : 모든 페이지 상단 우측에 각각 국제출원번호를 날인한다.
- 다. 국제출원서 첫 번째 용지 및 발명의 설명의 첫 번째 용지 하단에 아래의 인장을 날인한다.

INTERNATIONAL APPLICATION -
ORIGINAL AS FILED ON PAPER (SECTION 705bis)

< 출원서 인장 처리 현황 >

RECORD COPY

PCT/KR 2016. / 00

OFFP162102KR

1/5

PCT 출원서

원문(제출용)

0	수리관청 전용	
0-1	국제출원번호	PCT/KR 2016. / 00
0-2	국제출원일자	03 AUG 2016 (03.08.2016.)
0-3	수리관청 명칭 및 "PCT 국제출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 C T International Application

수리관청 전용

10-1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의 실제 접수일	03 AUG 2016 (03.08.2016.)
10-2	도면	
10-2-1	접수	
10-2-2	미접수	
10-3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완성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추후 기간내 제출에 따른 결정된 실제 접수일	
10-4	PCT 제11조(2)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보완서로서 기간내 제출된 보완서의 접수일	
10-5	국제조사기관(ISA)	ISA/KR
10-6	조사료 납부시각에 지면된 조사료 사본의 송부	

국제 사무국 전용

11-1	국제 사무국의 기록원본 접수일	
------	------------------	--

8. 국외 통지서 접수방법

가. PCT 절차상 WIPO 국제사무국 또는 한국 지식재산처 이외의 선택 가능한 국제조사기관(현재 오스트리아·호주·일본특허청)으로부터 송부되는 통지서, 즉, 기관간에 송부되는 통지서는 아래 절차를 통해 접수하며, 해당 통지서의 접수일, 서식번호, 관련 국제출원번호를 입력 후 접수 처리한다.

나. 접수절차 : 특허넷 ⇨ 수리관청 ⇨ RO 통지서 접수

RO 통지서 접수
< RO 문서교환
< 수리관청

○ 기본사항

접수일자	2016	년	12	월	26	일
서식번호						서식명
국제출원번호	PCT /	KR		/		

○ 조회현황

국제출원일	
우선일	
참조기호	
출원인	
대리인	
발명의명칭	

○ 지정국 현황

Regional Patent	
AP	
EA	
EP	
OA	
National Patent	

> 접수
전자화의뢰목록
바코드출력

9. 특허넷시스템 PCT 수리관청 메뉴화면

알림 PCT방식 **결재/발송**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자정선택관청

접수

수리관청(RO)서류접수 **접수사항조회및수정(PCT)**

국제출원서전자적기록매체접수 국제출원서전자적기록매체저장

국제출원서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스캐닝 PCT중간서류전자적기록매체접수

PCT중간서류전자적기록매체저장 PCT중간서류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작성

RO 화면방식

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 **RO 중간서류 화면방식**

RO 자기지정 화면방식 **RO 통지서 방식심사**

RO 서지입력

RO 국제출원서 입력/수정 RO 중간서류 입력

RO 통지서 작성/발송

RO/105 통지서 작성 **RO 발송통지서 작성**

RO 통지서 조회/수정 **RO 발송 요청**

RO 서면발송 목록 출력 RO/118 통지서 작성

RO 수수료

RO 국제출원번호별 수수료 확인 RO 환율 입력/수정

RO 수수료 송금 **RO 납부사항확인 및 정정**

RO 기간관리

RO 문서교환

RO 기록원본 생성요청 RO 우선권송달신청 복사/전자문서 요청

RO 통지서 접수 RO 통지서 접수 조회/수정

RO WIPO전자문서 다운로드/송부 **RO 우선권 미승부 대상 리스트**

RO 통지서 WIPO 송부 RO WIPO 전자서류 EDI 전송현황 확인

RO 기타

RO 국제기관별 국제출원서 수행확인 **RO 포괄위임장제출서 조회**

WIPO 변경기록통지서 조회

출원인 정보조회

: 알림 클릭시 방식처리 대상 서류의 처리기간 확인가능

: 결재 진행 중인 서류 확인 및 회수 가능

: 매일매일 클릭해야 하는 목록

: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클릭하는 목록

제2장 PCT Manual 국제출원서 방식심사

1. 의의

가. 방식심사관 수리관청에 제출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형식상의 결함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리관청은 방식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하고,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의 정도에 따라 보정요구서(Form PCT/RO/106), 보완요구서(Form PCT/RO/103), 누락통지서(Form PCT/RO/107) 등을 발송한다.



다. 국제출원서 방식심사시 발송하는 통지서(굵은 글씨는 주요 통지서를 표기)

- 1) 국제출원 보완요구서(Form PCT/RO/103)
- 2)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Form PCT/RO/105)
- 3) 국제출원의 흠결 보정요구서(Form PCT/RO/106)
- 4)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관한 요구서(Form PCT/RO/107)
- 5)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 요구서(Form PCT/RO/108)
- 6) 우선권주장 보정요구서 및/또는 우선권회복 신청 가능성에 관한 통지서 (Form PCT/RO/110)
- 7)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신(Form PCT/RO/132)
- 8) 직권정정통지서(Form PCT/RO/146)
- 9) 위임장 또는 해임서 흠결 통지서(Form PCT/RO/124)
- 10) 수리관청으로서 국제사무국에의 국제출원 송부통지서 및 수수료 납부요구서(Form PCT/RO/151)

2. 특허넷시스템 『국제출원서 화면방식』 화면조작요령

- 가. 방식대상 확인 : 『수리관청』 → 『RO 화면방식』 → 『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
 나. 『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 화면설명

- ① 일차적인 전산방식결과 출원서류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보여주게 되며, 수리/보정/보완 건이 있으면 담당자별로 해당 처리대상 건수가 오른쪽에 표기된다.
- ② 국제출원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란으로, 주로 방식심사가 이미 완료된 출원에 대하여 보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
- ③ 담당자 또는 전체 방식담당자에게 배분된 건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①]에 나온 건수의 실제 처리대상 리스트가 표기된다.
 - ※ 출원번호 앞의 파란점은 해당 서류가 접수된 후 일정 기한이 경과(4일 이상)한 것을 의미한다.
 - ※ 국제출원번호 앞에 화살표(→)가 존재시에 그 출원 건은 국제조사기관이 한국이 아닌 경우, 즉, AU, AT, JP, SG인 경우를 표기한 것이다.
- ⑤ 각각의 서류가 접수된 형태를 나타내며 ‘ON’은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이고, ‘서면’은 서울사무소 또는 고객지원실(민원실)에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였거나 또는 우편으로 서류가 접수된 것을 의미한다.

- ※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전자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방식심사 담당자에게 배분되므로 해당 서면 서류가 배분된 후, 방식심사를 한다.
- ⑥ [④]의 출원번호를 선택하면, 출원서 서지정보가 화면에 표기되고, 해당 국제출원의 각종 정보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국제출원열람] 화면이 추가로 생성된다.
- ⑦ 출원서 내에 하자가 존재하면, 시스템에서 전산방식결과를 화면에 띄워준다.
- ⑧ 해당 출원에 대한 수리, 보정, 직권정정, 위임사항 입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버튼이 배치되어 있다.

[참고] 주요버튼 설명

1. 통지서 작성

- 가) 수리 : p. 24 참고
- 나) 보정 : p. 24 참고
- 다) 누락통지 :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면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거나 발명의 설명에 도면 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RO/107 통지서를 만들 때 사용한다.
- 라) 우선권 주장 : 우선권 주장이 존재하는 출원 건에 우선권 하자 발생시(우선권 번호 또는 우선일 불일치 등) 우선권보정요구서(RO/110)를 만들 때 사용한다.
- 마) RO/132 : 특정서식이 없는 통지서를 만들 때 사용한다.
- 바) RO/146 : 직권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직권정정통지서를 만들 때 사용한다.

2. 수정/입력

- 가) 직권정정 : 출원서의 사소한 결함을 담당자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p. 22 직권정정 참고).
 - 나) 위임사항 입력 : 출원서에 대리인이 존재할 시에 클릭하며, 특허넷에 대리인이 입력되면 향후 통지서가 입력된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 ※ 위임입력 누락시 발송 서류가 출원인에게 송부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3. 조회

- 가) 대리인조회 : 부정확한 대리인 정보 존재시 대리인번호를 입력하면, 특허넷에 등록된 대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나) 제출서류보기 : 위임장, 선언서, 서열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⑨ 국내출원, 국제출원 및 출원인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현황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3. 방식심사 점검사항

가. 출원서(Request) 점검사항

* [한] 표시는 한국어 출원일 경우만 해당되는 점검 사항

BOX 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Section 109)

- 가. 2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라틴문자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두 개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하이픈 기호(“-”)도 사용될 수 있다.

BOX I 발명의 명칭

- 가. 발명의 설명상의 발명의 명칭과 출원서(Request)상의 발명의 명칭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
 ※ 위임장 존재시 위임장내 발명의 명칭도 동일성을 확인한다.
 나. 영문 발명의 명칭의 경우 모두 대문자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한] 한국어로만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영문 병기 불허).

BOX II 출원인

- 가. 구분 항목에 개인/법인 항목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맞지 않을 시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
 나. 출원인의 지정국 상태를 확인한다(보통 ‘모든 지정국(all designated states)’으로 출원된다).
 다. 출원인(검 발명자) 명칭 및 주소 점검사항

점검사항	올바른 예시
법인 명칭이 모두 대문자로 기재되었는가?	LG CHEM, LTD.
개인의 영문성명 기재가 올바른가?	HONG, Gil Dong / HONG, Gildong / HONG, Gil-Dong / HONG, Gil-dong
도로명 주소와 5자리 우편번호를 기재했는가?	대한민국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대한민국 영문 국가명 기재가 올바른가?	Republic of Korea

※ 참고 : 홍콩은 우편번호가 없음

※ 출원인 명칭 중 법인구분(CO., LTD. 등)으로 한글과 영문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보정(RO/106) 통지한다.

- 라.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국 기재 여부 : ‘공식 국가명’ 또는 ‘PCT 계약국 Two-letter Codes’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예 : 대한민국 ⇒ KR, 미국 ⇒ US).

※ 국적·주소 관련 출원인 적격 여부 확인[특허법 제192조, 시행규칙 제90조]

※ [한] 서면 서류 ⇒ 대한민국 KR (대한민국 X / KR X)

- 마. [한] 성명, 주소, 국적, 거주국 등은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가 되어야 한다.

- 바. [한] 한국어 주소와 영어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괄호 주소 포함).

※ 한국어 주소와 영어 주소의 기재 순서 불일치는 보정 대상은 아니다.

BOX III 추가출원인 또는 발명자

- 가. 추가출원인(발명자)이 있을 시 바른 정보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서면 출원서에서 “Inventor Only:” 항목이 체크된 경우에는 거주국, 국적, 지정국란에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항목(거주국, 국적, 지정국)을 수리관

청이 직권으로 삭제한다.

다. 출원시에 발명자는 사실상 필수로 기재해야하나, 출원서에 발명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발명자를 ‘추가’하도록 안내한다.

BOX IV 대리인/대표자 및 통신용 주소

가. 본란에 기재된 개인(법인)이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성명, 주소(한글,영문,이메일)의 정확한 기재 및 해당란에 정확하게 체크했는지를 확인한다.

※ 통신용 주소가 기재된 경우 중, 해당 주소가 Box II 또는 Box III의 출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용 주소 정보는 수리관청이 직권으로 삭제한다.

BOX V 지정국[Rule 4.9(b)]

가. 본 항목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지정을 제외한다, 즉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현재 본 항목에 지정제외를 기재할 수 있는 국가는 DE, KR, JP 3개국이다.

[점검 사항]

나. Box VI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에 국내출원(DE, KR, JP)이 없는데, 지정제외 국가를 기재한 경우

⇒ 해당 지정제외 정보가 직권정정 처리될 사항임을 알리는 RO/132 통지서를 발송

다. Box VI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에 “KR” 국내출원이 있는데, “KR” 지정제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RO 자기지정 화면방식』에서 해당 국내출원의 출원인 정보와 국제출원서의 출원인 정보(명칭, 주소)가 동일한 것이 확인되면,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에 의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국내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간주됨을 알리는 RO/132 통지서를 발송한다.

[참고 사항]

☞ 우선권으로 기재한 국내출원의 출원인 정보와 국제출원서의 출원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취하간주 대상이 아니므로 RO/132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

☞ 우선권으로 기재한 국내출원의 등록 결정이 국제출원일보다 빠른 경우, 해당 국내출원은 취하간주 대상이 아니므로 『RO 자기지정 화면방식』의 방식대상목록에 생성되지 않는다.

BOX VI 우선권주장

가.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선출원의 국가코드, 출원일, 출원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한다.

나. 국제출원이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KR 선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열람]** 화면의 우선권주장날짜를 클릭하여 제출정보의 출원번호와 출원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우선권주장 정보 불일치 또는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보정요구서(RO/110)를 작성한다.

BOX VII 국제조사기관

출원인이 관할 국제조사기관(KR, AU, AT, JP, SG)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한다.

BOX IX 체크리스트

가. 출원서, 발명의 설명 등의 매수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서면 출원일 경우, 서류의 실제 매수와 전자화 처리된 특허넷의 매수가 다르므로, 반드시 매수를 확인하고, 서로 다를 경우 서면 출원과 동일하게 매수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나. 요약서에 수반되어야 할 도면번호(공개 희망 대표 도면번호)

※ 출원에 존재하는 도면 번호인지 확인, 아닌 경우 직권으로 삭제하고 RO/146 통지한다.

※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며, 미기재시 국제조사기관 심사관이 대표 도면을 특정한다.[Rule. 8.2]

다. 첨부서류내역을 점검한다(위임장 첨부 여부 등 확인).

라. 국제출원언어: 출원서·발명의 설명·청구범위·요약서·도면의 언어와 동일 여부를 확인한다. 출원언어가 다를 경우 보정요구서를 작성한다.

BOX X 서명 [Rule. 4.15]

가. 원칙적으로 모든 출원인의 서명이 필요하다.[Rule. 4.15(a)]

나. 예외적으로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들 중 1인의 서명으로 충분하다.[Rule 26.2bis]

다.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모든 출원인의 위임장 첨부를 확인한다. 다만, 모든 출원인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아도 보정대상은 아니다.

※ 출원서에 모든 출원인의 서명이 있고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출원서 자체를 개별 위임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은 없어도 된다.

※ 모든 출원인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후 취하서 등의 서류 처리시 출원당시 미제출된 출원인의 위임장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라. 인장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인장이 선명인지 확인한다.

- 인장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만일 날인 공간에 인장이 비어있는 경우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넷시스템 담당자에게 인장의 유/무를 확인 요청한다.

마. 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적서명의 형식이 맞는지 확인한다.

※ 개인이 아닌 법인의 PKCS7 전자서명 기재시 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에서 BOX.X의 서명인의 성명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바. ePCT 출원의 경우 인장 날인, 전자서명 외에 텍스트 서명이 가능하며 올바른 텍스트 서명의 형식은 다음을 참고한다.

X-1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홍길동/
X-1-1	성명	특허법인 한국
X-1-2	서명인의 성명	홍길동
X-1-3	권한	대표

▶ 기타: 국방상 필요한 발명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 규정 : 특허법 제41조,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의2 제③항

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점검 사항 [Rule 5, 6, 8, 11]

- 1) 국제출원언어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2) ‘발명의 설명’상의 [발명의 명칭]과 Request Box No.1의 [발명의 명칭]은 반드시 일치(띄어쓰기 일치 포함)하여야 하고, 국제출원언어로만 발명의 명칭을 기재한다(한국어 출원의 경우 한국어 명칭 외 영어 병기 불가).
※ 발명의 명칭 한영병기시, 직권정정하고 RO/146를 통지한다.(발명의 설명은 RO/146만 통지한다.)
- 3) 반드시 워드프로세서 또는 타자로 작성된 인쇄물로 제출한다.
- 4) 용지여백 : 상 : 2cm, 하 : 2cm, 좌 : 2.5cm, 우 : 2cm
- 5) 발명의 설명→청구범위→요약서까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Page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Page번호도 상하 여백 2cm를 띄우고 중앙 상단 또는 하단에 기재).
- 6) 숫자 및 문자의 크기는 세로 0.28cm 이상
- 7) 도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단, 화학식, 수식, 표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에 사용할 수 있다(만약, 가로로 배치할 경우 화학식, 수식, 또는 표의 상단이 용지의 좌측에 오도록 배치한다). [Rule 11.10]
- 8) 국제출원의 각 부분(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은 새로운 용지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Rule 11.4]
- 9) 청구항의 번호는 순서대로 기재하되, “청구항 1”과 같은 형태로 기재한다.
- 10) 서열목록
 - 서열목록은 발명의 설명과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하여 출원서류의 마지막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다음)에 배치하며, 아라비아 숫자 1로 시작하는 별도의 페이지 번호를 부여한다. 전자출원의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서면 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 계산시 포함된다.

Tip

서열목록을 출원의 한 부분으로 ST.26에 맞추어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서면출원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11) 미생물기탁증 제출방법 [Rule 13bis]

- 가) 미생물기탁 증명서류는 발명의 설명 마지막 Page에 포함시켜 작성하며, 수수료 계산 시에 포함된다.

나) 미생물기탁 증명서류는 PCT/RO/134(한글/영문서식)를 사용하거나, 기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 단, 발명의 설명을 영어로 작성하였으면 영어서식을 제출하고, 한국어로 작성하였으면 국어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 국제출원언어와 미생물 기탁증의 언어가 불일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직권정정하거나 RO/108(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요구서)를 통지한다.

Tip 요약서

1. 요약서 분량은 영어단어 기준으로 50~150 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Rule 8.1(b)]. 단, 보정요구 대상은 아니며(GL/RO para 147), 국제조사기관의 심사관이 수정한다.[Rule 38]
2. 요약서가 없거나, 출원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 통지한다.
3. 서면 출원일 경우, 국내출원서 내용을 모방하여 요약서에 대표도면번호와 색인어 등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요약서에 대표도면번호와 색인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국제조사기관의 심사관이 수정할 수 있으므로 보정 통지대상은 아니다).

다. 도면 점검사항 [Article 7, Rule 7, Rule 11]

1) 도면의 용지번호와 도면번호 확인

가) 용지번호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와 구별되는 별도의 Page번호를 기재한다(중앙 상단 또는 하단).

(예시) 도면이 5Page인 경우 : 1/5, 2/5, 3/5, 4/5, 5/5

나) 도면번호 : 용지번호와 별도로 각각의 도면마다 도면번호를 기재한다.

(예시) ‘도1, 도2, 도3a, 도3b, 도4’ 또는 ‘Fig.1, Fig.2, Fig.3a, Fig.3b, Fig.4’

2) 도면의 상태 확인

가) 선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나) 간결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은 숫자, 문자 및 인출선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 도면의 모든 선은 제도용구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3) 도면을 가로로 배열할 경우, 반드시 도의 상단이 용지의 좌측으로 향하도록 배치한다.

4) 도면에 포함되어있는 숫자 및 문자의 크기는 세로 0.32cm이상이어야 한다.

5) 도면에 사용하는 문구는 국제출원언어를 사용한다.

6) 용지에 테두리는 표시하지 않는다.

7) 용지여백 : 상 : 2.5cm, 하 : 1cm, 좌 : 2.5cm, 우 : 1.5cm

8)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도면의 설명 부분과 비교하여 도면의 누락 여부 확인한다.

[참고] 직권정정

1. 의의 : 기록원본(Record Copy)이 아직 국제사무국에 송부되지 않았고, 출원서가 일관성이 없거나 사소한 흠결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요할 경우에, 수리관청은 직권으로 출원서를 정정할 수 있다.[Section 327]
2.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흠결 [RO Guidelines 제162항]
 - 가. 조약 규칙 제4.1조 내지 제4.18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시행세칙이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Rule 4.19]
 - 나. 국가명이 표준 2문자 코드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다. 국제출원의 용지 번호를 다시 붙이는 경우 [Section 311]
 - 라. PCT 체약국이 아닌 국가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취소 [Section 318]
 - 마. 국제출원 관련 일자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 [Section 110]
 - 바. 조약규칙 제4.17조(Rule 4.17)의 선언서에 대하여는 직권정정을 행할 수 없다.[Section 327] 하지만, 출원서의 Box No. Ⅷ의 체크박스 부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선언의 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권정정할 수 있다. [RO Guidelines 192B]

Tip 아래 사항은 국제사무국(IB)에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수리관청(RO)은 직권정정할 필요가 없다. [RO Guidelines 161A]

- 서류번호의 글자 수를 25자로 감축 [Section 109]
- Esq., Dr. 등과 같은 직함의 기재 삭제
- 출원인, 발명자 및/또는 대리인의 성을 표시하게 위해 밑줄 긋기
- 건물 번호 앞에 거리와 같은 주소에 기재된 정보의 순서 변경

3. 직권정정 방식
 - 온라인 출원은 특허넷 시스템에서 직권정정이 가능하며, 직권정정하면 첨부파일에 직권정정된 국제출원서 PDF 파일이 생성된다(“국제출원서(원본)”과 대비).
 - 서면 출원의 경우 삭제될 부분은 []로 묶고 사선(\)을 그은 다음 ▲▲ 기호표시, 수정이나 추가될 부분은 ▲ 표시한 후 여백에 행위자 및 어떤 수정(▲▲ Deleted by RO, 수정이나 추가는 ▲ RO 기호표시)이었는지를 기록한다.
- ※ 다음 페이지 <출원서 직권정정 예시> 참고

<출원서 직권정정 예시>

PCT 출원서 아래 서명자는 이 국제출원이 특허협약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을 청구합니다.		수리관청 전용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수리관청 평칭 및 "PCT 국제출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접수번호 PCT-20240005 (필요하는 경우 기재) (최대 25문자)	
제1기제관 발명의 명칭			
댄싱 머신 [DANCING MACHINE]			
제2기제관 출원인 ☒ 이 단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설명(명칭) 및 주소: (상 다음에 이름을 적음; 발명의 경우 관련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안에 적은 주소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주식회사 댄스전자 대한민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5층 DANCE ELECTRONIC CO., LTD. 15F, Cheongsaro-ro189,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이메일 주소* yesol2@korea.kr 전화번호 042-481-5202 팩스번호 042-472-3473 특허고객번호	
* 이메일 송부 동의: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칸에 표시한다. ☐ 무관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국적 (국가명) KR 대한민국		거주국 (국가명) KR 대한민국	
이 칸에 적은 자는 다음: ☐ 모든 지정국 ☐ 추가기제관에 표시된 국가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제3기제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제4기제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아래에 적은 자는 관한 국제기제관에 대하여 우측에 표시된 자격: ☒ 대리인 ☐ 대표자 으로 출원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선임되었다.			
설명 및 주소: (상 다음에 이름을 적음; 발명의 경우 관련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정여송 대한민국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Mrs.] Yesol JEONG Dunsan-ro 100, Seogu, Daejeon 35242 Republic of Korea		이메일 주소* yesol2@korea.kr 전화번호 042-481-5202 팩스번호 1544-6080 대리인번호 9-0000-000000-0	
* 이메일 송부 동의: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칸에 표시한다. ☐ 무관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 DELETED BY RO

4. 『국제출원 화면방식』 주요 통지서 작성

가. 수리

- 1) 결함이나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국제출원서(Request)를 수리한다. 수리시 해당 출원번호는 리스트에서 사라진다.
- 2) 출원서 접수일을 출원일로 보고, 방식심사 직후 『RO 통지서 작성/발송』 → 『RO/105 통지서 작성』에 들어가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Form PCT/RO/105)'를 결재상신한다. [Rule 20.2]
 ※ 수리 후 직권정정을 원할 경우, 'RO/105 통지서 작성' 화면에서 해당 국제출원을 클릭 후 회수 버튼을 누르면 회수가 가능하다.

나. 보정

- 1) 보정 요구 [Article 14(1)(b), Rule 26]
 - 국제출원일 인정요건[Article 11(1)]은 충족하지만, 형식상 결함[Article 14(1)(a), Rule 26.3]이 있을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보정요구를 한다.

2) 처리 방법

가) 방식심사 결과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의 보정 대상이면  을 클릭하고 리스트에서 해당 보정항목에 체크한 후  을 클릭하면 해당 통지서 작성 화면이 생성된다.

* 첨부서류 중 위임장에 대한 보정은  를 클릭하여 '위임장 또는 해임서 함결 통지서(Form PCT/RO/124)'를 작성한다.

나) '국제출원의 함결 보정요구서(Form PCT/RO/106)' 통지서 작성

- 보정명령에 따른 세부사항을 입력하여 출원인의 이해를 도모한다.



『예』 □ 도면의 축소복사시 세부사항이 선명하지 못함. Page No. 3/4(Fig.4, Fig.5)

-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출원번호는 리스트에서 사라지며 RO/105 통지서 작성 탭으로 넘어간다.
- 출원서 접수일을 출원일로 보고, 방식심사 직후 『RO 통지서 작성/발송』 → 『RO/105 통지서 작성』에 들어가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

(Form PCT/RO/105)’를 결재 상신한다. [Rule 20.2]]

- 국제출원의 흠결 보정요구서는 출원인에게 발송하고, 그 사본은 국제사무국에 송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결재 후 출원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면, 그 사본은 각 출원번호 담당자가 전자적 전송방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참고] 기타 사항

1. 국제출원언어를 일본어로 선택한 경우,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5항).
 - ※ 국제출원언어를 일본어로 선택했으나, 국제조사기관을 일본어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중간서류 방식심사』 「9.서류제출서(국제조사용번역문)의 처리」 참고
2. 수리관청에서 사용하는 통지서의 언어는 국제출원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원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경우(출원인에게만 발송되는 통지서의 경우) 당해 수리관청의 공식 언어 중의 하나인 다른 언어로 할 수 있다. [PCT 시행세칙 Section 103(a)]

3) ‘국제출원의 흠결 보정요구서(Form PCT/RO/106)’ 서식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담 당 사 무 관
발신: 수리관청 수신:	PCT 국제출원보정요구서 (PCT 3(4)(i) 및 14(1); 규칙 26)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발송일 (일/월/년)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	국제출원일자 (일/월/년) 2018년 01월 02일 (02.01.2018)	
출원인		
1. ☒ 출원인은 기재출원인 이 국제출원에 있어서, 아래의 첨부물에 열거된 흠결에 대하여 위의 지정기 한내에 이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록 A ☒ 부록 B1 (국제출원의 서식상의 요건에 관한 사항) ☒ 부록 C1 (국제출원의 도면에 관한 사항) 해당 박스는 자동으로 체크됨 2. ☐ 출원인은 규칙 12.3 및 12.4에 의하여 기재출원인 국제출원면역문에 있어서, 아래의 첨부물에 열거된 흠결에 대하여 위의 지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록 A ☐ 부록 B2 (국제출원면역문의 서식상의 요건에 관한 사항) ☐ 부록 C2 (국제출원면역문의 도면에 관한 사항) 해당 박스는 사용 안함 기타사항(필요한 경우): - 발명자(홍길동)의 한글과 영문 주소가 불일치합니다. 출원인을 제외한 발명자, 대리인 기재에 관한 흠결 사항 기재 * 서지사항의 기타 서식상요건의 미흡(표지) 체크 흠결의 보정방법: 흠결이 출원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정은 보정을 포함하는 대체용지 및 대체용지에 수반되는 서한을 제출함으로써 행해져야 하며, 서한에는 대체되는 용지와 대체용지사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합니다. 출원서상의 흠결에 대하여는, 기록원본의 출원서에 명확하게 옮겨적을 수 있는 것인 경우에만 서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규칙 26.4). 주의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규칙 26.5). 이 보정요구서와 첨부물의 사본은 국제사무국(☐ 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었습니다.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 42 472 3473 서식 PCT/RO/106 (2012년 9월 16일)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8755		

서식 PCT/RO/106 부록 A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
이 국제출원의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출원의 서명*에 관하여 (규칙 4.15, 26.2bis(a) 및 90.4), 출원서에:	
a. ☐ 출원인의 서명(출원인이 2이상인 경우 최소한 1인)이 누락됨.*	
b. ☒ 대리인/대표자로 보이는 자가 서명을 하였으나, 국제출원에 출원인 중 최소1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	
c. ☒ 기타(상술):	
화면방식에서 보정 체크한 것이 자동으로 체크됨	
기타 서명에 관한 보정사항 체크시 상세 설명 기재 가능	
* 출원인은 각 지정관청의 국내법상 국내단계에서 국제출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출원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출원인의 서명을 통해 국제출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규칙 51bis.1(a)(vi)).	
2. 규칙 19.1에 의거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출원인의 기재에 관하여, 출원서에 (규칙 4.4, 4.5 및 26.2bis(b)):	
a. ☐ 출원인의 성명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았음(상술):	
b. ☐ 출원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음.	
c. ☐ 출원인의 주소를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았음(상술):	
d. ☐ 출원인의 국적을 기재하지 않았음.	
e. ☐ 출원인의 거주지를 기재하지 않았음.	
☐ 다른 출원인에 관한 기재에 대한 추가사항(있는 경우):	
* 규칙 4.4 및 4.5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14(1)(a)(ii)의 요건상 출원인, 또는 출원인이 여러명인 경우 출원인 각각에 관한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규칙 4.5(a)(ii) 및 (iii)에 의한 기재는 출원인 중 규칙 19.1에 따라 국제출원할 자격이 있는 출원인 중 1인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규칙 26.2bis(b)). 그러나, 출원인은 각 지정관청의 국내법상 국내단계에서 국제출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국을 위한 출원인에 대하여 규칙 4.5(a)(ii) 및 (iii)에 따른 누락된 기재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규칙 51bis.1(a)(vii)).	
3.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제외한 국제출원의 언어에 관하여(규칙 12.1(c), 26.3ter(a) 및 (c):	
a. ☐ 출원서가 당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공개언어인 _____ 로 작성되지 않았음	
b. ☐ 도면중 설명부분이 이 국제출원이 공개될 언어인 _____ 로 작성되지 않았음	
☐ 요약서가 이 국제출원이 공개될 언어인 _____ 로 작성되지 않았음	
4. 발명의 명칭이:	
a. ☐ 출원서 박스번호 1에 기재되지 않았음(규칙 4.1 (a)).	
b. ☐ 발명의 설명 첫 페이지의 첫머리에 기재되지 않았음(규칙 5.1 (a)).	
c. ☐ 출원서 박스번호 1의 기재와 발명의설명 첫 머리에 표시된 것이 일치하지 아니함(규칙 5.1(a)).	
5. 요약서에 관하여(규칙 8 및 26.1):	
☐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지 않았음.	
서식 PCT/RO/106 (부록 A) (2012년 9월 16일)	

서식 PCT/RO/106 부록 B1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			
이 국제출원의 서식상의 요건이 아래와 같은 정도까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1. ☒ 균일한 국제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규칙 11 및 26.3(a)(i))(검함을 상술):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요약서	
a. ☐ 직접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	☐	☐	
b. ☐ 각 요소가 별개의 용지에 작성되지 않았음.	☐	☐	☐	☐	
c. ☐ 용지에 주름 또는 찢어진 곳이 있거나, 접어진곳이 있음.	☐	☐	☐	☐	
d. ☐ 용지를 세로로 사용하지 않았음.	☐	☐	☐	☐	
e. ☐ 용지의 양면을 사용했음.	☐	☐	☐	☐	
f. ☐ 유연성있는/튼튼한/흰색의/무드러운/무광택의/내구성 있는 종이 아님.	☐	☐	☐	☐	
g. ☐ 용지가 규정대로 천하여지지 않았음.(규칙 11.4 (b)).	☐	☐	☐	☐	
h. ☐ 용지가 A4사이즈 (29.7cm x 21cm)가 아님.	☐	☐	☐	☐	
i. ☐ 최소어백이 규정에 미치지 못함. (상단: 2cm; 좌단: 2.5cm; 우단: 2cm; 하단: 2cm).	☐	☐	☐	☐	
j. ☐ 서류번호가 용지의 상단으로부터 1.5cm이내의 좌측 구석이 아닌 곳에 기재되어 있음.	☐	☐	☐	☐	
k. ☐ 서류번호의 문자수가 12자를 초과함.	☐	☐	☐	☐	
l.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요약서의 용지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았음.	☐	☐	☐	☐	
m. ☐ 용지번호가 용지의 상단 또는 하단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음.	☐	☐	☐	☐	
n. ☐ 용지번호가 어백에 위치함(어백의 크기는 위 i. 참조)	☐	☐	☐	☐	
o. ☐ 문언이 타자 또는 인쇄되지 않았음.	☐	☐	☐	☐	
p. ☐ 타자에 의한 경우, 행의 간격이 1.5문자폭이 아님.	☐	☐	☐	☐	
q. ☐ 기재사항 중 대문자의 크기가 세로 0.28cm미만임.	☐	☐	☐	☐	
r. ☐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색으로 기재되지 않았음.	☐	☐	☐	☐	
s. ☒ 각 요소가 도면을 포함함.	☐	☒	☐	☐	
t. ☐ 용지에 변경/덧쓰기/행간삽입/과도한 삭제가 있음.	☐	☐	☐	☐	
u. ☐ 용지에 복사한 흔적이 있음.	☐	☐	☐	☐	
2. ☐ 만족스러운 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규칙 11 및 26.3(b)(i)).					
기타사항(필요한 경우):					
- 발명의 설명 3페이지에 도면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서식상요건의 미흡(부록 B1) 체크시 상세 설명 기재 가능					
- 명백한 잘못이 존재하여 보정된 내용이 최초 출원서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경경(PCT 규칙91.1, 설명서첨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 심사관이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서식PCT/RO/106 (부록 B1) (2012년 9월 16일)

서식 PCT/RO/106 부록 C1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
---------------------	--------------------------------

이 국제출원의 도면이 아래와 같은 정도까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1. ☒ 균일한 국제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규칙 11 및 26.3(a)(i)) (결함은 상술):

도면이 그려진 용지:

- a. ☐ 직접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b. ☐ 용지에 주름 또는 찢어진 곳이 있거나, 접어진 곳이 있음
- c. ☐ 용지의 양면을 사용했음
- d. ☐ 유연성 있는/튼튼한/흰색의/ 무드러운/무광택의/대구성 있는 종이여야함.
- e. ☐ 도면이 별개의 용지에 작성되지 않았음.
- f. ☐ 용지가 규정대로 절하여지지 않았음(규칙 11.4(b)).
- g. ☐ 용지가 A4사이즈 (29.7cm x 21cm)가 아님.
- h. ☐ 최소여백이 규정에 미치지 못함
(상단: 2.5cm; 좌단: 2.5cm; 우단: 1.5cm; 하단: 1cm).
- i. ☐ 서류번호가 용지의 상단으로부터 1.5cm 이내의 좌측구석이 아닌곳에 기재되어 있음.
- j. ☐ 서류번호의 문자수가 12자를 초과함.
- k. ☐ 용지의 사용할 수 있는 면 또는 사용한 면의 테두리를 표시함.
- l. ☐ 용지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았음 (예: 1/3, 2/3, 3/3).
- m. ☐ 용지번호가 용지의 상단 또는 하단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음.
- n. ☐ 용지번호가 여백에 위치함(여백의 크기는 위 h. 참조)
- o. ☐ 용지에 변경/덧쓰기/행간삽입/좌도한 삭제 있음.
- p. ☐ 용지에 복사한 흔적이 있음.

도면 (규칙 11.13):

- a. ☐ 직접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b. ☐ 불필요한 문원을 기재함.
- c. ☐ 번역할 경우, 어구가 도면의 선을 침범함.
- d. ☒ 내구성 있는 흑색으로 작성되지 않았음: 선은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음.
- e. ☐ 절단면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았음.
- f. ☐ 축소복제하는 경우 쉽게 식별되지 못함.
- g. ☐ 축적이 도식으로 표시되지 않았음.
- h. ☒ 간격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은 숫자, 문자 및 인출선이 있음.
- i. ☐ 재도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른 선이 있음.
- j. ☐ 도가 불필요하게 다른 비율로 표시된 부분이 있음.
- k. ☐ 세로 0.32cm미만인 숫자 및 문자가 있음.
- l. ☐ 라틴문자 및 관계적인 그리스 문자와 무관하지 않는 문자가 있음.
- m. ☐ 2이상의 용지에 그려진 도형들이 일부분을 생략하지 않고는 한 개의 도형을 구성토록 함치지 않음.
- n. ☐ 올바르게 배열되지 않고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도가 있음.
- o. ☐ 연속된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은 도가 있음.
- p. ☐ 용지의 번호와는 관계없이 번호를 붙이지 않은 도가 있음.
- q. ☐ 발명의 설명에 사용하지 않은 인용부호를 사용했음.
- r. ☐ 발명의 설명에 사용된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았음.
- s. ☐ 동일한 부분이 서로 다른 인용부호로써 표시됨.
- t. ☐ 도의 상하가 바르게 되어있지 않고, 개개의 도가 상호 충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음.
- u. ☐ 도를 가로로 배열한 경우, 도의 상단이 용지의 좌측에 배열하지 않았음.

2. ☐ 만족스러운 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규칙 11 및 26.3(b)(i)).

기타 도면에 관한 흠결사항 체크시 상세 설명 기재 가능

기타사항(필요한 경우):

[도 1, 5]

- 명백한 잘못이 존재하여 보정된 내용이 최초 출원서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PCT 규칙 91.1, 설명서첨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 심사관이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서식 PCT/RO/106 (부록 C1) (2012년 9월 16일)

다. 보완

1) 보완 요구 [Article 11(2)(a), Rule 20.3]

- 국제출원일 인정요건[Article 11(1)]을 충족하지 않아, 국제출원을 인정 받지 못할 정도의 흠결이 있을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국제출원 보완요구서(Form PCT/RO/103)를 발송한다.
- 보완서를 제출하여 하자가 치유된 경우에 보완서 제출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

2) 처리 방법 [PCT/GL/RO Paragraphs 45 ~ 54]

가) 방식심사 후 보완 대상이면 **보완**을 클릭하고, 리스트에서 해당 보완항목을 체크한 후 **통지서작성**을 클릭하면 해당 통지서 작성 화면이 생성된다.

나) ‘국제출원 보완요구서(PCT/RO/103)’ 통지서 작성

- 답변기간 입력 :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자동 입력된다.
- 보완명령에 따른 세부사항을 입력한다.
- 답변기간이 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통지서 하단의 마지막 체크박스에 체크한다).
- 작성이 완료된 보완요구서는 결재 후 출원인에게 발송한다.

※ 참 고 : 보정 / 보완 비교

구 분	보 정	보 완
출원일	국제출원으로 인정(=출원일 인정) - 국제출원일의 인정요건[Article 11(1)]을 충족하여, 국제출원서가 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로 인정된다.	국제출원으로 불인정 - 국제출원일의 인정요건[Article 11(1)]을 수리시에 충족하지 않아, 접수일이 국제출원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보완서가 수리관청에 도달하여 하자 치유가 되면, 보완서가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로 인정된다.[Article 11(2)(b)]
방식 요건	i) 발명의 명칭 기재 여부 ii) 요약서 제출 여부 iii) 기타 특허법 및 관련규정 준수	i) 출원인의 국적, 주소가 당해 수리관청에 적격한가? ii)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가 수리관청이 인정

구 분	보 정	보 완
	- 성명, 주소, 국적, 거주국 기재방법 확인 - 우선권 서류, 자가지정 확인 - 서명, 위임장 확인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확인 ※ 단, 발명자 미기재는 보정대상은 아니다(발명자 변경 안내).	하는 국제출원언어로 작성되었는가? iii)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가? -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유무 - 하나 이상의 계약국 지정 여부 - 출원인의 성명(명칭) 유무 -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유무
처리 방법	① 보정요구서(Form PCT/RO/106) 발송 ② 보정서가 수리되면, 국제사무국(IB)에 대체용지(Substitute Sheet) 송부하고 처음부터 결함이 없던 것으로 취급한다. [Rule.26, 시행규칙 101조] ③ 보정서 제출기한(원칙: 2개월)[Rule.26.2]내에 제출이 없으면 취하간주를 결정할 수 있다.[Article.14(1)(b), Rule.26.5] ※ 보정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보정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지만, 실무적으로 기간에 구애 없이 수리한다.[Rule.26.2]	① 보완요구서(Form PCT/RO/103) 발송 ② 보완서가 수리되면 보완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Article.11(2)(b), Rule.20.3] ③ 보완서 제출기한[Rule.20.7]내 보완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않음을 통지한다(Form PCT/RO/104). [Rule.20.4]
근거 규정	Article.14, Rule.20, Rule.26 특허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39호 서식>	Article.11, Rule.20, 특허법 제193조, 제194조 <별지 제39호 서식>
관련통지	PCT/RO/106	PCT/RO/103, PCT/RO/104

[참고] 인용에 의한 보완

의의 : 국제출원에 누락된 요소나 부분이 있으나, 그 누락된 부분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용에 의한 보완 절차를 통하여 국제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누락된 요소나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적용의 유보 :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은 적용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한국 수리관청은 인용에 의한 보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ule 20.6]

3) ‘국제출원 보완요구서(PCT/RO/103)’ 서식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담 당 사 무 관
발신: 수리관청 수신:		국제출원 보완요구서 (PCT 11(2)(a); PCT 규칙 20.3, 20.6 및 20.7)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발송일 (일/월/년)	답변기간 상기 발송일부터 2월 이내 아래 마지막 2문단 참조.	
국제출원번호	접수일 (일/월/년)		
출원인			
발명의 명칭			
이 국제출원은 아래 열거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출원일 부여를 위한 제11조(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의 답변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출원인이 당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할 권리에 주소 또는 국적상의 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흠결이 있음 (제11조(1)(i); 규칙 18 및 19). ☐ 발명의 설명이 소정의 언어(들)인 _____로 작성되지 않았음 (제11조(1)(ii); 규칙 12.1(a) 및 20.1(c)). ☐ 청구범위가 소정의 언어(들)인: _____로 작성되지 않았음 (제11조(1)(ii); 규칙 12.1(a) 및 20.1(c)). ☐ 국제출원이라는 표시가 없음 (제 11조(1)(iii)(a); 규칙 4.2). ☐ 출원인 성명의 표시가 누락 되었음 (제 11조(1)(iii)(c); 규칙 20.1(b)). ☐ 의견상 발명의 설명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음 (제 11조(1)(iii)(d); 규칙 5(부록참조)). ☐ 의견상 청구범위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음(제 11조(1)(iii)(e); 규칙 6(부록참조)). 항목 6. 및/또는 7.이 적용되는 경우, 출원인은 상기의 기간 내에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 받습니다. ☐ (i) 조약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보완서를 제출함; 또는 ☐ (ii) 규칙 20.6(a)의 규정에 따라 조약 제11조(1)(iii)(d) 및/또는 (e)의 규정에 의한 요소가 규칙 4.18에 의하여 인용에 의하여 보완된다는 것을 확인함(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또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함			
주의 ☒ 누락된 요소가 규칙 20.6(b)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출원일은 보완제출서가 접수된 날이 됩니다. 다만, 당해 접수일이 상기의 기간이내이어야 합니다. 보완제출서가 기간 이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본 요구서에 대한 응답기간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월 경과후입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4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12월 만료후 수리관청에 접수된 조약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보완제출서는 PCT 절차상 당해 우선권주장이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규칙 26.2의2(b)).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 42 472 3473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8755	

서식PCT/RO/103 (2007년 4월)

라. 수리관청으로서 국제사무국에의 국제출원 송부(『RO 통지서 작성/발송』 → 『RO 발송통지서 작성』 → 『RO/151』 입력 및 조회)

1) 의의 [PCT Rule 19.4]

- 가) 아래의 경우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을 대신하여 당해 수리관청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 국내관청이 규칙 제19.1조 또는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수리관청이 아닌 경우
 - 국제출원이 규칙 제12.1조(a)의 규정에 따라 국내관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규칙에 의하여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경우
- 나) 위와 같은 경우에 당해 수리관청은 신속히 국제출원을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한다. [PCT/GL/RO Paragraph 274~277]

참고: PCT Rule 12.1, Rule 19.1

12.1 국제출원언어

- (a) 국제출원은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19.1 출원하는 장소

- (a) 국제출원은, (b)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되어야 한다.
 - (i) 출원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
 - (ii) 출원인이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
 - (iii) 출원인이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인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국제사무국

19.2 2인 이상의 출원인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

- (i) 국제출원을 접수한 국내관청이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거주자 또는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또는 그 체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일 때에는 규칙 제19.1조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ii)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경우에는 규칙 제19.1조(a)(iii)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통지서(Form PCT/RO/151)의 작성 및 발송

가) 방식화면의 우측의 **RO/132** 를 클릭하면 통지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생성되고, 통지서 종류(서식명: RO/151)를 선택한 후 내용을 기입하고 결제상신한다.

※ 송달료 미납시, 출원인(대리인)에게 송달료(45,000원)를 납부해야함을 안내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서가 수리된 경우, 송달료 제외 후 수수료 반환통지서를 작성한다.

3) 수리관청으로서 국제사무국에의 국제출원 송부통지서 및 수수료 납부요구서 (Form PCT/RO/151) 서식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당 당 사무 관
발신: 수리관청 수신:		PCT 수리관청으로서 국제사무국에의 국제출원 송부통지서 및 수수료 납부요구서 (PCT 규칙 19.4(a)(i), (ii) 및 (b)(2); PCT 시행세칙 333)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함조기호		발송일 (일/월/년)
수리관청주소/국제출원번호		답변기간 상기 발송일로부터 15일 (단, 3.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출원인		국제출원의향서 접수일 (일/월/년) 2022년 11월 30일 (30.11.2022)
1. ☐ 당 관청에서는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지의 사유로 인하여 이 국제출원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규칙 19.1 또는 19.2). ☐ 이 국제출원은 규칙 12.1(a)에 의하여 당 수리관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 발명의 설명의 서일목록 부분에 포함된 언어의존적 자유텍스트가 규칙 12.1(d)에 의하여 당 수리관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으나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 국제출원 전체 또는 일부가 당 수리관청에서 인정하는 전자 포맷으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이 국제출원은 당 관청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을 대신하여 상기 접수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되며/간주되거나, 즉시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3. ☐ 이 국제출원을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_____ (금액)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 이 수수료는 당 관청에 기 납부하신 수수료에서 공제됩니다. ☐ 출원인은 상기 지정기간 내에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가 바랍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이 국제출원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송부되지 않습니다. 4. 출원인이 기납부하신 모든 수수료는 규칙 19.4(b)에 따라서 당 관청에 납부해야 할 상기 수수료 (3. 참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환불됩니다. 5.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 실제로 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상기 국제출원의향서 접수일이 아닌)부터 1월 이내에 송달료, 국제출원료 및 조사항료를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소정의 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주의: 출원인이 출원서 VI에 선택표기를 함으로써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인증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도록 수리관청에 요청한 경우에도, 규칙 17.1(a)에 의한 기간내에 인증사본을 국제사무국에 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은 출원인의 책임입니다. 7. 이 통지서의 사본은 상기 국제출원과 함께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정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 42 472 3473 서식 PCT/RO/151 (2022년 7월)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8755

마. 누락통지(『RO 화면방식』→『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누락통지』
항목)

1) 의의

- 발명의 설명의 일부, 청구범위의 일부, 모든 도면 또는 도면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및 잘못 제출되었거나 잘못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리관청(RO)은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서식 :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관한 요구서 (Form PCT/RO/107 [Rule 20.5(a)])

- 누락 및 잘못 제출된 부분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면, 서류제출서가 제출된 날로 국제출원일이 변경된다.

Tip

국제출원일의 변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누락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누락된 상태로 국제조사를 받게 되며 국제공개 또한 누락된 상태로 국제공개가 된다.

2) 처리 방법

- 수리관청에서 누락 통지서를 보냈을 경우, 출원인은 그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락 부분을 제출한다.[서류제출서(별지 제35호 서식)]
- 수리관청에서 누락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락 부분을 제출한다.[서류제출서(별지 제35호 서식)]
- 누락 부분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면, ‘국제출원의 후제출 부분에 관한 통지서(Form PCT/RO/126)’를 발송한다(누락 부분이 제출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
- 수리관청에서는 접수된 서류제출서를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으로 전송이 된 후, 방식 심사를 한다.
- ‘국제출원의 후제출 부분에 관한 통지서(Form PCT/RO/126)’와 누락 부분 제출 용지를 함께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3) 기타

- 발명의 설명 등 일부누락은 보완사항이 아니므로, 방식심사 후 국제출원변

호와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Form PCT/RO/105 통지서 발송).

- 출원인이 누락부분을 제출하지 않거나, PCT/RO/126 통지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것을 무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국제출원일로 본다. [서류제출서 취하서(별지 제49호 서식)]

4)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관한 요구서((Form PCT/RO/107) 서식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담 당 사 무 관
발신-수리관청 주소: 		PCT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관한 요구서 (PCT 규칙 20.5(a) 및 20.5의 2(a))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약장조기호:		상기 발송일로부터 2월 이내. 하기의 항목 4.도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25	접수일 (일/월/년) 2025년 05월 02일 (02.05.2025)	우선일 (일/월/년)	
출원인			
1. 수리관청은 다음을 발견하였습니다: a. ☐ 발명의 설명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페이지 기재); b. ☐ 하나의 청구항의 일부 또는 청구범위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페이지 기재); c. ☐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페이지 기재); d. ☒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면에 관하여 _____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 e. ☐ 발명의 설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제출되었거나 또는 잘못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페이지 기재); f. ☐ 모든 청구항, 하나의 청구항의 일부 또는 청구범위 일부가 잘못 제출되었거나 또는 잘못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페이지 기재); g. ☐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제출되었거나 잘못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페이지 기재); 2. 출원인은 상기 기간 내에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받습니다. ☒ (i) 누락 부분이나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을 제출하여 국제출원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완성 또는 보정함; 또는 ☐ (ii) 규칙 제4.18조의 규정에 따라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이 인용에 의하여 보완된다는 것을 규칙 제20.6조(a)의 규정에 따라 확인함(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또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함 3. 누락된 도면이 상기 기간 이내에 당해 수리관청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출원에서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조약 제14조(2)). 4. 주의: ☒ 출원인이 조약 제11조(1)의 모든 요건이 충족(및 국제출원일 부여)된 날 후이나 상기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을 완성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누락 부분 또는 올바른 요소나 부분을 당해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수리관청은 누락 부분 또는 올바른 요소나 부분을 접수한 날로 국제출원일을 수정할 것입니다(규칙 20.5(c) 또는 20.5의 2(c)). ☐ 본 요구서에 대한 응답기한은 우선권주장의 기호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2월 경과후입니다. 국제출원이 우선권 주장의 기호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4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를 제외하고(규칙 26조의 2.2(c)(iii)), 항목 2.(b)의 경우, 12월 만료 후 당해 수리관청에 접수된 모든 누락 부분 또는 올바른 요소나 부분은 국제출원일의 수정을 아니하여 PCT 일차상 당해 우선권주장이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규칙 26조의 2.2(b)). 본 요구서의 사본은 국제사무국 및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었습니다.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353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 42 472 3473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5762	

서식PCT/RO/107 (2020년 7월)

바. 우선권주장 보정요구 (『RO 화면방식』 → 『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 → 『우선권 주장』 항목)

1) 의의 [Rule.4.10, Rule.26bis]

- 우선권 주장에 관한 내용이 규칙 제4.10조의 요건에 위반되거나, 또는 당해 우선권 주장에 관한 기재사항이 우선권 서류에 나타난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원인에게 관련 우선권 주장을 정정할 것을 통지한다 (Form PCT/RO/110).

2) 처리 방법

- 가) 통지서작성 - **우선권 주장** 항목을 클릭하여 ‘우선권 주장 보정요구서 및/또는 우선권회복 신청 가능성에 관한 통지서(Form PCT/RO/110)’를 출원인에게 발송한다.

[참고] 우선권 주장에 대한 보정 항목

- 선출원의 출원일이 기재되지 아니함
- 선출원의 출원일이 국제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선출원의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함
- 선출원의 출원국가가 기재되지 아니함
- 선출원의 출원국가가 파리협약 또는 WTO가입국이 아님
- 선출원의 출원일과 관련하여 출원서와 우선권서류상의 정보가 상이함
- 선출원의 번호와 관련하여 출원서와 우선권서류상의 정보가 상이함
- 선출원의 출원국가와 관련하여 출원서와 우선권서류상의 정보가 상이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 [Rule 4.10], [RO Guidelines 166]

나) 보정서(우선권주장의 보정) 제출 [별지 제39호 서식, 시행규칙 제102조]

- 출원인은 우선권 주장 보정요구서 및/또는 우선권회복 신청 가능성에 관한 통지서(Form PCT/RO/110)에 대한 보정서(우선권주장의 보정 항목 선택)를 수리관청(RO)에 제출한다.

Tip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신청은 보정요구서가 없더라도 출원인이 자진 보정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RO Guidelines 173] (p.68 참고)

다) 보정서 처리

- 『제3장 중간서류 방식심사』 「7. 보정서(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 참고

3) 우선권 주장 보정요구서 및/또는 우선권회복 신청 가능성에 관한 통지서 (Form PCT/RO/110) 서식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height: 40px; 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당 당 사무관</td> </tr> <tr> <td style="height: 30px;"></td> </tr> </table>	당 당 사무관	
당 당 사무관				
발신: 수리관청 수신:		PCT 우선권주장 보정요구서 및/또는 우선권회복 신청 가능성에 관한 통지서 (PCT 규칙 4., A, 26bis., 26bis.2(a) 및 :b), 26bis.3)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		발송일 (일/월/년)		
국제출원번호 PCT/KR		답변기간 아래 1. 및 2. 참조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1월 02일 (02.01.2018)		우선일 (일/월/년)		
출원인				
1. ☒ 출원인은, 아래 기재된 기간 이내에,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부록B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에 있어서의 흠결을 보정할 것을 통지받습니다. 이 요구서에 대한 답변기간: 규칙 26조의2.1(6): - 우선일부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 부터 1년 4월과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 - (최초의) 우선일이 (최초의)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최초의) 우선일부터 1a월 이내. 규정된 기간 이내에 본 요구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PCT절차상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규칙 2a조의2.2(b)). 2. ☐ 상기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priority period) 만료 후이나, 동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출원인은, 아래 기재된 기간 이내에, 부록B에 기재된 우선권회복 신청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받습니다. 우선권회복 신청기간(규칙 26조의2.3(e)): - 우선권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월 이내 3. ☒ 우선권주장이 2건 이상인 경우, 본 통지서는 다음 우선권주장에 관련됩니다: 우선권번호 우선권 일자 국가코드2자리 기재 본 요구서/통지서의 사본은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 42 472 3473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5762		

서식 PCT/RO/110 부록A 이 우선권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습니다. 1. 규의 4.10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a. ☐ 국내출원 ☐ 선출원일자가 기재되지 않음. ☐ 기재된 선출원일자가 국제출원일 전 12월의 기간내가 아님.¹ ☐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음.²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선국내출원이 수리된 국가명이 기재되지 않음. ☐ 기재된 국가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이 아님. b. ☐ 지역출원 ☐ 선출원일자가 기재되지 않음. ☐ 기재된 선출원일자가 국제출원일 전 12월의 기간내가 아님.¹ ☐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음.² ☐ 당해 지역특허조약에 의한 지역특허관청이 기재되지 않음. ☐ 지역특허관청으로 기재된 관청이 지역특허를 허용하지 않음. ☐ ARIPO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주장이 선출원으로 보호를받고자하는 최소 1개국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을 기재하지 않음. c. ☐ 국제출원 ☐ 선출원일자가 기재되지 않음. ☐ 기재된 선출원일자가 국제출원일 전 12월의 기간내가 아님.¹ ☐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음.² ☐ 수리관청이 기재되지 않음. 2. 우선권서류의 기재사항과 불일치² a. ☒ 선출원일자의 불일치: 출원서 기재: 2018. 01. 03. 우선권서류 기재: 2018. 01. 02 b. ☐ 선출원번호의 불일치: 출원서 기재: 우선권서류 기재: c.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출원이 수리된 국가명의 불일치: 출원서 기재: 우선권서류 기재: d. ☐ 당해 지역특허조약에 의한 지역특허관청의 불일치: 출원서 기재: 우선권서류 기재: e. ☐ 국제출원 수리관청의 불일치: 출원서 기재: 우선권서류 기재:	국제출원번호.
--	----------------

¹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priority period) 만료 후이나 동 만료일부터 2월 이내인 경우,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규칙 26조의2.2(c)(iii)).

² 상기 표본이 본 요구서에 대응하여 보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면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규칙 26조의2.2(c)(i) 및 (ii)).

사. 직권정정통지(『RO 화면방식』 → 『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 → 『RO/146』 항목)

1) 의의 [PCT/GL/RO Paragraph 164~165 참조]

- 출원서에 직권정정을 행한 경우 직권정정 통지서(Form PCT/RO/146)를 발송하여 그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2) 직권정정통지서(Form PCT/RO/146)의 작성 및 발송

- 가) 방식화면 우측의 **직권정정** 선택 ⇒ 변경전, 변경후 작성 ⇒ 추가
⇒ 수정 ⇒ 직권정정내용 반영된 국제출원서 생성

- 나) 방식화면 우측의 **RO/146** 선택 후, 직권정정내용을 기재한 후, 결재가 완료 되면 발송한다.

3) 직권정정 사항을 회수해야 할 경우

- 가) RO/105 통지서 작성 화면에서 해당 국제출원번호를 클릭한다.
나) 오른쪽 하단에 뜨는 회수(화면방식) 버튼을 클릭한다.
다) 결재 상신한 직권정정 통지서(RO/146)은 결재진행현황 항목에서 회수 후 삭제한다.(출원서는 직권정정 이전 상태로 원복되며 결재 완료된 직권정정 통지서(RO/146)은 RO 발송요청 항목에서 자동 삭제 처리됨)

아.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신문(『RO 화면방식』→『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
→『RO/132』 항목)

1) 의의

- WIPO에서 제공하는 표준 Form에 없는 내용과 관련하여 출원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의사소통 등을 위한 통신에 활용된다.

2)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신문(Form PCT/RO/132)의 작성 및 발송

- 가) 방식화면의 우측의 **RO/132**를 클릭하면 통지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생성되며, 내용을 기재한 후 결제가 완료되면 발송한다.

나) 주요 작성 내용

(1) 지정국 제외 관련[PCT Rule 4.9(b)] - 신규방식 시, 우측 버튼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4.9조(b)(PCT Rule 4.9(b))에 의하여 국제출원시 출원서상의 기재를 통한 지정국의 제외는 지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란(Box No. V)의 기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2. 한국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만 한국을 지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조약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간 내에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제외된 국가는 상기 기간이 경과한 후 수리관청이 직권으로 지정제외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당해 국가를 지정국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2) KR 자기지정제외 관련[특허법 제56조] - RO 자기지정 화면방식

본 건은 국내우선권(KR)을 기초로 KR 자기지정제외를 하지 않았습니다(KR was included in the designation with the KR priority claim). 대한민국은 국내출원을 기초로 PCT국제출원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에 의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국내출원은 그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착오에 의하여 한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지정취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신문(Form PCT/RO/132)의 작성 화면

RO 발송통지서 작성 < RO 통지서 작성/발송 < 수리관청

• 국제출원번호 PCT / KR / • 작성일자 2024.03.12 • 수신처 출원인

• 서식명 RO / 132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신문

조회 조회(팝업제거대상)

PATENT COOPERATION TREATY

From the RECEIVING OFFICE

PCT

COMMUNICATION IN CASES FOR WHICH NO OTHER FORM IS APPLICABLE

Date of mailing (day/month/year)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REPLY DUE See paragraph 1 below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International filing date (day/month/year)

Applicant

1. ☐ REPLY DUE within _____ months from the above date of mailing

☐ NO REPLY DUE, however, see below _____

☒ IMPORTANT COMMUNICATION

☐ INFORMATION ONLY

2. COMMUNICATION:

우선권서류(PCT규칙 제17조) 관련 안내입니다.

상기 PCT 국제출원은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선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우선권주장에 대한 우선권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리관청(특허청)에 미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선권서류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신 후, 수리관청(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기간 내 해당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PCT규칙 제17조 및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6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임장 또는 해임서 흠결 통지서(『RO 화면방식』→『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RO/124』항목)

1) 의의

- 신규 출원 시, 별도의 위임장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이 누락된 경우 또는 선임된 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규칙 4.4의 규정에 따라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흠결이 보정되지 아니하면 위임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Rule.90.4(c)]
- ※ 위임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PCT/RO/106 통지서를 발송

2) 위임장 또는 해임서 흠결 통지서(Form PCT/RO/124)의 작성 및 발송

- 제출된 위임장에 보정사항이 있으면 [RO/124]를 클릭하고, 통지서를 작성한다. 위임장에 체크하고, 상세내용은 하단에 기재한다.

3) 처리 방법

- 수리관청에서 위임장 등의 보정통지서를 발행한 경우, 출원인은 그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임장을 보정한다. (참고: 위임장 점검사항)
- 1개월 이내에 위임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간관리

- PCT/RO/124 통지서가 발행된 이후, 1개월 동안 해당 위임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RO 기간관리]에 리스트가 생성된다.
-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해당하면, PCT/RO/106통지서를 작성 후, 발송한다. (부록A 1.-b.에 체크)

가. 출원인 명칭, 대리인 명칭·주소, 발명의 명칭, 파일참조기호가 국제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개별위임장은 출원인 주소 기재가 필수사항이 아님)

나. 체크박스(대리인, 모든 관할기관 등) 존재시 체크를 잘했는지 확인

다. 수리관청을 '대한민국 지식재산처(한국 지식재산처, MOIP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R 등)'으로 지정했는지 확인

라. 기재된 출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 확인. 인장의 경우 비선명 여부 확인

마. 위임일자 기재여부 확인

바. 한정지산자 또는 미성년 출원인일 때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여부 확인

가. 수리관청(지식재산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나. 명칭, 주소 등 출원서 기재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반드시 법정대리인임을 밝히고
(미성년자와의 관계 표기 요망)
법정 대리인의 날인만 넣도록
안내

<법정대리인 위임장 예시>

차.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요구(『RO 화면방식』 → 『RO 국제출원서 화면방식』
→ 『명백한 오류』 항목)

1) 의의

-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부분에 정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그것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Form PCT/RO/108). [Rule.91.1(b)(i), Rule.91.1(h)]
- ※ ‘명백한 잘못의 정정’은 기관의 요구가 없더라도, 출원인이 자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요구서(Form PCT/RO/108)의 작성 및 발송

- 방식심사 후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요구 대상이면 **명백한 오류** 을 클릭하고,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통지서작성** 을 클릭하면 해당 통지서 작성 화면이 생성된다. 내용을 기입하고 결재가 완료되면 출원인에게 발송한다.

3)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 방법 [Rule.91.2]

- 신청 기한 : 조약규칙 제9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은 우선일로부터 26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별지 제39호 서식]
- 제출 서류 : 보정서(“명백한 잘못의 정정” 항목 선택), 변경 전후의 차이점을 기재한 설명서, 정정을 위한 대체용지
- 제출 기관 : 수리관청(RO)
 - ※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 대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은 수리관청(RO)에, 그 외에 대한 정정 신청은 국제조사기관(ISA)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 한다. [Rule. 91.1(b)]
 - ※ 누락의 경우, 요약서의 경우, 조약 19조 보정의 경우, 우선권주장의 우선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으로 정정될 수 없다. [Rule. 91.1(g)]

4) 처리 방법

『제3장 중간서류 방식심사』 「1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서 처리」 참조

5)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요구서(Form PCT/RO/108) 서식

PATENT COOPERATION TREATY	
From the RECEIVING OFFICE To:	PCT INVITATION TO REQUEST RECTIFICATION (PCT Rule 91.1(h) and 91.2)
Date of mailing (day/month/year) 13 MARCH 2018 (13.03.2018)	REPLY DUE see item 2 and the last paragraph below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International filing date (day/month/year)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KR	Applicant
1. This receiving Office has discover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in other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licant to this Authority what appears to be an obvious mistake: ☐ as shown on the attached copy. ☒ as specified hereafter : -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에 오타(typing mistake)가 존재합니다. *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 시, 출원서(Request) 1페이지는 수리관청(Receiving Office)으로, 발명의 설명(Description) 1페이지는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The applicant is hereby invited to submit a request for rectification to the following authority: ☒ this receiving Office ☒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HOW TO CORRECT A MISTAKE? Except where the mistake is in the request, any rectification must be submitted in the form of a replacement sheet or sheets, accompanied by a letter drawing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placed sheet and the replacement sheet. For a mistake in the request, the desired rectification may simply be stated in a letter if it is of a nature where the change can be transferred clearly onto the request record copy (Rule 26.4). ATTENTION No rectification will be made without the express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indicated above and the request for rectification must be submitted to that authority within 26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Rule 91.2).	
Name and mailing address of the receiving Office International Application Div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Facsimile No. +82 42 472 3473	Authorized officer COMMISSIONER Telephone No. 82-42-481-5202

Form PCT/RO/108 (April 2007)

카. 국제공개 중 정보 생략신청 요구서(『RO 화면방식』 → 『RO 발송통지서 작성』
→ 『서식 RO/130』 항목)

1) 의의

- 수리관청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될 기타 서류에서 그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사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분명히 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규칙 48.2(1)에 관한 경우, 출원인에게 제(1)항에 따라 국제공개에서 그 정보가 생략되도록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국제 공개 중 정보 생략신청 요구서(Form PCT/RO/130)의 작성 및 발송

- 『RO 발송통지서 작성』에서 국제출원번호와 서식 RO/130을 조회하면 통지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생성되며, 내용을 기재한 후 결제가 완료되면 발송한다.

3) 처리 방법

- 우선일로부터 17개월 15일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대체용지를 제출한다.(국제사무국에서 대체용지를 수리할 경우, 국제사무국이 IB/385 통지서를 발송함)
- 우선일로부터 17개월 15일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될 기타 서류를 제출된 대로 공개된다.

Tip

<제3자가 복사신청을 하였을 경우, 복사담당자의 자료제작 방법>

- 출원인이 IB로 대체용지 제출 안했으면, 당연히 IB/385도 안오니 개인정보기재된 페이지도 다 복사함
- 출원인이 IB로 대체용지 제출하여 수리되어 IB/385가 왔을 경우, 국제공개된 것을 복사함 또는 굳이 지식재산처에서 복사를 요청할 경우 IB/385에 기재된 교체 페이지를 국제공개 된 것으로 교체하여 복사함 (복사담당자가 알 수 있게 IB385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에 기재)

* 메모 => “[중요] 공개되는 정보의 생략 또는 공중열람 배제 대상 출원임
- 대상항목 : OOOOOO OO페이지”

4) 국제 공개 중 정보 생략신청 요구서(Form PCT/RO/130) 서식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발신: 수리관청 수신:	PCT 국제공개 중 정보 생략신청 요구서 (PCT 규칙 48.2(l) and (m))				
출원인 또는 대리인 서류참조 기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발송일 (일/월/년)</td> <td>2019년 12월 06일 (06.12.2019)</td> </tr> <tr> <td>담변기간</td> <td>1항 참조</td> </tr> </table>	발송일 (일/월/년)	2019년 12월 06일 (06.12.2019)	담변기간	1항 참조
발송일 (일/월/년)	2019년 12월 06일 (06.12.2019)				
담변기간	1항 참조				
국제출원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국제출원일 (일/월/년)</td> <td>2019년 11월 30일 (30.11.2019)</td> </tr> </table>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11월 30일 (30.11.2019)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11월 30일 (30.11.2019)				
출원인					
해당 수리관청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된 기타 서류에서 규칙 48.2(l)의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본의 서류에 보이는 바와 같음 ☒ 아래 명시된 바와 같음: ≡ 4/5, 5/5 페이지: (≡ 4, ≡ 5) 추가 안내(필요시): 1. 위에 언급된 정보를 국제공개에서 생략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청합니다. 언제?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 완료 전까지 (규칙 48.2(l)). 어떻게? 관련 정보가 생략된 대체용지 및 대체되는 용지와 대체용지 사이의 차이점을 기재한 시한을 첨부하여, 적절한 이유가 있는 공개제의를 요청(가급적 서식 PCT/IB/384를 사용)(규칙 26.4 및 48.2(l)). 어디로? ePCT를 이용(권장)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Facsimile No.: +41 22 338 82 70) 2. 출원인이 위에 표시된 기한 내에 국제공개의 생략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된 기타 서류를 제출된 대로 공개합니다. 3. 이 요구서의 사본은 국제사무국에 송부되었습니다.					
수리관청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 번호 +82 42 472 3473	특허청장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8755 				
서식 PCT/RO/130 (2016년 7월)					

5) 국제 공개되는 정보의 생략 및/또는 공중의 열람 대상 배제에 대한 결정 통지
(Form IB/385) 서식

PCT NOTIFICATION OF DECISION TO OMIT INFORMATION FROM INTERNATIONAL PUBLICATION AND/OR PUBLIC FILE ACCESS (PCT Rules 48.2(l) and 94.1(e))		From the INTERNATIONAL BUREAU
Date of mailing (day/month/year) 14 January 2021 (14.01.2021)		To: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IMPORTANT NOTIFICATION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International filing date (day/month/year) 30 November 2019 (30.11.2019)	
Applicant		
The International Bureau received on 15 December 2019 (15.12.2019) a request from the applicant to omit certain information from: ☒ international publication (Rule 48.2(l)); ☒ public file access (Rule 94.1(e)). The applicant is hereby notified that the International Bureau has omitted the requested information from: ☒ international publication and public file access (Rules 48.2(l) and 94.1(d)); ☒ public file access (Rule 94.1(e)). Further observations, if necessary: The International Bureau will not publish or provide public file access to Figures 4 and 5 as submitted on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of 30 November 2019. It will instead publis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make the document available to the public with the replacement sheet on Figure 4 submitted on 15 December 2019 and with the replacement sheet on Figure 5 submitted on 4 February 2020, respectively. A copy of this Notification, including a copy of the replaced sheet(s) and the replacement sheet(s), is being sent to: ☒ the RO ☒ the ISA ☐ the SISA ☐ the IPEA to inform the Office and/or Authority NOT to provide access to any document in its file which contains the omitted information.		

5. 서면 출원서 방식 완료 후 기록원본 전자파일 생성

가. 수리관청 접수현황(『수리관청』 → 『접수』 → 『접수사항 조회 및 수정(PCT)』)

1) 『접수사항조회 및 수정(PCT)』 기능

가) 접수일자별로 PCT 수리관청 등에 접수된 서류의 현황을 확인 및 재전자화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서류별로 처리상태가 확인 가능하다.

다) 수정된 사항에 따른 새로운 바코드를 출력하여 부착할 수 있다.

2) 『접수사항조회 및 수정(PCT)』에서 기록원본 전자파일 생성 절차

접수사항조회및수정(PCT) < 접수 < 수리관청

제출자성명: [] | 접수구분: 국제출원번호+서류코드 | 접수일자: 2016.08.03 ~ 2016.08.03 | 접수담당자: 전체 | 지역구분: 전체

업무구분: 수리관청(RO)서류 | 출원서조회 | 매체구분: 전체

입원번호: 6-1-2U/16-UU6246/11

접수일자: 2016.08.03 | 소인일자: [] | 제출인주소: []

제출자코드: 9-2007-100101-9 | 서류명: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정보 변경신고서[NOTIFICA] | 수수료: 0 원

합조기호: [] | 국제출원번호: PCT/KR/15/000746

접수사항목록 | 총 27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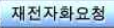
순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조사기관	접수일자	소인일자	매체구분	서류명	처리상태	수수료
1	2016-1269167	6-1-2016-0062467-01	PCT/KR2015/000746	KR	2016.08.03		On-Line	[발명자(고안자) 변경]	접수/방식완료	
2	2016-1269614	6-1-2016-0062508-85	PCT/KR2015/002531	KR	2016.08.03		On-Line	[출원인 변경]출원명	접수/방식완료	
3	2016-1271107	6-1-2016-0062653-97	PCT/KR2015/003668	KR	2016.08.03		On-Line	[출원인 정보변경]출	접수/방식완료	

접수증 | 접수증 | 재전자화 | 바코드출력 | 재출력 | 수정 |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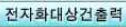
① 재전자화 하고자하는 서면 건에 부착된 바코드를 확인하고, 조회 조건(접수일자, 접수담당자)을 화면에서 선택한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사항목록이 존재시 [③]처럼 표기된다.

③ 목록 중에서 재전자화 하고자하는 국제출원번호를 클릭한다(클릭시 해당건의 배경색이 변경된다).

- ④  버튼을 클릭한다. 재전자화 사유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사유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한다.

※ 직권정정이 존재할 경우 사유에 같이 포함하여 기입한다.

- ⑤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화의뢰건 목록’이 2장 출력된다. 출력된 ‘전자화의뢰건 목록’ 2장의 [인계자] 란에 일자와 성명을 기입하고, 공용 캐비닛에 비치된 ‘전자화의뢰건 인계 대장’을 작성한 후, 재전자화 담당자(데이터센터 직원)에게 인계한다.

제3장 PCT Manual 중간서류 방식심사

1. 중간서류의 종류

별지서식	서류명	서류구분	관련 통지서	특허법시행규칙
제35호	서류제출서	발명의설명 · 청구범위 · 도면, 국제조사용번역문, 서류원본,	RO/126	99-2(3), 99(2), 95-2(4), 76(4)
제36호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대리인선임, 대리인해임, 대리인사임, 대표자선임, 대표자해임, 대표자사임, 복대리인선임, 복대리인해임, 복대리인사임	RO/113, RO/123	78(3), 79(2)
제37호	포괄위임장 제출 (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포괄위임장제출, 포괄대리인해임, 포괄대리인사임		80(1)(3)
제38호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출원인 변경, 출원인검발명자(고안자) 변경,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인 정보변경, 출원인검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대리인 정보변경, 대표자 정보변경	RO/113	82, 81
제39호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국제출원 보정, 명백한 잘못의 정정, 우선권주장의 보정, 우선권주장의 추가, 국제출원 보완, 국제출원 외의 서류보정,	RO/106, RO/109, RO/111	101(2), 84(5), 102(4), 103(2), 97, 83(2)

별지서식	서류명	서류구분	관련 통지서	특허법시행규칙
제40호	의견(소명)제출서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99-2(5), 106-2(2)
제41호	REQUEST		RO/101	93
제41호의2	출원서		RO/101	93
제42호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 国際出願		RO/101	93
제43호	발명의 설명(DESCRIPTION, 發明の説明)			93
제44호	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			93
제45호	요약서(ABSTRACT, 要約書)			93
제46호	도면(DRAWINGS, 図面)			93
제47호	수수료납부서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국제출원수수료 (국제출원료이외의수수료), 국제출원수수료보정	RO/102, RO/133	106-5
제48호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우선권서류제출, 우선권서류송달		106-6(1), 106-6(2)
제49호	취하서	국제출원 · 지정국 · 우선권주장, 서류제출서	RO/136	106-7(2), 100-2(3)

Tip

중간서류의 제출방법 및 작성요령에 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의 각 별지 서식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방식심사 시 참조한다.

2. 특허넷시스템 RO 중간서류 화면방식

RO 중간서류 화면방식 < RO 화면방식 < 수리관청

접수번호 : 612016007440089 서류명 :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접수일 : 2016.09.23

접수번호
6-1- [] []
조회

담당자 전체
중간서류

총 3건

국제출원번호	매체
PCT/KR2016/007658 [발명자(고안자) 변경]	ON
PCT/KR2016/007658 [발명자(고안자) 정보 변경]	ON
PCT/KR2016/009399 [발명자(고안자) 변경]	ON

중간서류

기본사항

서류명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신고구분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국제출원번호	PCT/KR2016/007658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코드	

전산방식결과

전산방식유형	SEQ 1 즉시반려
방식결과코드	[18893] 기간경과
방식결과설명	제출기간 경과된 국제출원번호입니다.
전산방식유형	SEQ 2 보정
방식결과코드	[18871] 선제출정보와 불일치
방식결과설명	1번째 출원인-기재내용이 국제출원서 기재내용과 다름[대표출원인이 아님]
전산방식유형	SEQ 3 안내
방식결과코드	[18871] 선제출정보와 불일치
방식결과설명	1번째 대리인-기재내용이 국제출원서 기재내용과 다름[대리인성명]
전산방식유형	SEQ 4 안내
방식결과코드	[18871] 선제출정보와 불일치
방식결과설명	1번째 대리인-기재내용이 국제출원서 기재내용과 다름[대리인주소]
전산방식유형	SEQ 5 보정
방식결과코드	[18831] 내용 기재오류
방식결과설명	기재된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님

통지서작성
수리
보정
통신문에 관한 결함
기타결함의 서식
반려 사유
수정/입력
작성 결정
전자화요류수정
배 모
중간서류입력
조회
전산방식결과
제출서류보기
첨부서류보기
대리인조회
바코드출력
국제출원열람
관련 규정
온라인자침서
상세조회

가. 출원인이 제출한 중간서류의 서지사항과 첨부서류를 [국제출원열람] 화면의 국제출원 기본사항과 이력 등을 참조하여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나. 방식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1) 불수리 대상인 경우 : **반려 사유**를 클릭하여 불수리통지서(Form PCT/RO/132)를 작성한 후 결재상신한다.

※ 주의

☞ 불수리통지서(Form PCT/RO/132) 작성 시, 통지서의 수신인이 국제출원의 공식적인 대리인(출원인)이 아닌 경우(대리인 선임 신고서의 반려, 국제출원번호가 잘못 기재된 서류의 반려 등), 수신인 정보를 변경하여 처리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수리 대상인 경우 : **수 리**를 클릭하고 **중간서류입력**을 클릭하면, 새 창으로 뜬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수리된 중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중간서류의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 중간서류입력**을 선택하면 특허넷시스템에 해당사항이 반영된다.
 - [국제출원열람] 화면을 조회하여 해당사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3. 출원정보 변경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제82조, 제81조(제38호 서식))

가. 제출기간 : 우선일로부터 30월

⇒ 통상적으로 우선일로부터 29월 10일까지 처리가능(29월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는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하도록 안내)

※ 만약 우선일로부터 17월이 경과한 후 수리관청을 통하여 기록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의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서류가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 공개공보에 해당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참고: PCT Rule 92bis

92의2.1 국제사무국에 의한 변경의 기록

- (a)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관청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 청구서의 다음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록한다.
 - (i) 출원인의 명의, 성명, 거주지, 국적 또는 주소
 - (ii) 대리인, 일반대표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 성명 또는 주소
- (b) 기록의 변경 청구서가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 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그 기록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변경 시, 점검 사항

※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의 명의,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의 지정국 변경

-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 2) 【변경전】 란에 변경전 모든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의 성명이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 3) 【변경후】 란에 변경후 모든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의 성명, 주소, 국적, 거주국, 지정국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단, 변경후 모든 발명자는 성명, 주소만 기재한다.

※ 한국어출원인 경우, 【변경전】·【변경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의 성명, 【변경후】 출원인의 성명, 주소, 국적, 거주국은 한영 병기해야 한다. (* 주의 : 온라인 제출인 경우, 국적, 거주국은 시스템 상, 국가코드 2자리만 기재 가능함)

※ 【변경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이 【변경후】 에도 유지되는 경우, 그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4) 첨부서류

가)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변경

- 대리인이 있는 출원인면서, 변경전 출원인 중 미제출된 위임장이 존재할 경우: 변경전 출원인의 미제출된 위임장 첨부
- 대리인이 있는 출원인면서, 변경후 출원인이 추가된 경우: 변경후 출원인의 위임장 첨부
- 변경후 추가되는 출원인이 서류를 접수할 경우: 변경원인 증명 서류

【참고】 변경후 추가되는 출원인이 출원인 변경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출원인변경의 원인이 증여·상속 등에 의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은 증여·상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류),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내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함으로써 같음), 매매계약에 의한 때에는 “양도증”을 첨부하여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특허법시행규칙 제82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8호 서식).

나) 발명자 변경

- 첨부서류 불필요

[참고]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의 지정국 변경시 유의사항

특허넷 시스템 상황을 고려하여, 출원인이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항목을 선택 후 'all designated States except 지정 제외되는 국가명'으로 지정국을 표기한다.

다.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대리인)의 정보변경 시, 점검 사항

※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의 국적, 거주국 정보변경

-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 2) **【변경전】**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 3) **【변경후】** 란의 정보가 입증서류와 동일한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한국어출원인 경우, **【변경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대리인) 명칭(성명), 주소, **【변경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대리인)의 명칭(성명), 주소는 한영 병기 해야 한다. **【변경후】** 출원인의 국적, 거주국도 한영 병기해야 하나, 온라인 접수 시 국적, 거주국은 시스템상 국가코드 2자리만 기재 가능(예: KR))

- 4) 입증서류(입증서류 첨부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 첨부)

가)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정보변경

- 성명, 주소: 최근 6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자연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 영문성명만 변경: 여권(자연인), 최근 6개월 이내의 영문성명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에 영문성명이 없을 경우, 한영성명 병기된 홈페이지 캡처본 또는 한영성명이 병기된 법인대표의 명함과 법인대표가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서지사항에 “제출서류생략정보”를 기재할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

나) 대리인 정보변경

-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다) 발명자 정보변경

- 입증서류 불필요

라. 처리방법

- 1) **수리**, **중간서류입력** 을 클릭하여,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변경내용 입력한 후 **중간서류입력** 을 클릭하면, 특허넷에 변경내용이 반영되고, 통지서 작성 화면이 새 창으로 뜬다.
- 2) Form PCT/RO/113 작성: 통지서에 자동입력된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Box 3에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상신한다.
- 3) Form PCT/RO/113 통지서(출원인 변경 중 필요한 경우, 위임장 첨부)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한다.

※ 통지서 문구작성 예제 : Case Study 참조

마. 발명자정보변경 중 발명자 순서변경시, 점검 사항

※ 발명자 정보변경 신고서가 아닌 발명자 변경 신고서로도 순서 변경 처리 가능

-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 2) **【변경전】** 란의 발명자 정보(순서 및 성명)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 3) **【변경후】** 란의 발명자 정보(성명)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 한국어출원인 경우, **【변경전】** 발명자 명칭(성명), **【변경후】** 발명자 명칭(성명)은 한 영 병기해야 한다.

- 4) 입증서류: 첨부서류 불필요
- 5) 처리방법: **수리**, **중간서류입력** 을 클릭하여,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아무 발명자의 성명이나 주소 체크해서 추가한 다음, 실제로는 성명이나 주

소 변경하지 말고 > 중간서류입력 => Form PCT/RO/113 뜨면 발명자 순서 변경

1. The following indications appear on record concerning:		
☐ the applicant	☒ the inventor	☐ the agent
☐ the common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u>LEE, Seho; DO, Panju; DAEK, Pyunghu; SEO, Tumsik;</u> <u>SEO, Tumsik; DAEK, Pyunghu</u> <u>이세호, 도판주, 배철우, 서오시, 박준주</u>	State of Nationality*	State of Residence*
	Telephone No.	
	Facsimile No.	
	E-mail address	
2. This receiving Office hereby requests the International Bureau to record the following change in:		
☐ the person	☐ the name	☐ the address
☐ the nationality*	☐ the residence*	
Name and address <u>DO, Panju; DAEK, Pyunghu; SEO, Tumsik;</u> <u>LEE, Seho; DAEK, Pyunghu</u> <u>도판주, 배철우, 서오시, 이세호, 박준주</u>	State of Nationality*	State of Residence*
	Telephone No.	
	Facsimile No.	
	E-mail address	
	☐ Notifications by e-mail authorized	
3. Further observation, if necessary The order of the inventors has been changed as shown in Box 2.		
* To be indicated only for a change concerning the applicant.		

경해서 기재(Box3에 내용 기재) => RO/113 작성 후 『RO 서지입력』 → 『RO 국제출원서 입력/수정』 에서 발명자 순서(순위) 변경 작업

< 발명자 순서변경 RO/113 작성 예시>

* 출원인 순서 변경시에도 발명자 순서 변경 절차에 따른다.

< 출원정보 변경의 중간서류 입력 화면 >

[출원인 변경]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출원인변경신고서(제58호)						
접수서류 기본정보						
접수번호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자		국제출원일				
우선일자						
변경전출원인						
처리구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접수번호	발명자여부	지정국
변경입음	필요한 경우에만, 자격취소, 자격변경, 지정국변경 중 선택					all-designated-states
변경입음						all-designated-states
변경입음						all-designated-states
변경후출원인(출원인추가)						
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국적	거주국
위임선택	대리인주소		대리인성명	대리인번호	전화번호	
개별						
식별 출원인추가 중간서류입력						

[출원인 정보변경]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출원인정보변경신고서									
접수서류 기본정보									
접수번호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자					국제출원일				
우선일자									
출원인									
변경	순번	성명	대표자여부	발명자여부	주소		전화번호	FAX	국적
☒		정보변경할 출원인 체크!							
변경내용									
						정보변경할 항목 체크하고 '추가' 클릭			
						추가			
변경내용입력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적	
변경전									
변경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변경된 정보 입력 후 '중간서류입력' 클릭 중간서류입력									

4.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제78조, 제29조(제36호 서식))

가. 제출기간 : 우선일로부터 30월

※ 단, 기록변경 요청서가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 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그 기록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Rule 92bis.1(b)]

⇒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선일로부터 29월 10일까지 처리가능(29월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는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하도록 안내)

※ 통상 우선일로부터 17월이 경과한 후 수리관청을 통하여 기록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의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서류가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 공개공보에 해당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나. 대리인 선임 시, 점검사항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2) 【신고대상 대리인】 의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한다.

※ 한국어출원인 경우, 【신고대상 대리인】 의 성명, 주소는 한영 병기해야 한다.

※ 주소는 한글, 영문 주소 순으로 기재한다.

※ 【신고대상 대리인】 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대리인코드를 이용하여 특허넷의 연락처 정보를 대리인에게 확인 후 추가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모든 출원인의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된 서류참조기호가 변경될 경우, RO/113통지서(Box.3)에 기재해야 한다.

※ 【연임된 대리인】 에 기재하지 않은 기존의 대리인은 모두 해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대리인 해임 시, 점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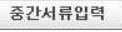
- 1) 대리인 선임 시, 점검사항 1), 2)와 동일
- 2) 서류접수자가 출원인 또는 남는 대리인이어야 한다(해임되는 대리인이 서류접수한 경우 불수리).
- 3) 첨부서류: 출원인 중 미제출된 위임장이 존재할 경우, 변경전 출원인의 미제출된 위임장 첨부

라. 대리인 사임 시, 점검사항

- 1) 대리인 선임 시, 점검사항 1), 2)와 동일
 - 2) 서류접수자가 사임하는 대리인이어야 한다.
 - 3) 첨부서류 없음
- ※ 복대리인의 선임, 해임, 사임인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함.

마. 처리방법

※ 불수리대상인 경우, 132통지서의 수신자를 접수한 대리인으로 기재해야 한다.

- 1)  ,  을 클릭하여,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변경내용 입력한 후  을 클릭하면, 특허넷에 변경내용이 반영되고, 통지서 작성 화면이 새 창으로 뜬다.
- 2) Form PCT/RO/113 작성: 통지서에 자동입력된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Box 3에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상신한다.
- 3) Form PCT/RO/123 작성 : 선임, 해임, 사임 중 선택하고, 결재상신한다.
- 4) Form PCT/RO/123, 113 통지서(대리인선임, 대리인해임(필요한 경우) 시, 위임장 첨부)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한다.

※ 통지서 문구작성 예제 : Case Study 참조

[대리인선임]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대리인선임신고서 입력(제48호)					
접수서류 기본정보					
접수번호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자		국제출원일			
우선일자		파일참조기호			
대리인					
연임	대리인성명	대리인번호	대리인주소	대리인전화번호	대리인FAX번호
☐	기존 대리인이 연임되는 경우에만, 연임 체크				
출원인					
순번	성명	대표자여부	발명자여부	주소	전화번호 FAX 국적
1					
파일참조기호					
파일참조기호		위임장에 서류참조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서류참조기호 변경			
선임대리인					
	대리인성명	대리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국민					
외국인					
출원인 위임사항 선택					
					☐
삭제					
"대리인추가" 클릭하여 새로운 대리인 정보 입력 후, "중간서류입력" 클릭					
대리인추가 중간서류입력					

※ 주의

대리인 선임시(대리인 A → B로 변경) 제출된 위임장이나 신청서 상에 새로운 서류참조기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기존에 입력된 서류참조기호를 새로운 서류참조기호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서류참조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서류참조기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처리

* 서류참조기호가 기재되지 않는 포괄위임장 제출시도 같은 경우로 처리

Case Study

기록변경(RO/113) 통지서 작성요령

■ 작성기준

1. Box별 기재사항

기록변경요청(RO/113)은 수리관청(RO)이 국제사무국(IB)에 출원인, 발명자, 출원인겸발명자, 대리인의 변경 또는 정보변경 사항을 알려 기록(Record)에 반영하기 위하여 보내는 통지서이다. 각종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중간서류 입력 후 방식담당자는 RO/113을 작성하는데 기재란별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 Box 1.

- 체크란은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대표자 등 사람의 자격을 표시한다.
- 출원인 등의 정보 변경의 경우 : 변경 전 정보를 기재한다.
- 출원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삭제되는 출원인 등의 자격과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 등을 기재한다.
- 지정국 변경 혹은 자격변경의 경우 : 변경되기 전 상태를 기재한다(예: 오직 발명자(all) ⇨ 출원인(US only)겸 발명자(all)의 경우 : 발명자만 체크, 성명(명칭) 주소 등 기재).

2) Box 2.

- 체크란은 사람(명의), 성명, 주소, 국적, 거주국 등 변경된 사항을 표시한다.
- 출원인 등의 정보 변경의 경우 : 변경 후 정보를 기재한다.
- 출원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추가되는 출원인 등의 자격과 성명(명칭) 주소 등을 기재한다.
- 지정국 변경 혹은 자격변경의 경우 : 해당 체크박스가 없으므로 성명(명칭)과 주소 등만 기재한다(예 : 오직발명자(all) ⇨ 출원인(US only)겸 발명자(all)의 경우 : 체크하지 않고, 성명(명칭) 주소 등 기재).

3) Box 3. 설명(필요한 경우)

- 뒤에 기술되는 사례별 표준문구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특히 지정국 변경 혹은 자격변경의 경우 Box1. Box 2.의 기재만으로 변경내용을 다 표시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기록변경요청(RO/113)은 한 사람당 한 장의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한 장에 함께 작성한다.

- 1) 한 사람 삭제 및 한 사람 추가가 동시에 있는 경우: 삭제되는 사람은 Box 1.에 추가되는 사람은 Box 2.에 기재하고, 지정국이나 서류참조기호 등 설명사항이 있는 경우 Box 3.에 기재한다.
- 2) 변경되는 출원인 등이 2인 이상이나 이름 이외 모든 정보가 동일한 경우도 한 장의 RO/113에 기재하고 Box 3.에 설명을 적는다. 주로 주소가 동일한 복수의 대리인의 선임, 사임, 해임의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

■ 사례

1.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변경

※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의 명의,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의 지정국 변경

1) 기존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삭제

- Box 1. the applicant(applicant and inventor, inventor) 체크 및 기존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의 정보 확인
- Box 2. the person 체크
- Box 3. The applicant(applicant and inventor, inventor) identified in Box 1 should be deleted from the record.

2) 새로운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추가

- Box 1. the applicant(applicant and inventor, inventor) 체크
- Box 2. the person 체크 및 새롭게 추가되는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의 정보 확인

- Box 3. The person identified in Box 2 should be added to the record as applicant(applicant and inventor) for all designated states.
 - Box 3. The person identified in Box 2 should be added to the record as inventor only.
- 3) 기존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삭제 및 새로운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 추가(Form PCT/RO/113 1장으로 작성)
- Box 1. the applicant(applicant and inventor, inventor) 체크 및 기존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의 정보 확인
 - Box 2. the person 체크 및 새롭게 추가되는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 발명자)의 정보 확인
 - Box 3.는 사례 1),2)를 조합하여 기재
 - ※ A(출원인)⇒B(출원인)인 경우는 Box 3 기재안함
- 4) 오직 발명자에서 출원인 겸 발명자로 되는 경우
- Box 1. The inventor 체크 및 기존 발명자의 정보 확인
 - Box 2. the person 체크 및 출원인 겸 발명자의 성명, 주소 확인, 국적, 거주국(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 Box 3. The person identified in Box 2 is now recorded as applicant and inventor for all designated states.
 - ※ [RO 국제출원서 입력/수정] 화면에서 대리인의 위임입력, 출원인 겸 발명자의 국적, 거주국, 지정국(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추가
- 5) 오직 출원인에서 출원인 겸 발명자로 되는 경우
- Box 1. The applicant 체크 및 기존 출원인의 정보 확인
 - Box 2. the person 체크 및 출원인 겸 발명자의 정보 확인
 - Box 3.는 사례 4)와 동일하게 기재
- 6) 지정국 변경
- Box 1. The applicant(applicant and inventor) 체크 및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의 정보 기재

- Box 2. the person 체크 및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의 정보 기재
- Box 3. The person identified in Box 2 is now recorded as applicant (applicant and inventor) for all designated States.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대리인 선임, 해임, 사임

1) 대리인 선임

- Box 1. the agent 체크 및 기존 대리인 정보 확인(없는 경우 공란)
* 기존대리인의 경우 연임표시가 없는 한 해임된 것으로 봄
- Box 2. the person 체크 및 새로운 대리인 정보 확인
- Box 3. The person identified in Box 1 should be deleted in the record of the agent. A new agent has been appointed as indicated in Box 2.
- Box 3. A new agent has been appointed as indicated in Box 2. New file reference : ABC

※ 새로운 대리인의 위임장에 새로운 서류참조기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변경사항을 입력하면, Box 3.에 새로운 서류참조기호를 기재하는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된다(New file reference : ABC).

2) 대리인 해임

- Box 1. the agent 체크 및 기존 대리인 정보 확인
- Box 2. the person 체크 확인
- Box 3. The appointment of the agent indicated in Box 1 of record has been revoked. All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to the remained agent(the first named applicant). HONG, Gil Dong.

3) 대리인 사임

- Box 1. the agent 체크 및 기존 대리인 정보 확인
- Box 2. the person 체크 확인
- Box 3. The agent indicated in Box 1 has renounced his appointment. All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to the remained agent(the first named applicant). HONG, Gil Dong.

■ 기록변경요청서(Form PCT/RO/113) 서식

PATENT COOPERATION TREATY		담당사무관	
From the RECEIVING OFFIC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PCT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PCT Rule 92bis.1)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Date of mailing (day/month/year)	
International filing date (day/month/year)		International filing date (day/month/year)	
1. The following indications appear on record concerning: ☐ the applicant ☐ the inventor ☐ the agent ☐ the common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State of Nationality* Telephone No. Facsimile No. E-mail address State of Residence* 	
2. This receiving Office hereby requests the International Bureau to record the following change in: ☐ the person ☐ the name ☐ the address ☐ the nationality* ☐ the residence*			
Name and address		State of Nationality* Telephone No. Facsimile No. E-mail address ☐ Notifications by e-mail authorized State of Residence* 	
3. Further observation, if necessary			
* To be indicated only for a change concerning the applicant.			
Name and mailing address of the receiving Office  International Application Div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Facsimile No. +82 42 472 3473		Authorized officer COMMISSIONER Telephone No. 82-42-481-5202	

Form PCT/RO/113 (July 2008)

▣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통지서(Form PCT/RO/123) 서식

PATENT COOPERATION TREATY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5px;">담</td> <td style="padding: 2px 5px;">당</td> <td style="padding: 2px 5px;">사</td> <td style="padding: 2px 5px;">무</td> <td style="padding: 2px 5px;">관</td> </tr> <tr> <td style="height: 30px;"></td> <td style="height: 30px;"></td> <td style="height: 30px;"></td> <td style="height: 30px;"></td> <td style="height: 30px;"></td> </tr> </table>	담	당	사	무	관					
담	당	사	무	관								
From the RECEIVING OFFIC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PCT NOTIFICATION CONCERNING REPRESENTATION (PCT Rule 90 and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28)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Date of mailing (day/month/year)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International filing date (day/month/year)											
Applicant												
1. This receiving Office hereby gives notice of the receipt of a document containing: ☐ a power of attorney 대리인 선임시 체크 ☐ a revocation of power of attorney 대리인 해임시 체크 ☐ a renunciation of appointment 대리인 사임시 체크 2. This notification, together with a copy of the document indicated above, is sent to the addressee in its capacity as: ☐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the International Bureau, which is requested to record a change in the person of the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under Rule 92bis.1(a)(ii).												
Name and mailing address of the receiving Office International Application Div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89 Cheongsu-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Facsimile No. +82 42 472 3473		Authorized officer COMMISSIONER Telephone No. 82-42-481-5202										

Form PCT/RO/123 (July 1992; as revised January 2004)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기록변경 통지서(PCT/IB/306)의 처리

※ 출원인은 수리관청에 기록변경 요청(출원정보 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을 접수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기록변경 요청을 접수할 수도 있다.

1. 수리관청에서 처리된 기록변경에 대한 확인통지인 경우

※ RO가 기록변경 ⇒ PCT/RO/113을 IB에게 송부 ⇒ PCT/IB/306의 사본을 RO에게 송부 ⇒ RO가 IB의 기록변경을 확인

가. 수리관청에서 먼저 기록변경된 경우, 수리관청은 국제사무국에 PCT/RO/113을 송부하므로, PCT/IB/306이 PCT/RO/113과 동일한 내용인지를 확인한다.

나. 만약 PCT/IB/306이 PCT/RO/113과 내용이 다를 경우, 업무 담당자는 해당 출원번호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담당자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PCT/IB/306의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를 출원인에게 알려준다.

2. 수리관청에서 처리된 기록변경에 대한 확인통지가 아닌 경우

※ IB가 기록변경 ⇒ PCT/IB/306의 사본을 RO에게 송부 ⇒ RO가 IB의 기록변경을 반영

가. 국제사무국에서 직접 기록변경된 경우, 업무 담당자는 PCT/IB/306의 기록변경 내용을 특허넷에 반영한다.

나. 특허넷에 반영하는 방법

－ PCT/IB/306 서류 확인 : 특허넷 ⇒ 수리관청 ⇒ WIPO 변경기록통지서 조회

WIPO 변경기록통지서 조회 < RO 기타 < 수리관청

• 접수기관: RO ISA IPEA • 접수일자: 2016.12.26 ~ 2016.12.26 [조회]

• WIPO 변경기록통지서 목록 | 총 0건

순번	접수번호	출원번호	서식번호	서류명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방법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 기록변경 내용 반영 : 특허넷 ⇒ 수리관청 ⇒ RO 국제출원서 입력/수정 ⇒ 국제출원번호 입력, [조회] ⇒ 기록변경 내용 반영

5. 포괄위임장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제80조(제37호 서식))

가. 포괄위임 이후로 모든 PCT국제출원을 해당 대리인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포괄위임장 제출서를 접수한다.

나. 점검사항

- 1) 서지사항에 기재된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가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성명, 주소의 기재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 2) 대리인, 모든 관할 국제기관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3) 수리관청 기재란에 대한민국 지식재산처(RO/KR) 또는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RO/KR) 등으로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4) 포괄위임장의 출원인 날인 또는 서명이 선명한지 확인한다.
- 5) 포괄위임장의 위임일자가 접수일보다 이전(접수일 포함)인지 확인하고, 기재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PCT 시행 세칙 Section 110]
- 6) 첨부서류 : 포괄위임장 원본 1부(한글, 영문, 한영병기된 위임장 가능)

다. 포괄대리인 해임/사임 신고서 처리방법

- 1) 시스템 운영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고 확인 요청을 한다.
- 2) 시스템 운영자는 관련 포괄위임장 정보를 추출하여 방식심사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다.
- 3) 방식심사관의 확인 후, 데이터 수정 CSR을 등록하여 포괄위임장을 삭제한다.

6. 수수료납부서(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5조, 제104조(제47호 서식))

※ 수수료납부방법: 수수료납부서 접수 + 수수료 납부

- 방법1: 출원인이 수수료납부서 접수 후 부여된 납부자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로 24시간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 방법2: 출원인이 102, 133통지서에 부여된 납부자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기한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출원인은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수수료납부서가 접수된 것처럼 특허넷에 자동 생성된다.

가. 납부기한 :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Rules 14, 15 and 16]

나. 점검사항

-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 2) 【합계】 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3) [국제출원열람] 화면에서 수수료 중복납부 여부,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Form PCT/RO/133) 발송 여부 등 수수료 납부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주의

-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Form PCT/RO/133)가 발송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 미납된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구분을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로 한다.
-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Form PCT/RO/133)가 발송된 이후에는 외화는 이전과 동일하게 납부구분을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로, 원화는 납부구분을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가 아닌 ‘국제출원수수료보정’으로 한 수수료납부서로 제출하여야 특허넷에서 수수료 이력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Tip

- ☞ 원칙적으로 수수료 납부기한(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Form PCT/RO/133)를 발송한다.
- ☞ 가산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출원인에게 전화로 해당 출원의 진행의사 없음 확인 후, 국제출원 취하간주 통지서(Form PCT/RO/117) 발송한다.

다.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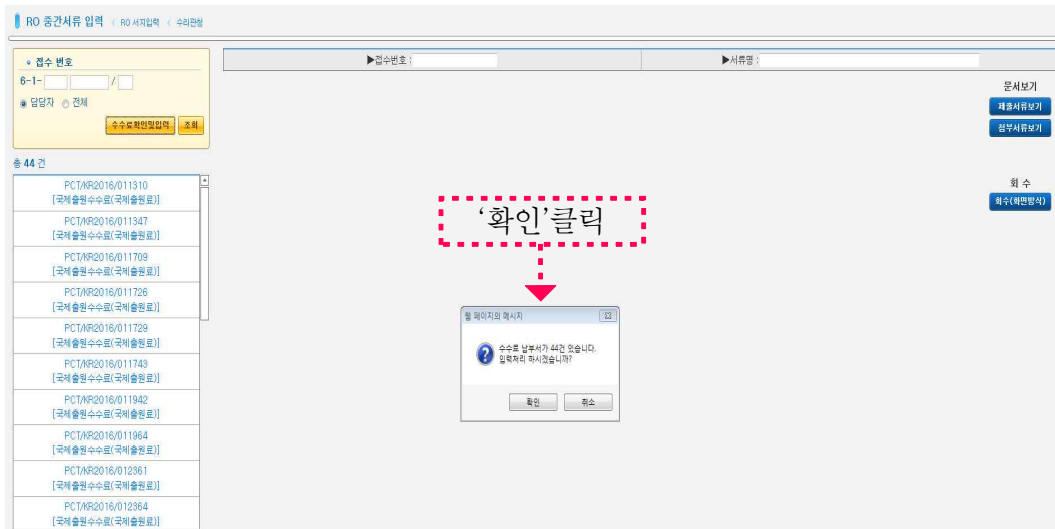
- 1) 불수리 대상 : **반려 사유** 를 클릭하여 불수리통지서(Form PCT/RO/132)를 작성한 후 결재상신한다(통지서 작성 시 수수료반환에 자동으로 체크되어 반환정보가 생성된다).

※ 해당 출원과 무관한 자가 수수료납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신인을 접수자로 변경하여 통지서를 작성해야함

- 2) 수리 대상

- 가) **수 리** , **중간서류입력** 을 선택하면 [중간서류입력] 화면이 새창으로 뜬다.
- 나) **수수료확인및입력** , **확인** 을 클릭하면 수수료납부내역이 일괄반영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RO 중간서류 입력' (RO Intermediate Document Input) screen.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a '수수료확인및입력' button highlighted by a red dashed box and a red arrow pointing to it, with the label '수수료 확인 및 입력' next to it. The main area contains a form with fields for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and '서류명' (Document Name). Below these are buttons for '문서보기' (View Document), '재출서류보기' (View Resubmitted Documents), and '입부서류보기' (View Submitted Documents). At the bottom, there's a section for '출구' (Output) with a table listing items like 'PCT/RO/2019/012104' and 'PCT/RO/2019/012104'.



- 라) 일괄 반영되지 않는 건은 과납 또는 미납이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 수수료재계산** 을 클릭하여 적정수수료, 납부한 금액 정보를 갱신하여 확인한다. 또한, 적정수수료가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출원서 등의 용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다.
- 마) 과납 또는 미납이 확인된 경우 **▶ 통지서작성** 을 클릭하여, 미납인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통지서(Form PCT/RO/102)를 작성하고, 과납인 경우에는 국제출원료 등의 반환통지서(Form PCT/RO/197)를 작성한다.
- 바) 다시 **중간서류입력** 을 선택하여 새창으로 뜬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 중간서류입력** 을 클릭하면 수수료납부내역이 반영된다.

RO 중간서류 입력 (RO 서지입력) 수리관청

접수번호 : 612016007032750 | 서류명 :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수수료납부서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 입력(제 65호의 28)

문서보기
제출서류보기
첨부서류보기

접수서류 기본정보

접수번호	612016007032750
국제출원번호	PCT/KR2016/006762
접수일자	2016-09-05
국제출원일	2016-09-01
우선일자	2016-09-01
가상계좌번호	73300000947023

회수
회수(회전방식)

수수료

수수료 종류	서류가제금액	적정수수료	납부인정금액
국제출원료	1,030 CHF	1,030 CHF	1,030 CHF
합계	1,030 CHF	1,030 CHF	1,030 CHF

[납부금액] [계납금액]

‘수수료재계산’클릭시 최신 정보로 갱신됨

납부금액	1,030 CHF	계납금액	0 CHF
		미납금액	0 CHF

과납·미납금액의 경우 통지서작성

통지서작성 > 중간서류입력 > 수수료재계산

※ 참 고

o 납부사항 확인 및 정정

- 위치 : 『수리관청』 ⇨ 『RO 수수료』 ⇨ 『RO 납부사항확인 및 정정』

※ 좌측 상단에 수수료납부서류의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입력하면, 납부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정상수납정보 확인>

<반환정보 확인>

7. 보정서(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특허법시행규칙 제102조, 제103조(제39호서식))

※ 우선권주장 보정요구서(Form PCT/RO/110)와 관계없이, 해당 우선권 주장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보정 또는 추가 신청 가능

가. 제출기한 : 우선일로부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로부터 1년 4월과 기존 우선일로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

※ PCT Rule 26bis.2(b)에 따른 우선권주장 무효 선언 전이고, 위 제출기한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위 제출기한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103조제5항]

나. 우선권주장의 보정 시, 점검사항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2) 【변경전】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3) 【변경후】 란의 정보를 수리할 경우, PCT출원의 우선일이 변경되는지 확인

4) 【변경후】 란에 국내출원(KR)이 기재된 경우, [출원번호(방식)]에서 출원번호, 출원일을 조회하여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변경 전 및 후 기재란에 선출원번호, 선출원일자, 선출원국가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5) 【우선권서류 송달】 란에 신청으로 기재된 경우, 【변경후】 란의 정보에 국내출원(KR)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우선권주장의 보정을 수리 하고 중간서류입력을 한 이후 『수리관청』 ⇨ 『RO 문서교환』 ⇨ 『RO 우선권 미송부 대상 리스트』 에서 보정대상(선출원일자 및 번호 불일치)이었던 우선권을 삭제한다.

※ WIPO를 통해 보정한 경우, 우선권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선 연락하여 우선권 서류 송달신청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우선권주장의 추가 시, 점검사항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2) 【추가내용】 란의 정보를 수리할 경우, PCT출원의 우선일이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출원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3) 【추가내용】 란에 국내출원(KR)이 기재된 경우, [출원번호(방식)]에서 출원번호, 출원일을 조회하여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4) 【우선권서류 송달】란에 신청으로 기재된 경우, 【추가내용】란의 정보에 국내출원(KR)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처리방법

- 1) **수리**, **중간서류입력**을 클릭하여,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변경내용 입력한 후 **> 중간서류입력**을 클릭하면, 특허넷에 변경내용이 반영되고, 통지서 작성 화면이 새 창으로 뜬다.

※ 출원국: national(KR, US, JP 등), regional(EP 등), international(PCT)

※ 【변경후】란에 국내출원(KR)이 기재됐으나, 【우선권서류 송달】란 미신청으로 기재된 경우, 추가적으로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이 필요함을 전화로 안내한다.

- 2) Form PCT/RO/111 작성: 통지서에 자동입력된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결재상신한다.

※ 통지서 1건 당 1개의 우선권 정보만 기재

[참고] 「우선권의 회복」 관련 규정 유보국가

국제출원일이 당해 우선권 기간(1년)의 만료일 후이나 당해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우선권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거나 또는 비고의적이었다고 판단될 때 우선권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이다.

▶ 「Rule 26bis.3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의 회복」 관련 유보국

PCT Rule 26bis.3(i)의 규정에 따라 「Rule 26bis.3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의 회복」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통지한 수리관청은 현재 **대한민국(KR)**을 포함하여 BR, CO, CU, CZ, DE, DZ, GR, ID, IN, PH 11개국이다.

▶ 「Rule 49ter.1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 관련 유보국

PCT Rule 49ter.1(g)의 규정에 따라 「Rule 49ter.1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통지한 지정관청은 현재 **대한민국(KR)**을 포함하여 BR, CN, CO, CU, CZ, DE, DZ, ID, IN, LT, MX, PH 13개국이다.

▶ 「Rule 49ter.2 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 회복」 관련 유보국

PCT Rule 49ter.2(h)의 규정에 따라 「Rule 49ter.2 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 회복」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통지한 지정관청은 현재 **대한민국(KR)**을 포함하여 BR, CA, CN, CO, CU, CZ, DE, DZ, ID, IN, MX, PH 13개국이다.

☞ 위 정보는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선권주장에 관한 통지서(Form PCT/RO/111) 서식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담 당 사 무 관
발신: 수리관청 수신:	우선권주장에 관한 통지서 (PCT 규칙 26bis.1 및 26bis.2; PCT 시행세칙 302 및 314)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발송일 (일/월/년)	
국제출원번호		중요통지사항	
출원인		국제출원일 (일/월/년)	
이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 우선권주장의 보정. <u>우선권주장 보정 신청일</u> 자료 접수된 출원인의 통지서에 따라서 아래의 우선권주장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었습니다: <u>추가로 우선권의 순전국, 순전일, 순원번호</u> ☐ 비록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비록 우선권주장의 아래 기재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 비록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priority period) 만료 후이나, 동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2. ☐ 우선권주장의 추가. _____ 자료 접수된 출원인의 통지서에 따라서 아래의 우선권주장이 추가되었습니다. ☐ 비록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비록 우선권주장의 다음 기재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 비록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priority period) 만료 후이나, 동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3. ☐ 아래의 사유로 해당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칙 26조의 2.2(b)). ☐ 규칙 26조의 2.1(a)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시점에, 출원인으로부터 서식 PCT/RO/110에 통지된 바와 같이 규칙 4.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는 통지서가 수리관청에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출원인의 통지서가 규칙 26조의 1(a)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 후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은 규칙 4.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정될 수 없었습니다. ☐ 출원인의 통지서가 규칙 4.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충족되도록 보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출원인은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동 정보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할 것입니다(규칙 26조의 2.2(d)).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482-42-472-3473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5202	

서식 PCT/RO/111 (2008년 7월)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우선권주장에 관한 통지서 (PCT 규칙 26bis.1 및 26bis.2; PCT 시행세칙 302 및 314)				
발신: 수리관청 수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담 당 사 무 관</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담 당 사 무 관			
담 당 사 무 관						
출원일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발송일 (일/월/년)					
국제출원번호	중요통지사항					
출원인	국제출원일 (일/월/년)					
이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 우선권주장의 보정. _____ 차로 접수된 출원인의 통지서에 따라서 아래의 우선권주장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었습니다: ☐ 비록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비록 우선권주장의 아래 기재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 비록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priority period) 만료 후이나, 동 만료일부터 2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2. ☒ 우선권주장의 추가. <u>우선권주장 추가 신청일</u> _____ 차로 접수된 출원인의 통지서에 따라서 아래의 우선권주장이 추가되었습니다. <u>추가된 우선권의</u> <u>출원국</u>, <u>출원일</u>, <u>출원번호</u> ☐ 비록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비록 우선권주장의 다음 기재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 비록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priority period) 만료 후이나, 동 만료일부터 2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3. ☐ 아래의 사유로 해당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칙 26조의 2.2(b)). ☐ 규칙 26조의 2.1(a)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시점에, 출원인으로부터 서식 PCT/RO/110에 통지된 바와 같이 규칙 4.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는 통지서가 수리관청에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출원인의 통지서가 규칙 26조의 1(a)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 후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은 규칙 4.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정될 수 없었습니다. ☐ 출원인의 통지서가 규칙 4.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충족되도록 보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출원인은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동 정보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할 것입니다(규칙 26조의 2.2(d)).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482-42-472-3473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5202					

서식 PCT/RO/111 (2008년 7월)

국제출원번호

- 최종 우선일

6. ☐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위 항(들)은 아래의 우선권주장(들)과 관련됩니다.

- 83

8.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6(제48호 서식))

가. 제출기한 : 우선일로부터 16월 이내 [Rule 17.1]

※ 단, “우선권서류 제출”은 상기 기간의 종료 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선출원의 사본은 국제공개일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였을 경우 당해 기간의 마지막 날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Rule 17.1(a)].

⇒ 따라서, “우선권서류 제출”은 통상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7개월까지 처리가능. 송달신청은 16개월 후 반려이기 때문에 국내 우선권서류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함.(17개월 이후 신청 건은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하도록 안내)

나. 우선권서류 제출 시, 점검사항

-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 2)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표시】 란의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출원국】 정보가 출원서 및 우선권서류 첨부파일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 3) 우선권서류 첨부파일이 해상도 300~400dpi의 흑백 TIFF파일(PDF불가)인지, 스캔상태가 양호한지 등을 확인한다.

※ 스캔 상태가 불량하다면 대리인 유선 확인 必

※ 서면으로 우선권서류 제출된 경우에는 서면원본과 전자화된 파일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함 ⇒ 서면원본은 수리관청에 보관, 전자화된 파일은 IB로 송부됨

다. 우선권서류 송달 시, 점검사항

-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 2)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표시】 란의 【출원국】 이 대한민국(KR) 인지 확인하고,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출원국】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첨부파일 없음).

※ 출원서의 제6기재란(Box NO.VI) 하단에 이미 송달신청을 했다면, 출원인은 우선권서류 송달을 중복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중복 송달 신청 시 불수리).

라. 처리방법

- 1)  ,  을 클릭하여,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해당 우선권

번호를 체크한 후  을 클릭한다.

2) 서면으로 우선권서류 제출된 경우에는 서면원본 서류는 창고에 보관한다.

9. 서류제출서(국제조사용번역문)(특허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35호 서식))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기한 : 국제출원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Rule 12.3]

- 1월 이내 미제출시, 가산료와 함께 그 기한을 1월 더 연장한다(국제출원번역문 제출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Form PCT/RO/150)).
- PCT/RO/150통지일로부터 1월 또는 국제출원접수일로부터 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번역문과 가산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제출원 취하간주 통지(Form PCT/RO/117)를 한다.

나. 점검 사항

- 1) 【출원인】 및 【대리인】 란의 정보가 출원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기재해도 된다).
- 2) 첨부파일의 파일명과 형식을 확인한다. (조사용번역문 xml / 번역문 pdf)
- 3) 첨부파일의 형식(단락, 여백, 페이지표시 등)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이 기존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 AT(영어, 불어, 독어), AU(영어), JP(일본어, 영어)

다. 처리방법

- 1)  를 클릭한다( 창에는 나타나지 않음).
- 2) PDF 파일 좌측 상단에 'RECORD COPY TRANSLATION(RULE 12.3)', 우측 상단에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을 날인한다.
- 3) 날인이 완료된 PDF 파일을 패키지 생성 요청 후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10. 취하서의 처리(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7 제49호 서식)

출원인은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 지정국, 우선권주장, 누락부분에 대한 보완을 취하할 수 있다.

가. 국제출원취하서의 처리

- 1) 제출기한 :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전(국제공개 전 취하를 요구할 경우는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이루어지기 전, 통상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전 권장, 실무적으로는 17개월 전까지 수리관청에서 서류 처리 가능)[Rule 90bis.1]
⇒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선일로부터 29월 10일까지 처리가능(29월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는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하도록 안내)

- 2) 첨부서류 : 취하서 원본 1부.

- 3) 주요 방식 점검 사항

가) 취하서가 규정된 기간 내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출원인 또는 모든 출원인의 대리인이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관련법 :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나) 취하서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했을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다.
(국제출원 취하 시 모든 출원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모든 위임장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다) 취하서 원본을 제출하였는지 확인한다.(기존 출원서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

4) 처리방법

가) 취하 통지서(Form PCT/RO/136) 작성: 통지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발송하고, 통지서 사본과 취하서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나) 국제출원의 취하 통지는 국제공개가 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진술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그 취하서의 효력은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취하서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므로 수리관청은 기일(우선일로부터 17개월)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 국제출원의 취하서가 접수되었으나 이미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수리관청 담당자는 그 내용을 출원인(대리인)에 알리고 진행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출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한다.

라) 취하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가 납부되어 있다면, 아래 반환 요건을 참고하여 수수료 반환통지서(Form PCT/RO/119) 작성한다.

- 국제출원료 반환: 국제사무국(IB)에 기록원본(RECORD COPY)을 송부하기 전에 취하되거나 취하 간주된 경우 [Rule 15.4] ⇒ WIPO 송부일자 시스템상 찍히기 전에 요청하는 경우 (301 통지서 수령과 관계없음)
- 조사료 반환: 국제조사기관(ISA)에 조사용사본(SEARCH COPY)을 송부하기 전에 취하되거나 취하 간주된 경우 [Rule 16.2] => ISA/202 수령 이전

※ 국제출원 취하일은 수리관청(또는 국제사무국)에 취하서가 접수된 날로 보며 [Rule 90bis.1(b)], 송달료(45,000원)는 반환하지 않는다.

※ 가산료는 반환 불가능

Tip

국제출원 취하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하서 제출이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후에 제출되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혹은 공개된 경우, 출원인(대리인)에게 취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출원 취하서 접수 시에 수수료납부 여부와 반환 가능 금액을 검토하여 수수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출원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취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지정취하서의 처리

- 1) 제출기한 :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전(단, 자가지정(KR)의 경우는 15개월 내에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선출원이 취하되지 않는다.) [Rule 90bis.2]
- 2) 첨부서류 : 지정취하서 원본 1부.
- 3) 주요방식 점검 사항 : 상기 「가. 국제출원취하서의 처리」 준용
- 4) 처리방법 : 상기 「가.국제출원취하서의 처리」 준용
- [중간서류입력] 화면에서 취하 대상 지정국을 선택한다(대한민국 : NP-KR).

[참고] 자가지정

국내출원 또는 한 나라만의 지정국을 가진 국제출원에 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행한 국제출원에서 해당국을 지정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가지정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우선권주장이 행하여진 국가의 국내법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우선권을 기초로 PCT국제출원을 하면서 한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에 의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자가지정의 건인 경우 방식심사단계에서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전화 등 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5개월 내 지정취하서를 제출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가지정에 대한 지정취하서가 우선일로부터 15개월 이후에 제출되었다면 선출원의 취하와 함께 자국에 대한 출원기회마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의도를 파악한 후 처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우선권주장 취하서의 처리

- 1) 제출기한 : 상기 「가.국제출원취하서의 처리」 준용
- 2) 첨부서류 : 상기 「가.국제출원취하서의 처리」 준용
- 3) 주요방식 점검 사항 : 상기 「가.국제출원취하서의 처리」 준용
- 4) 처리방법 : 상기 「가.국제출원취하서의 처리」 준용 (Form PCT/RO/136 작성)
※ 우선권이 여러 개일 경우, 해당 우선권 번호를 통지서에 기재

라. 지정국취하 중간서류입력 화면

RO 중간서류 입력 > RO 서지입력 > 권리관청

접수 번호: 0-1- / /
 담당자: 전체
 접수로 확인입력 조회

접수번호: 612021007692017
 서류명: [수리관청] 지정취하신청서

출원인 정보

성명	대표자구분	출원인별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FAX	국적
	출원인	출원인/발명자				KR

총 1건

PCT/JP2021/000000
 [수리관청] 지정취하신청서

지정국선택

Regional Patent

☐ JP BIW GH GM HR IE LR LS MW MZ NA SD SL SZ TZ UG ZM ZW

☐ EA AM AZ BY KG KZ MD RO TJ TM

☐ EP

☐ AL	☐ AT	☐ BE	☐ BG	☐ CH	☐ CY	☐ CZ	☐ DE	☐ DK	☐ EE	☐ ES	☐ FI	☐ FR	☐ GB	☐ GR
☐ HR	☐ HU	☐ IE	☐ IS	☐ IT	☐ LT	☐ LU	☐ LV	☐ MC	☐ MK	☐ MT	☐ NL	☐ NO	☐ PL	☐ PT
☐ RO	☐ RS	☐ SE	☐ SI	☐ SK	☐ SM	☐ TR								

☐ OA BF BJ CF CG CI CM GA GN GO GW ML MR NE SN TD TG

National Patent

☐ AE	☐ AG	☐ AL	☐ AM	☐ AO	☐ AT	☐ AU	☐ AZ	☐ BA	☐ BB	☐ BG	☐ BH	☐ BN	☐ BR	☐ BW
☐ BY	☐ BZ	☐ CA	☐ CH	☐ CL	☐ CN	☐ CO	☐ CR	☐ CU	☐ CZ	☐ DE	☐ DK	☐ DM	☐ DO	☐ DZ
☐ EC	☐ EE	☐ EG	☐ ES	☐ FI	☐ GB	☐ GD	☐ GE	☐ GH	☐ GM	☐ GT	☐ HN	☐ HR	☐ HU	☐ ID
☐ IL	☐ IN	☐ IS	☐ JP	☐ KE	☐ KG	☐ KM	☐ KN	☐ KP	☒ KR	☐ KZ	☐ LA	☐ LC	☐ LK	☐ LR
☐ LS	☐ LT	☐ LU	☐ LV	☐ LY	☐ MA	☐ MD	☐ MG	☐ MK	☐ MN	☐ MT	☐ MW	☐ MX	☐ MY	☐ MZ
☐ NA	☐ NG	☐ NI	☐ NO	☐ NZ	☐ OM	☐ PA	☐ PE	☐ PG	☐ PH	☐ PL	☐ PT	☐ QA	☐ RO	☐ RS
☐ RU	☐ RW	☐ SC	☐ SD	☐ SE	☐ SG	☐ SK	☐ SL	☐ SM	☐ ST	☐ SV	☐ SY	☐ TH	☐ TJ	☐ TM
☐ TN	☐ TR	☐ TT	☐ TZ	☐ UA	☐ UG	☐ US	☐ UZ	☐ VC	☐ VN	☐ YU	☐ ZA	☐ ZM	☐ ZW	

지정제약국

중간서류입력

※ KR 지정국 취하인 경우, KR 체크하고 중간서류 입력한다.

마. 취하통지서(Form PCT/RO/136) 서식

PATENT COOPERATION TREATY		담당파트장
From the RECEIVING OFFIC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PCT NOTIFICATION OF WITHDRAWAL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26)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Date of mailing By post here only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International filing date By/with the IC	
Applicant		
1. This receiving Office hereby transmits a notice effecting withdrawal received from the applicant on: _____ 2. The withdrawal concerns: ☐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the following designations of States: ☐ for an ARIPO patent (AP) (if the withdrawal concerns only that of the ARIPO member States, the following text is not applicable) ☐ all States designated for a Eurasian patent (EA) ☐ for a European patent (EP) (if the withdrawal concerns only that of the EPC member States, the following text is not applicable) ☐ all States designated for an OAPI patent (OA) ☐ for a national patent (if the withdrawal concerns only that of the national patent, the following text is not applicable) ☐ the priority claims of the invention 3. ☒ A copy of this notification is being sent to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Name and mailing address of the receiving Office International Application Div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89 Cheongso-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Facsimile No. +82 42 472 3473	Authorized officer COMMISSIONER Telephone No.	

Form PCT/RO/136 (October 1996; reprint January 2004)

바. 지정국 취하통지서(Form PCT/RO/136) 서식

PATENT COOPERATION TREATY	
From the RECEIVING OFFIC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PCT NOTIFICATION OF WITHDRAWAL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26)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RX20210109	Date of mailing (day/month/year) 22 OCTOBER 2021 (22.10.2021)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KR	International filing date (day/month/year)
Applicant	
1. This receiving Office hereby transmits a notice effecting withdrawal received from the applicant on: 18 October 2021 (18.10.2021) 2. The withdrawal concerns: ☐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the following designations of States: ☐ for an ARIPO patent (AP) <i>(if the withdrawal concerns only some States, specify those States by indicating the two-letter country codes):</i> ☐ all States designated for a Eurasian patent (EA) ☐ for a European patent (EP) <i>(if the withdrawal concerns only some States, specify those States by indicating the two-letter country codes):</i> ☐ all States designated for an OAPI patent (OA) ☒ for a national patent (specify the States by indicating the two-letter country codes): KR ☐ the priority claim <i>(if multiple priorities have been claimed, specify the priority claim(s) to which the withdrawal relates):</i> 3. ☒ A copy of this notification is being sent to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Name and mailing address of the receiving Office International Application Div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89 Cheongsu-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Facsimile No. +82 42 472 3473	Authorized officer COMMISSIONER Telephone No. 82-42-481-5762

Form PCT/RO/136 (October 1996; reprint January 2004)

11. 보정서(국제출원 보정)의 처리(Rule 26, 특허법시행규칙 제101조 제39호 서식)

보정요구서(RO/106)에 대한 보정사항의 치유는 출원인의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국제출원 보정) 및 그에 따른 대체용지의 제출에 의하여 치유된다(보정기간 2월).

예외

- ☞ 보정기간은 2월 이내이나 실무적으로는 2월이 경과하여 제출하여도 수리한다.[Rule 26.2] 단, 보정이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과 모든 보정은 국제사무국에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 ☞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이 규칙 11에서 정한 형식상의 요건을 정형화된 국제공개에 적합할 정도로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상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Rule 26.5]

가. 출원서 보정사항(출원인 주소의 부적절한 기재, 발명의 명칭 불일치, 전자서명 누락 등)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제출된 대체용지의 결함 치유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한다.
- 전자서명 누락에 대한 결함은 해당 페이지에 출원인 (대리인) 의 서명이 날인된 대체용지를 제출하여 치유한다.
- 보정을 통하여 주소, 발명의 명칭 등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리관청 담당자가 ‘[중간서류입력]’ 또는 『RO 국제출원서 입력/수정』 메뉴에서 직접 수정해야 한다.
- 보정이 치유된 대체용지는 우측 상단에 ‘국제출원번호 및 보정서 접수일’ 기재하고, 하단에 「SUBSTITUTE SHEET」 를 날인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스탬프 이용).

나. 위임장 날인 식별 곤란, 위임장 일부 및 전체 미첨부

▷ 처리방법

- 해당 위임장을 제출하여 치유한다.
- 제출된 위임장은 우측 상단에 국제출원번호 및 보정서가 접수된 일자를 날인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다. 출원서 이외의 부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에 대한 보정 사항 및 처리방법

1) 보정서(국제출원 보정)를 통해 치유되는 주요 보정사항[Rule 11]

가) 발명의 설명의 발명의 명칭이 출원서와 일치하지 않음

나) 각 요소가 별개의 용지에 작성되지 않음

다) 용지의 양면을 사용함

라) 용지가 A4사이즈(29.7cm×21cm)가 아님

마) 최소 여백이 규정에 미치지 못함(상 : 2cm, 좌 : 2.5cm, 우 : 2cm, 하 : 2cm)

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요약서의 용지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음

사) 용지번호가 여백에 위치함

아) 기재사항 중 대문자의 크기가 세로 0.28cm 미만임

자) 도면 용지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았음(예 : 1/3, 2/3,

3/3)

차) 도면에 세로 0.32cm 미만인 숫자 및 문자가 있음

카) 도를 가로로 배열한 경우, 도의 상단이 용지의 좌측에 배열되지 않음

2) 처리방법

가) 결함의 치유 여부를 확인한다.

나) 대체용지의 내용이 기존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급적 보정되는 페이지만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다) 보정되는 페이지 이외의 페이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라) 보정이 치유된 대체용지는 우측 상단에 ‘국제출원번호 및 보정서 접수일’ 기재하고, 하단에 「SUBSTITUTE SHEET」를 날인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스탬프 이용).

※ 주의

출원서 이외의 부분에 대한 대체용지에 포함된 본문(text matter) 또는 도면(drawings)이 국제출원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경우, 수리관청은 이 대체용지를 수리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단지 형식상 결함(formal defects)의 보정만을 포함한 용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출원인에게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참고] 보정서로 제출한 도면(대체용지)가 원본과 상이한 경우

<132 통지서 작성 방법>

- 1) 2018.00.00.자로 제출하신 “국제출원 보정서” 관련입니다.
 - 2) 상기 서류는 도면의 대체용지에 원래 없던 선이나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보정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수리 합니다.
- * 특허협력조약규칙 제91조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실 경우, “보정 (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신청구분 항목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선택)를 작성하여 국제조사기관(ISA)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Tip

- ☞ 출원인이 제출한 대체용지로 인해 국제출원용지의 총 매수가 변경되는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Box. No. IV(점검란)의 매수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 ☞ 서면 제출의 경우, 대체용지를 ePCT 형식으로 전체 출원서 용지를 제출하여도 수리 가능하다.

다. 대체용지 작성방법

1) 대체용지의 용지번호

o 용지가 추가되는 경우

1매 이상의 용지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각각의 용지는 이전 장의 용지 번호와 그에 뒤따르는 사선 및 또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도록 하여 추가용지를 일련으로 넘버링하며, 변경되지 않은 용지 다음에 추가되는 첫 번째 장의 용지번호가 항상 1번으로 시작하게 한다(예, 10/1, 15/1, 15/2, 15/3 등).

2) 대체용지 작성사례

발명의 설명(Description) 페이지 2, 3, 청구항 페이지 4, 도면 페이지 2/3, 3/3을 보정한 결과, 발명의 설명 2, 3 페이지 뒤에 각각 용지의 추가가 있고, 청구항 부분은 보정은 있었지만 페이지의 추가가 없었으며, 도면은 2/3 페이지가 삭제된 경우

o 보정 전의 페이지

1 description	2 description	3 description	4 Claim	5 Abstract
1/3 Drawing	2/3 Drawing	3/3 Drawing		

o 보정 후의 페이지

1 description	2 description	2/1 description	3 description	3/1 description
4 Claim	5 Abstract	1/3 Drawing	[2/3] <Deleted> Drawing	3/3 Drawing

o 제출할 대체용지

상기와 같은 보정의 경우 최종적으로, 페이지 2, 2/1, 3, 3/1(이상 Description 부분), 4(Claim 부분), 2/3, 3/3(Drawing 부분) 쪽을 그대로 페이지 넘버링하여 대체용지로 제출한다(도면 2/3쪽은 백지에 [2/3]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Deleted>를 표시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도면의 3/3쪽의 쪽번호 밑에 [2/3]을 기재하고 그 밑에 <Deleted>를 표시하여 3/3 쪽만 제출한다).

라. 보정서(국제출원 보정) 중간서류입력 화면

- 1) 보정내용을 확인한 후 항목별로 기존 서지사항을 수정 또는 추가한다.
- 2) 치유된 보정항목을 선택한 후 ‘중간서류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특허넷에 반영된다.

RO 중간서류 입력 > RO 서지입력 > 수리관청

접수번호: 612016007407015 | 서류명: [국제출원 보정][수리관청]

문서보기
재출서류보기
첨부서류보기

최수
최수(확정판식)

접수번호
6-1- / /
담당자 전체
조회

출 1 건
[국제출원 보정][수리관청]

국제출원서수정
BOX I BOX II BOX III BOX IV BOX V
BOX VI BOX VII BOX VIII BOX IX BOX X

Applicant's or Agent's reference 수정
File Reference

Box No. I TITLE OF INVENTION 수정 삭제 TOP
Title of Invention

Box No. II APPLICANT 수정 추가 삭제 TOP
개인/법인 법인
This person is applicant
Name
Address
Name(English)
Address(English)
Telephone
Facsimile
e-mail
State of Nationality KR
State of Residence KR
Applicant's registration No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all designation states

[국제출원 보정][수리관청]보정(보완, 정정신청)서
보정재출서류(제 55조의 16)

접수서류 기본정보
접수번호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자 20160922
국제출원일 20160722
우선일자 20150719

국제출원서 보정사항
명칭일자 대항목 소항목 치유여부
20160726 서명에 관한 보정 기타 서명에 관한 보정사항 ☒

중간서류입력

1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서 처리(특허법시행규칙 제84조 제39호 서식)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서는,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Rule 91.1(b)]

가. 제출기한 : 우선일로부터 26월 이내 [Rule 91.2]

나. 주요 방식 점검 사항

- 1) 【출원인(발명자)】 및 【대리인】 란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서(REQUEST) 상의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만약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 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기재한다.
- 2) 【보정(보완,정정)할대상】 이 국제출원서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해당하는지 확인
- 3) 첨부서류
 - 정정내용(변경 전후의 차이점)을 적은 설명서
 -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포함하는 대체용지 1부.

다. 처리방법

- 1) 정정을 허가하는 경우, 정정내용을 특허넷에 반영하고, 정정을 허가한 용지의 하단 여백 중앙에 “RECTIFIED SHEET(RULE 91.1)”를 날인한다.

Tip

☞ 명백한 잘못의 정정 승인 여부는 수리관청은 **방식담당자**,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실체심사관**이 결정한다.

- 2) 서지사항, 설명서, 대체용지의 우측 상단에 출원번호 및 접수일을 날인한다.
- 3)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결정통지서(Form PCT/RO/109)를 출원인에게 발송하고, 통지서 사본, 서지사항, 설명서, 대체용지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라.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결정통지서(Form PCT/RO/109) 서식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담 당 사 무 관
발신: 수리관청 수신:	PCT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결정통지서 (PCT 규칙 91.3(a) 및 (d))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발송일 (일/월/년) 답변기간 없음. 단, 아래 마지막 문단 참조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6년 08월 12일 (12.08.2016)	
출원인		
수리관청은 출원인에 의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의 출원서/기타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고려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1. ☐ 정정을 허가함: ☐ 출원인이 신청한 바와 같이. ☐ 아래와 같은 범위내에서*: 2. ☐ 사유로 인하여 정정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함*: 출원인의 정정신청서와 이 통지서의 사본은 국제사무국에 송부되었습니다. * 정정허가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출원인은 거부일부터 2월 이내에, 특별 수수료납부를 조건으로, 국제사무국에 정정신청서, 당해 기관에 의한 거부 이유, 출원인이 제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간단한 의견서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91.3(d) 및 수수료 금액에 관하여는 PCT출원인 안내, 제1권, 부록B2(1B) 참조.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 42 472 3473 서식 PCT/RO/109 (2007년 4월)	특허청장 전화번호:	

참고: 명백한 잘못의 정정의 관할기관 [PCT Rule 91.1(b)]

91.1 명백한 잘못의 정정

- (b) 잘못의 정정은 “**관할 기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즉,
- (i) 국제출원의 출원서 부분 또는 그 보정서에 있어서의 잘못의 경우-**수리관청**
 - (ii)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또는 그 보정서에 있어서의 잘못의 경우 (iii)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관할기관이 아니라면-**국제조사기관**
 - (iii)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또는 그 보정서, 또는 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있어서의 잘못의 경우로,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었고 그 청구가 취하되지 않았으며 규칙 제69.1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 착수일이 경과한 경우 - **국제예비심사기관**
 - (iv)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i) 내지 (iii)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요약서 또는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잘못의 경우 - **해당 관청,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

참고: 대체용지와 설명서의 작성 [PCT Rule 91.2]

규칙 제91조 국제출원 및 기타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의 정정

91.2 정정신청

규칙 제9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은 우선일로부터 26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정정신청에는 정정되어야 할 잘못 및 제안된 정정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간단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규칙 제26.4조의 규정은 제안된 정정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참고 : 명백한 잘못의 정정 인정여부 판단기준

[PCT Rule 91.1(c)]

- (c) 관할 기관은, (f)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일에, 관련 문서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의도되어 있었고, 제출된 정정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의도되어 질 수 없었다는 것이 관할 기관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에만 본 규칙에 의하여 잘못의 정정을 허가한다.

중간서류 전자전송 확대 관련 스탬프 찍는 방법

■ 첨부서류 스탬프 찍기(PDF)

☒ 출원번호, 접수일자 출력
 ☐ 텍스트 출력

☒ Stamp 선택(출원하단)
 Stamp 선택
 SUBSTITUTE SHEET (RULE 26) RO/KR

Stamp 위치 변경
 우측상단 : X: 0, Y: 0
 출원하단 : X: 0, Y: 20

☒ 출원정보

페이지 선택
☒ 1
☒ 2

☒ Stamp 선택(Free)
 Stamp 입력
 PCT/KR20

X: 250	Y: 102
10 JAN 2019 (10.01.2019)	X: 250, Y: 135
대한민국 특허청	X: 250, Y: 161
PCT 국제출원	X: 250, Y: 171

페이지 선택 : 1
 *페이지 입력 예 : 1,3,5
 (X 축 중앙 : 250, Y 축 중앙 : 400)

☒ Stamp 선택(Free2)
 Stamp 입력
 10 JAN 2019 (10.01.2019)

X: 250	Y: 348
X: 250	Y: 275
X: 250	Y: 350

페이지 선택 : 2
 *페이지 입력 예 : 1,3,5
 (X 축 중앙 : 250, Y 축 중앙 : 400)

- ① **출원번호**, 접수일자 : 위임장, 대체용지, 정정용지 등 모든 서류(오른쪽 상단) - 기본 세팅
 ② 서류 종류 : 대체용지, 정정용지 등(중앙 하단) - 서류 종류에 따라 선택 필요
 ③ **출원서 1페이지 (Stamp 선택(Free))** : **출원번호**, **출원일자**, **수리판청명**
 ④ **출원서 마지막 페이지 (Stamp 선택(Free2))** : **출원일자**, **국제조사기관(필요한 경우)**
 ※ 필요한 경우, 스탬프 위치 좌표 조정

☞ 첨부서류 스탬프 찍기 화면 (PDF)

- 상단 메뉴의 [스탬프 아이콘] 을 클릭하면 왼쪽에 스탬프 내용이 표시 됨



- 스탬프 선택 후, [stamp 삽입]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서류**에 스탬프가 추가 됨
- 추가된 스탬프 확인 후, [stamp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스탬프가 추가된 첨부서류가 저장 됨

■ 샘플 - 출원서 1페이지

		PCT/KR20 RO/KR 12 Feb, 2019 ①
1/4		
PCT 출원서		
(전자적 형태가 원본)		
9	수리관청 명칭	PCT/KR20
9-1	국제출원번호	
9-2	국제출원일자	10 JAN 2019 (10.01.2019) ③
9-3	수리관 "출원" "출원"	대한민국 특허청 PCT 국제출원
9-4	적용 PCT/RO/1991-PCT 출원지	
9-4-1	무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작성되었다.	ePCT-Filing Version 4.4.006 MT/FOP 20190103/0.20.5.24
9-5	설명	
이제 이양인준 본 국제출원서가 특허청의 소관내 의해 처리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9-6	출원인이 지정한 수리관청	대한민국 특허청 (RO/KR)
9-7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장소	201
I	발명의 명칭	
II	출원인	
II-1	이 사람	오직 출원인 (applicant only)
II-2	무주 지정국에 관한 출원인	모든 지정국 (all designated States)
II-4a	성명	(주)
II-4a	Name	, LTD.
II-5a	무주	대한민국
II-5a	Address:	
II-6	국적	Republic of Korea
II-7	지수국	대한민국 KR
II-8	전파번호	대한민국 KR
II-9	팩스번호	
II-10	이메일 주소	
II-10a	이메일 사용자의 수리관청, 국제사무관, 국제사무관, 국제사무관이 필요 시 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된 통지서를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 (서면 통지서는 미발송)
II-11	출원인 코드	
SUBSTITUTE SHEET (RULE 26) RO/KR ②		

■ 샘플 - 출원서 마지막 페이지

PCT/KR20*
RO/KR 12 Feb. 2019

①

4/4
(필자의 형태가 원본)

PCT 출원서

	필수 항목	선택 항목	필수적 과업 항목
IX-6	주요도 제한 용어	-	✓
IX-9	개별의입장 원본	-	✓
IX-20	표적지역 수권지역의 할 도면 번호	3	
IX-21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	한국어	
X-1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X-1-1	서명		
X-1-3	권한 (출원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수리관청 전용

10-1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의 일체 접수일	10 JAN 2019 (10.01.2019)
10-2	도면 접수	
10-2-1	이 접수	
10-3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완성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수송 기간내 제출에 따른 결정권 일체 접수일	
10-4	PCT 제11조(2)에 따라 제출의 요구된 보완서류의 기간내 제출된 보완서류의 접수일	
10-5	국제조사기관(ISA)	ISA/KR
10-6	조사료 납부시까지 지연된 조사용 사용료의 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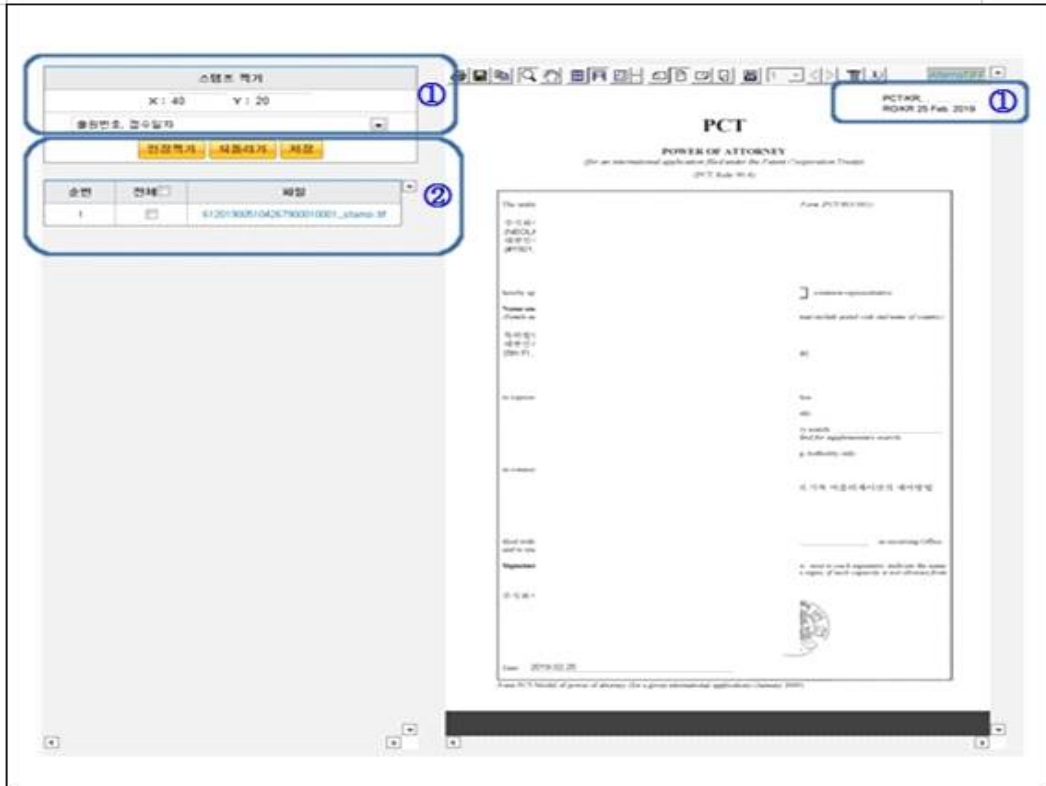
국제 사무국 전용

11-1	국제 사무국의 기록일련 접수일	
------	------------------	--

SUBSTITUTE SHEET (RULE 26) RO/KR

②

■ 첨부서류 스탬프 찍기(TIFF)



■ 첨부서류 스탬프 찍기 화면 (TIFF)

- ① 파일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첨부서류가 표시 됨(여러 개 동시 작업 가능)
 - 동시작업 : 출원번호, 접수일자 ; 대체용지 ; 국제출원일 ; 수리관청명 ; 국제조사기관 등
- ② 스탬프 찍기에서 스탬프 내용을 선택하고 [인장찍기]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서류에 스탬프 추가
 -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스탬프가 저장 됨
 - ※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서류 최초 상태로 되돌림

<업무 TIP>

- 스탬프를 전자적으로 찍은 후, [첨부서류 보기]에서 스탬프 추가 [보기]를 클릭 => 스탬프가 제대로 찍혀 있는 지 확인 => [첨부서류 송부]를 클릭 (PDF, TIFF 동일)
- ※ 서류명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올바른 서류명으로 변경 후, 수리(예 : 기타첨부서류 => 위임장)



제4장 PCT Manual 국제출원서 등의 전자적 전송(WIPO)

1. 기록원본 및 우선권 서류 등의 WIPO 송부

가. 기록원본 생성요청

– 작성 메뉴 : 특허넷 > 수리관청 > 문서교환 > 기록원본 검수 및 생성요청 > 기록원본 생성요청(목록)

–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1) 국제출원서 화면방식을 끝낸 국제출원건의 기록원본을 생성요청하는 것으로, 상단 왼쪽 맨 위의 네모박스를 체크하면 전체 선택되며, 하단에 있는 ‘기록원본전자문서생성요청’ 버튼을 누른다.

2) 기록원본 전자문서 생성요청이 완료되면 해당 번호들이 목록에서 사라진다.

RO 기록원본 검수 및 생성요청 > RO 문서교환

○ 서면 기록원본 검수 ● 기록원본 생성 요청 [현재선택] ○ 선조사결과 생성 요청

☐	순번	검수매체(서면 □, 온라인 □)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서류명	RO/105 발송일	RO/106 발송일	RO/146 발송일	처리상태
☐	1	On-Line	PCT/KR2024/016224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2	On-Line	PCT/KR2024/016236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3	On-Line	PCT/KR2024/016237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4	On-Line	PCT/KR2024/016238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5	On-Line	PCT/KR2024/016239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6	On-Line	PCT/KR2024/016240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7	On-Line	PCT/KR2024/016271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8		PCT/KR2024/016271		직관영역 통지서			2024.11.05	완료(통지서발송)
☐	9	On-Line	PCT/KR2024/016272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0	On-Line	PCT/KR2024/016273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1	On-Line	PCT/KR2024/016274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2	On-Line	PCT/KR2024/016275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3	On-Line	PCT/KR2024/016286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4	On-Line	PCT/KR2024/016287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5	On-Line	PCT/KR2024/016289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6	On-Line	PCT/KR2024/016301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7	On-Line	PCT/KR2024/016302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8	On-Line	PCT/KR2024/016304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19	On-Line	PCT/KR2024/016305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20	On-Line	PCT/KR2024/016321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21	On-Line	PCT/KR2024/016322	2024. 10. 24	국제출원서	2024.11.05			수리
☐	22		PCT/KR2024/016322		직관영역 통지서			2024.11.05	완료(통지서발송)

기록원본 전자문서 생성요청 대상건수 : 0

기록원본 전자문서 생성요청

나. 우선권송달신청 생성요청

- 작성 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문서교환> 우선권신청 전자문서 요청> 전자 문서 생성요청> 생성요청

-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전자문서 생성요청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해당 목록이 나타나며 상단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면 전체 선택되며,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번호들이 목록에서 사라진다.

다. 선조사 결과 생성요청

- 작성 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 문서교환 > 기록원본 검수 및 생성요청 > 선조사결과 생성 요청

-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 1) 선조사결과를 생성 요청하는 것으로, 상단 왼쪽 맨 위의 네모박스를 체크하면 전체 선택되며, 하단에 있는 '선조사결과 전자문서 생성요청' 버튼을 누른다.
- 2) 선조사결과 전자문서 생성요청이 완료되면 해당 번호들이 목록에서 사라지면, 시스템운영자가 데이터수정으로 패키지 생성을 한다.(패키지 생성요청 후 시스템운영자에게 연락)

① [선조사결과 생성 요청] 선택하면 대상 목록 표시 됨
 ② 접수발송번호 클릭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패키지 생성 대상으로 체크
 ③ 하단의 [선조사결과 전자문서 생성요청] 버튼 클릭하여 패키지 생성 요청 후 시스템운영자에게 연락
 ④ 시스템운영자가 데이터수정으로 패키지 생성

라. RO 기록원본 및 우선권서류 송부

- 작성 메뉴 : 특허넷 > 수리관청 > 문서교환 > RO 기록원본 및 우선권서류 송부

-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1) 상단에 서류별 선택 체크 → “국제출원서”를 한건만 선택하면 50건씩 자동 선택됨 → “다운로드+M2M전송” 클릭 → 나머지 국제출원서 파일 선택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2) “[우선권서류송달]국제출원서”를 선택하면 50건씩 자동 선택됨 → “다운로드+M2M전송” 클릭 → 나머지 우선권서류송달 파일 선택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RO 기록원본 및 우선권서류 송부 > RO 문서교환 > 수리관청

□서류별 선택: 검색: M2M전송

선택	순번	국제출원번호	접수매체	접수일/발송일	국제출원일	선출원번호	선출원일	서류명	출원인/수신인	파일크기 (KByte)
☐	1	PCT/R2024/016022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인트폴로우 주식회사	630.79
☐	2	PCT/R2024/016023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310.43
☐	3	PCT/R2024/016024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주식회사 파렐에스피엔스	681.89
☐	4	PCT/R2024/016025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엘지전자 주식회사	2,864.99
☐	5	PCT/R2024/016036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에스케이칼라콤 주식회사	455.87
☐	6	PCT/R2024/016037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엘티스제주식회사	14,086.18
☐	7	PCT/R2024/016038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한국화학연구원	2,047.65
☐	8	PCT/R2024/016039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엘티스제주식회사	15,060.17
☐	9	PCT/R2024/016040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주)타이거멤	250.05
☐	10	PCT/R2024/016040		2024.10.31				직관경장 통지서	김현진	388.03
☐	11	PCT/R2024/016071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주)이산기술단	874.00
☐	12	PCT/R2024/016073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647.73
☐	13	PCT/R2024/016073		2024.11.01				국제출원서의 출결 보정요구서	특허법인 무한	929.56
☐	14	PCT/R2024/016074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929.70
☐	15	PCT/R2024/016075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삼성전자주식회사	1,031.24
☐	16	PCT/R2024/016086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2,072.76
☐	17	PCT/R2024/016087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주식회사 엘지화학	1,044.97
☐	18	PCT/R2024/016089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	1,331.40
☐	19	PCT/R2024/016090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752.75
☐	20	PCT/R2024/016101	On-Line	2024.10.22	2024.10.22			국제출원서	덕산산업(주)	883.51

전자문서 총 46 건 중 선택 0 건 (0.00MByte)

▶ 다운로드 ▶ M2M전송 ▶ 엑셀로 불러오기

3) 전송이 완료된 파일은 M2M 전송 백업 PC 컴퓨터에 백업한다.

4) WIPO에 파일이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확인 후 특허넷 > 수리관청 > 문서교환 > RO EDI 전송현황 확인 메뉴에서 해당 파일명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해당 파일이 목록에서 사라지게 된다.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기록을 남긴다.

RO WIPO 전자서류 EDI 전송현황 확인 > RO 문서교환 > 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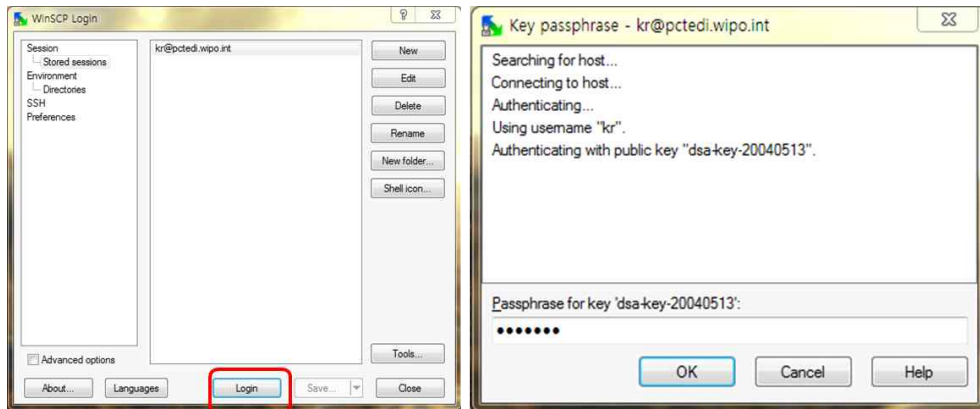
EDI 전송 확인대상 > 송부일지별 조회

총 6 건중 0 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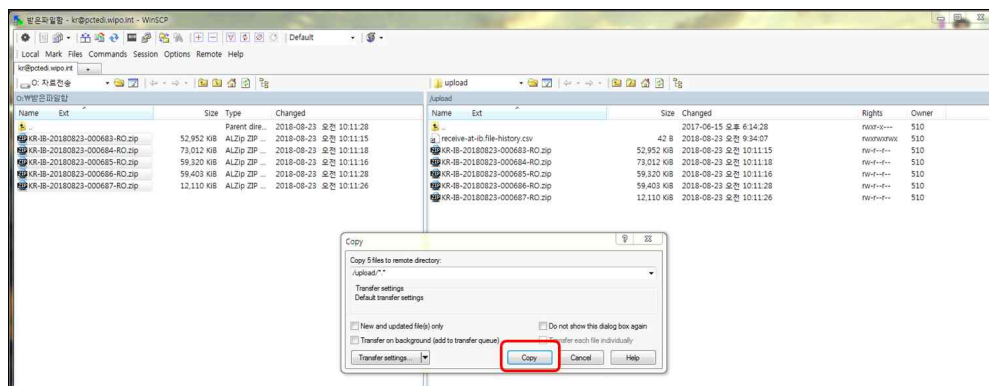
순번	선택	패키지명	패키지 서류명	송부일자	메모
1	☐	KR-B-20180822-000682-RO	RO통지서 패키지	20180822	
2	☐	KR-B-20180823-000683-RO	RECORD COPY	20180823	
3	☐	KR-B-20180823-000684-RO	우선결서류 패키지	20180823	
4	☐	KR-B-20180823-000685-RO	우선결서류 패키지	20180823	
5	☐	KR-B-20180823-000686-RO	우선결서류 패키지	20180823	
6	☐	KR-B-20180823-000687-RO	우선결서류 패키지	20180823	

마. winSCP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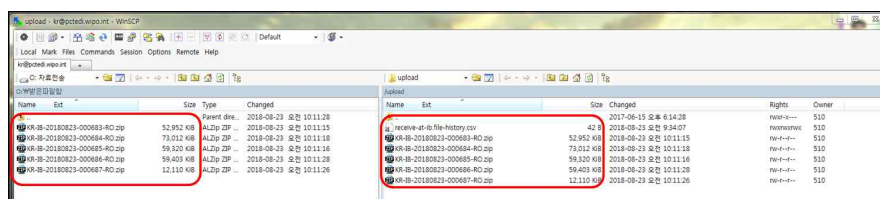
- 작성 메뉴 : 로컬PC > winSCP(kr@pctedi.wipo.int)프로그램 실행 > 로그인
 -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 1) 로컬PC에서 winSCP(kr@pctedi.wipo.int)프로그램 실행하여 로그인한다.



- 2) 왼쪽 화면의 파일전송시스템에서 받은 파일함에 다운로드된 파일 전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Upload 폴더로 드래그한 후 COPY를 선택하여 파일을 전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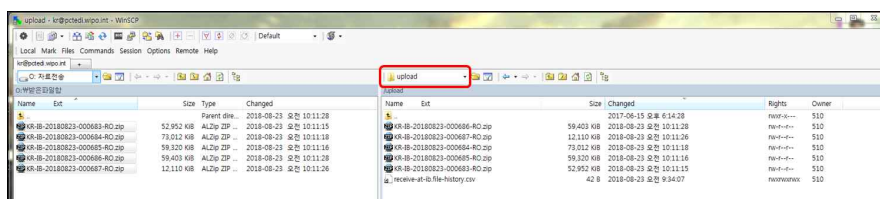


3) 파일전송이 완료되면 왼쪽 파일전송시스템 받은 파일함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오른쪽 화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면 파일전송이 완료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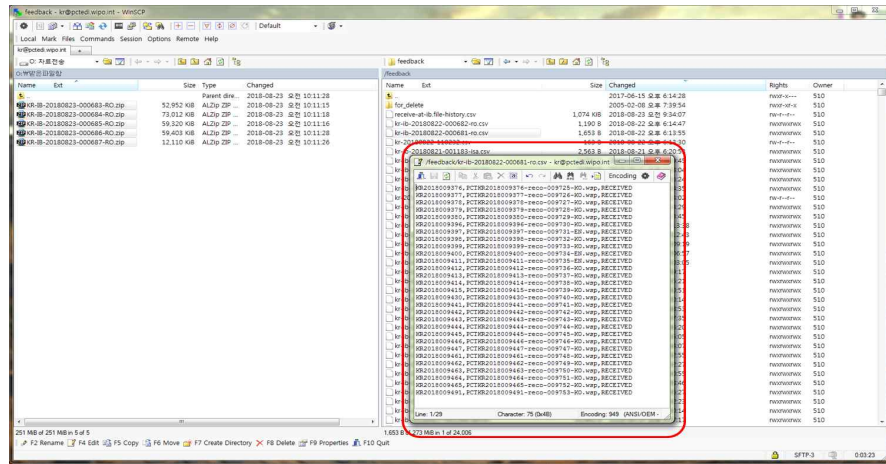


바. winSCP 전송현황 확인 및 파일 백업

- 작성 메뉴 : 로컬PC > winSCP(kr@pctedi.wipo.int)프로그램 실행 > 로그인
-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 1) 로컬PC에서 winSCP(kr@pctedi.wipo.int)프로그램 실행하여 로그인한다.
 - 2)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upload 옆에 콤보박스를 눌러서 /<root>를 선택하고 아래 경로 메뉴에서 feedback을 선택한다. [주식:스펠링 오류 정정]



3) 일자별로 파일명이 나타나는데 해당일자자의 해당 파일을 한 개씩 더블 클릭 하여 전송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RECEIVED 표시 및 하단에 총 건수 확인).



4) 파일별로 확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 /<root> 옆 콤보박스를 눌러 다시 upload 상태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마친다.

5) 전송이 완료된 파일은 EDI 전송 백업 PC 컴퓨터에 백업한다.

2. RO통지서 및 중간서류 송부

- 작성 메뉴 : 수리관청 ⇨ RO 문서교환 ⇨ RO통지서 송부

가. [RO통지서] ⇨ 패키지 생성요청대상건 목록에서 전체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한다.

⇒ 다음 날 ‘패키지생성완료건’ 목록에 생성된다.

특허넷 PCT 명세서 | 알림 | PCT명세서 | 결과/발송

수리관청 | 국제출원 | 국제특허심사기관 | 사업신청접수

2016.05.02 (수) | 현재 | [조회/인출] | [인출/전송/발송]

통제조회 | 검색시스템 | 비공개기 | [초기]

송부완료 (발신)

RO 통지서 WPO 송부 | RO 문서교환 | 수리관청

[전체] | [선택] | [송부완료] | [국제특허심사기관] | [국제특허심사기관] | [국제특허심사기관] | [전체] | [선택]

0 RO 통지서 WPO 송부 목록 | [전체] | [17건] | [17건] | [17건] | [17건] | [17건] | [17건] | [17건]

순번	국제출원번호	국수발송번호	국수발송일자	사건번호	사유명	송부인	상태	송부내용
1	PCT/KR2015/00605	9520160202912	20160602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주)이앤에프(사)	패키지생성완료	
2	PCT/KR2015/00617	9520160201817	20160601	132	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디포커스(주)	패키지생성완료	
3	PCT/KR2015/00600	9520160203589	20160602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김정철	패키지생성완료	
4	PCT/KR2015/00605	9520160202701	20160602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패키지생성완료	
5	PCT/KR2015/00601	9520160201520	20160601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패키지생성완료	
6	PCT/KR2015/00618	9520160201818	20160601	107	누락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제출원의 특정 부분에 관 한 송부서	삼성전자주식회사	패키지생성완료	
7	PCT/KR2015/00706	9520160202940	20160602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HUGEL, INC.	패키지생성완료	
8	PCT/KR2015/00647	9520160203173	20160602	132	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셀지엔지 주식회사	패키지생성완료	
9	PCT/KR2015/00671	9520160202701	20160601	133	수출 및 가산물 납부 요구서(국제출원)	이종철	패키지생성완료	
10	PCT/KR2015/00617	9520160201753	20160601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디포커스(주)	패키지생성완료	
11	PCT/KR2015/00664	9520160203600	20160602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이길문	패키지생성완료	
12	PCT/KR2015/00675	9520160203398	20160602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주)엔텍스	패키지생성완료	
13	PCT/KR2015/00690	9520160201707	20160601	146	직권정정통지서	서울비이오시스템주식회사	패키지생성완료	
14	PCT/KR2015/00626	9520160202478	20160602	111	국제출원 하위간주 통지서	김종철	패키지생성완료	
15	PCT/KR2015/00661	9520160203448	20160602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패키지생성완료	
16	PCT/KR2015/00648	9520160202795	20160602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주식회사 나노전력	패키지생성완료	
17	PCT/KR2015/00603	95201602017434	20160601	106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황지연의 주식회사	패키지생성완료	
18	PCT/KR2015/00605	9520160201576	20160602	132	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황지연의 주식회사	패키지생성완료	

※ RO 통지서 전송요청은 [전체] 또는 [선택]한 요청에 주시게 됩니다.

총 28건 중 선택 0건

[중간서류] ⇨ EDI 신규전송대상을 선택 후 패키지 생성요청대상건 목록에서 전체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한다.

⇒ 다음 날 ‘패키지생성완료건’ 목록에 생성된다.

RO 통지서 WIPO 송부 < RO 문서교환 > 권리관청

EDI 신규전송 대상 패키지 생성요청대상건 패키지 생성완료건 다운로드일지업로드 전체

RO 통지서 WIPO 송부 목록 < 113(62) 120(92) 90(152) 95(32) >

서열별 선택

순번	국제출원번호	접수발송번호	접수발송일자	서식번호	서류명	출원인	상태	첨부서류
1	PCT/KR03	65201900326916	20190220	119	기속변경 요청서		패키지생성대상	첨부서류
2	PCT/KR03	65201900326962	20190220	123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통지서		패키지생성대상	첨부서류
3	PCT/KR03	65201900327019	20190220	119	기속변경 요청서		패키지생성대상	
4	PCT/KR03	65201900327154	20190220	119	기속변경 요청서		패키지생성대상	
5	PCT/KR03	65201900327200	20190220	119	기속변경 요청서		패키지생성대상	첨부서류
6	PCT/KR03	65201900327345	20190220	123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통지서		패키지생성대상	첨부서류
7	PCT/KR03	65201900327491	20190220	119	기속변경 요청서		패키지생성대상	첨부서류
8	PCT/KR03	65201900327602	20190220	123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통지서		패키지생성대상	첨부서류
9	PCT/KR03	65201900327615	20190221	119	기속변경 요청서		패키지생성대상	첨부서류
10	PCT/KR03	612019004056629	20190215	900	위임장		패키지생성대상	
11	PCT/KR03	61201900407402	20190215	900	위임장		패키지생성대상	
12	PCT/KR03	6120190040917119	20190215	900	위임장		패키지생성대상	
13	PCT/KR03	6120190040920946	20190215	953	보장을 위한 대체통지		패키지생성대상	
14	PCT/KR03	6120190040946226	20190218	900	위임장		패키지생성대상	
15	PCT/KR03	6120190040948576	20190218	900	위임장		패키지생성대상	
16	PCT/KR03	6120190040949175	20190219	900	위임장		패키지생성대상	
17	PCT/KR03	6120190040949412	20190219	900	위임장		패키지생성대상	
18	PCT/KR03	6120190040975173	20190219	900	위임장		패키지생성대상	
19	PCT/KR03	6120190040994004	20190220	900	위임장		패키지생성대상	

* RO 패키지 생성요청건 1일 최대 500건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7건 중 선택 0건

나. [RO통지서] ⇨ 패키지생성완료건에 생성된 목록 선택 후 하단의 “다운로드 +M2M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1개의 패키지 당 50건씩 선택됨) ⇒ 다운로드 후 목록 인쇄는 하지 않는다.

RO 통지서 송부 < RO 문서교환 > 권리관청

EDI 신규전송 대상 패키지 생성요청대상건 패키지 생성완료건 다운로드일지업로드 전체

WIPO 송부용 서류 접수 M2M전송

RO 통지서 WIPO 송부 목록 < 132(92) 146(62) >

서열별 선택

순번	국제출원번호	접수발송번호	접수발송일자	서식번호	서류명	출원인	상태	첨부서류
1	PCT/KR2022/016753	652022005024200	20221109	146	직관정정통지서	주식회사 이미큐비엔티	패키지생성완료	
2	PCT/KR2022/016769	652022005059037	20221111	146	직관정정통지서	주식회사 세이파이브	패키지생성완료	
3	PCT/KR2022/016770	6520220050590042	20221111	132	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이동원	패키지생성완료	
4	PCT/KR2022/016782	652022005060404	20221111	146	직관정정통지서	주식회사 에스비솔루션글로벌	패키지생성완료	
5	PCT/KR2022/016816	652022005061144	20221111	146	직관정정통지서	(주)에이피테크놀로지	패키지생성완료	
6	PCT/KR2022/016819	652022005061717	20221111	146	직관정정통지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패키지생성완료	
7	PCT/KR2022/016851	652022005062437	20221111	146	직관정정통지서	주식회사 두빛나래소프트	패키지생성완료	
8	PCT/KR2022/016851	652022005062563	20221111	146	직관정정통지서	주식회사 두빛나래소프트	패키지생성완료	
9	PCT/KR2022/016855	652022005062945	20221111	132	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엘지전자 주식회사	패키지생성완료	
10	PCT/KR2022/095150	652022005064596	20221111	146	직관정정통지서	한국재료연구원	패키지생성완료	

총 10건 중 선택 0건

다운로드 다운로드 + M2M전송

[중간서류] ⇨ EDI 신규전송대상을 선택 후 패키지생성완료건에 생성된 목록 선택 후 하단의 “다운로드+M2M전송”버튼을 클릭한다. (1개의 패키지 당 50 건씩 선택됨) ⇒ 다운로드 후 목록 인쇄는 하지 않는다.

RO 통지서 송부 > RO 통지교환 > 수리관청

☒ EDI 신규전송 대상 ☐ 패키지생성모형대상전 ☒ 패키지생성완료건 ☐ 다운로드할지발조희 전 체 WIPO 송부용 서류 접수 M2M전송건

o RO 통지서 WIPO 송부 목록 ☐ 113(2건) ☐ 136(1건) ☐ 900(2건) ☐ 953(1건)

☐ 서류발 성적

☐	순번	국제출원번호	접수발송번호	접수발송일자	서식번호	서류명	출원인	상태	첨부서류
☐	1	PCT/JP2022/016816	652022009065160	20221111	113	기록변경 요청서	(주)에이피테크놀로지	패키지생성완료	
☐	2	PCT/JP2022/014969	652022005109552	20221114	136	취하통지서	김광섭	패키지생성완료	
☐	3	PCT/JP2022/015766	652022005109608	20221114	113	기록변경 요청서	SAMSUNG ELECTRONICS CO., LTD.	패키지생성완료	
☐	4	PCT/JP2022/016670	612022009065214	20221110	900 (1)	위할장	주식회사 브라이프테크놀로지	패키지생성완료	
☐	5	PCT/JP2022/016670	612022009065214	20221110	900 (2)	위할장	주식회사 브라이프테크놀로지	패키지생성완료	
☐	6	PCT/JP2022/016069	612022009067610	20221110	953 (1)	보정을 위한 대체통지	주식회사 프롤바리오	패키지생성완료	

총 6건 중 선택 0건

다운로드 다운로드+M2M전송

※ 이후 RO통지서와 중간서류 진행방식은 동일합니다.

다. 컴퓨터/ 로컬디스크(C:) / kipodir / RO-PKG-N / ZIP 에 패키지가 생성되고, 패키지파일은 자동적으로 M2M전송이 된다.

⇒ 생성된 패키지는 클라우드 컴퓨터의 '01.RO-N 통지서(송부완료) / 해당 월' 폴더에 패키지 파일을 백업한다.

라. “M2M전송” 버튼을 클릭후, 1~2시간뒤 “M2M전송진” 클릭하여, M2M 전송 여부를 확인한다.

M2M 전송 현황 < RO 문서교환 < 우리관청

패키지명: _____ 송원번호: _____ 전송일자: 2022.11.16 ~ 2022.11.16 담당자: _____ clear

문장호: _____ 조회

순번	패키지명	패키지 서류명	국제출원번호	전송일자	완료/전체	서류
1	KR-IB-20221116-002314-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1/015958	20221116	1/1 (전송완료)	652022005114693]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열기
2	KR-IB-20221116-002314-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1/020091	20221116	1/1 (전송완료)	652022005114738]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열기
3	KR-IB-20221116-002314-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2/017239	20221116	1/1 (전송완료)	652022005088491]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열기
4	KR-IB-20221116-002314-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2/017300	20221116	1/1 (전송완료)	652022005088682]작관정정통지서 열기
5	KR-IB-20221116-002314-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2/017333	20221116	1/1 (전송완료)	652022005091091]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열기
6	KR-IB-20221116-002314-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2/017356	20221116	1/1 (전송완료)	652022005090180]특정 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 열기
7	KR-IB-20221116-002315-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1/015958	20221116	1/1 (전송완료)	612022009188885]보정제출서 열기
8	KR-IB-20221116-002315-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1/016397	20221116	4/4 (전송완료)	652022005119092]기록변경 요청서 열기 외 3건
9	KR-IB-20221116-002315-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2/012179	20221116	2/2 (전송완료)	652022005119263]기록변경 요청서 열기 외 1건
10	KR-IB-20221116-002315-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2/014331	20221116	1/1 (전송완료)	652022009136855]보정제출서 열기
11	KR-IB-20221116-002315-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2/016834	20221116	1/1 (전송완료)	612022009194635]보정제출서 열기
12	KR-IB-20221116-002315-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2/017298	20221116	1/1 (전송완료)	612022009154877]보정제출서 열기
13	KR-IB-20221116-002315-RO	RO통지서 패키지	PCT/KR2022/017315	20221116	1/1 (전송완료)	612022009083115]보정제출서 열기

※ M2M전송한 서류들은 전송대기 상태일 경우 회수가 가능합니다.

마. 이상 없으면, 아래 화면 (RO WIPO 전자서류 EDI 전송현황 확인) 에서 해당 패키지명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특허넷 PCT 열람

열람: PCT 열람 | 열람/발송

수신국명: 국제특허기구 | 국제특허기구 | 사무관청명: _____

송원번호 (필수): _____

RO WIPO 전자서류 EDI 전송현황 확인 < RO 문서교환 < 우리관청

송원번호로 조회 | 확인/발송 | 열람

송원번호로 조회

순번	선택	패키지명	패키지 서류명	송원일자	비고
1	☐	KR-IB-20160802-000832-RO	RO통지서 패키지	20160802	
2	☐	KR-IB-20160802-000839-RO	RECORD COPY	20160802	
3	☐	KR-IB-20160802-000834-RO	RECORD COPY	20160802	
4	☐	KR-IB-20160802-000835-RO	무선전자서 패키지	20160802	
5	☐	KR-IB-20160802-000836-RO	무선전자서 패키지	20160802	

3. 조사료 납부 정보 WIPO 송부

<e-SearchCopy 송부 과정>

RO가 IB에게 Record Copy 송부(ISA에게 Search Copy 송부 안 함)

⇒ RO가 IB에게 수수료 중 ‘조사료’ 지불정보를 EDI 송부

⇒ IB가 ISA에게 e-SearchCopy를 전자 송부

가. 수리관청 ⇒ RO 문서교환 ⇒ RO 조사료 납부 정보

나. 조사료 조회에서 목록이 모두 선택된 상태로 ‘수수료 정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다.

RO 조사료 목록 < RO 수수료 < 수리관청

RO 조사료 목록 조사료 조회 전송 이력 조회 조회

(총 234건)

선택	순번	PCT 출원번호	접수번호	국제출원일자	납부일자	납부금액	조사기관
☒	1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2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3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4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5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6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7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8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9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10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11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12	PCT/AR20	6120	20	20	1,300,000	ISA/KR
☒	13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14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15	PCT/AR20	6120	20	20	1,300,000	ISA/KR
☒	16	PCT/AR20	6120	20	20	1,300,000	ISA/KR
☒	17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18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19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	20	PCT/AR20	6120	20	20	450,000	ISA/KR

시작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페이지

수수료 정보 다운로드

다. 컴퓨터/ 로컬디스크(C:) / kipodir / PDXTW 에 패키지가 생성된다.

⇒ 생성된 패키지를 로컬 컴퓨터로 파일 전송한다.

* 파일명(예시): kr-ib-20190101-sfee-00001-en.xml

** 파일을 열어 올바르게 PCT출원번호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오류가 있을 경우, 다운로드된 파일에 PCT출원번호들이 기재되지 않는 현상이 있음)

라. 로컬 컴퓨터의 ‘winSCP’를 열어 ‘upload’폴더에 패키지 파일을 업로드한다.

마. 로컬 컴퓨터의 ‘06.wipo조사료정보(송부완료) / 해당연도’ 폴더에 패키지 파일을 백업한다.

참고 **국제출원서 등의 송부**

※전자전송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장은 2020년 5월부터 실무상 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출원서 등의 표기사항

수리관청은 방식심사 후 국제출원서(서면) 및 중간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서류를 송부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지워지지 않는 흑색으로 서류에 표기한다.

가. 국제출원서(Request)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서를 접수하고 해당 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 －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수리관청 명칭(영문)
- － HOME COPY : 수리관청 보관
- － RECORD COPY : 국제사무국 송부
- － SEARCH COPY : 국제조사기관 송부

※ 국제사무국에 송부되는 RECORD COPY가 원본(서명으로 구분)이 되도록 한다.

나. 국제출원서의 번역문(규칙 12.3에 의한 번역문)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서의 번역문이 있는 경우 번역문의 첫 페이지 상단에 아래와 같이 날인한다(날인 위치는 국제출원서와 동일함).

- － RECORD COPY-TRANSLATION(RULE12.3) : 국제사무국 송부
- － HOME COPY-TRANSLATION(RULE12.3) : 수리관청 보관
- － SEARCH COPY-TRANSLATION(RULE12.3) : 국제조사기관 송부

다. 중간서류

수리관청은 중간서류 방식 후 해당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국제출원번호와 서류 접수일을 날인하고, 출원서 등의 대체용지 하단에는 ‘SUBSTITUTE SHEET’를 날인한다(스탬프 기능 이용).

<국제출원서 샘플- 첫 페이지>

RECORD COPY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8. 5. 29.>

PCT 용도

PCT 출원서 아래 서명자는 이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을 청구합니다.	수리관청 전용 국제출원번호 PCT/KR 2022 / 0 국제출원일 07 SEP 2022 (07.09.2022)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CT-International Application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프람표기호 OPP-22-0025		
제1기제관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는 공간]			
제2기제관 출원인 ☐ 이 나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60%;"> 성명(명칭) 및 주소 (상 다음에 이름을 적을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을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내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출원인 정보 기재 공간] </td> <td style="width: 40%;"> 전화번호 팩스번호 특허고색번호 </td> </tr> </table>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내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함을 사본 송부; 또는 ☐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기재 공간] 국적 (국가명): 대한민국(KR) 거주국 (국가명): 대한민국(KR) 이 내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모든 지정국 ☐ 추가개선에 표시된 국가		성명(명칭) 및 주소 (상 다음에 이름을 적을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을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내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출원인 정보 기재 공간]	전화번호 팩스번호 특허고색번호
성명(명칭) 및 주소 (상 다음에 이름을 적을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을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내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출원인 정보 기재 공간]	전화번호 팩스번호 특허고색번호		
제3기제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제4기제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통 주소 아래에 적은 자는 관련 국제기판에 대하여 우측에 표시된 자격으로 출원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선임되었다. ☒ 대리인 ☐ 대표자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60%;"> 성명 및 주소 (상 다음에 이름을 적을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을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대리인 정보 기재 공간] </td> <td style="width: 40%;">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번호 </td> </tr> </table>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내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함을 사본 송부; 또는 ☒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기재 공간] ☐ 통신통 주소: 이 난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대신 위의 기재 공간에 특별히 통지서 송부를 위한 별도의 주소를 적는 경우에 표시한다.		성명 및 주소 (상 다음에 이름을 적을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을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대리인 정보 기재 공간]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번호
성명 및 주소 (상 다음에 이름을 적을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을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대리인 정보 기재 공간]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번호		

서식 PCT/RO/101(첫 번째 용지) (2017년 7월)

기재요령 참조
210mm×297mm(복합지) 80g/m²

INTERNATIONAL APPLICATION -
ORIGINAL AS FILED ON PAPER (SECTION 705 bis)

<국제출원서 샘플-마지막 페이지>

PCT/KR 2018 / 0 0

용지 번호 4

제9기제관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 리스트-이 용지는 서면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 국제출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용지 수	이 국제출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제당 항목의 체크박스에 표기함) 리프 오프를 할 때 각 항목의 개수를 표기함	용지 수
(a) 출원서 서식 PCT/RO/2011 (오른 선언서 및 추가 용지 포함)	4	1. ☒ 수수료 계산 용지	1
(b) 명세서 (명세서의 서열목록 부분 제외 아래 (가) 참조)	38	2. ☐ 개별위임장 원본	1
(c) 청구범위	4	3. ☐ 보완위임장 원본	1
(d) 요약서	1	4. ☐ 보완위임장 사본: 참조번호	1
(e) 도면 (있는 경우)	12	5. ☐ 서명 주위에 관한 증명서	1
(f) 명세서의 서열목록 부분 (있는 경우)	37	6. ☐ 제6기제관에 다른 항목으로 행사된 우선권서류	1
		7. ☐ 국제출원 번역문 (번역문의 언어)	1
		8. ☐ 기재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별도의 표시 사항(번역문의 언어)	1
		9. ☒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규칙 13의3에 따른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제출된 물리적 데이터에 대해 담긴 서열목록의 전자적 형태의 사본(부속서류 C/ST 25 텍스트 파일) (물리적 데이터 자체의 형태 및 개수)	1 CD
		10. ☐ 서면으로 제출 시 "규칙 13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정보가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1
		11. ☐ 선조사보고서의 사본(규칙 12의2.1(a))	1
		12.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1
총 용지 개수	96		
요약서에 수반되어야 할 도면 번호: 도 11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 한국어	
제10기제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의 성명(명칭)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출원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수리관청 전용

1.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의 실제 접수일: 3 1 JUL 2018 (31. 07. 2018.)	2. 도면: ☐ 개수: ☐ 직렬수:
3.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완성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수후 기간 내 제출에 따른 정정원 실제 접수일:	
4. PCT 제11조(2)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보완서로써 기간 내 제출된 보완서의 접수일:	
5. 국제조사기관 (관할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ISA / KR	6. ☐ 조사료 일부 시까지 지연된 조사용 사본의 송부

국제사무국 전용

국제 사무국의 기록원본 접수일:

서식 PCT/RO/2011(비지각 용지-서면X2012년 7월) 기재요령 참조

2. 서류의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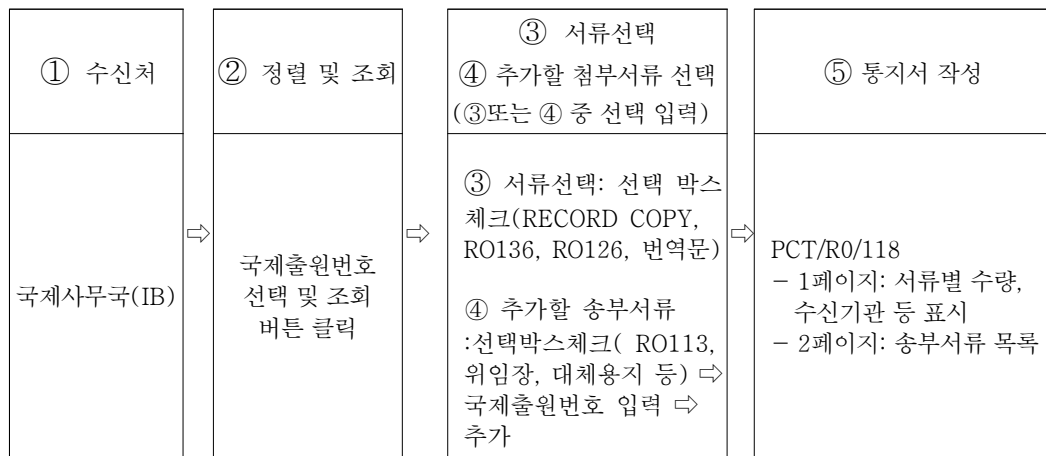
- 가. RECORD COPY는 우선일로부터 13개월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국제사무국으로 전자 전송·우편송부하며 [Rule 22.1(a)], 동시에 조사료가 완납된 SEARCH COPY도 국제조사기관으로 송부한다. [Rule 23.1(a)]
- 나. RECORD COPY는 당해 건의 보정요구서와 중간서류가 제출(준비)되었을 시 같은 묶음으로 동시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무상 개별 송부한다. RECORD COPY가 송부되기 전 취하서가 접수, 처리 되었다면 RECORD COPY와 취하서는 동시 송부한다.
- 다. SEARCH COPY의 송부는 조사료가 납부된 경우에 한하며, 국제출원이 출원인에 의해 취하되었거나 수리관청에 의해 취하간주된 경우는 송부하지 않는다. 염기서열을 포함한 CD 등 전자적 매체가 제출된 경우 함께 송달한다. [Rule 23.1(a)].
- 라. 중간서류는 그 처리가 완료 되는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조사기관으로 송부되어야 하며, 특히 대리인의 기록변경에 관한 통지, 국제공개일이 임박한 해당 건 등은 우편송달로 처리한다.
- 마. 송달 할 서류는 Form PCT/RO/118 서식에 의하여 붙임으로 발송되며, 서류는 출원번호 순으로 정렬하여 붙임에 그 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여 발송토록 한다.
- 바.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이후에 조사용사본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될 경우에는 Request 기재란 10-6(조사료 납부시까지 지연된 조사용사본의 송부)에 표시 한다[Section 306].

3. 우편을 활용한 서류 송부(서류송부통지서(RO/118) 작성)

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IB)에 우편으로 각종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송부내역을 기재한 서류송부통지서(PCT/RO/118)를 함께 송부한다.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 현재는 전자전송으로만 PCT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있음.

가. 작성 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RO통지서 작성,발송 > RO/118통지서 작성

나.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RO/118 통지서 작성 > RO 통지서 작성/발송 > 수리관청

* 수신처 국제사무국(IB) * 정렬기준 국제출원번호(↓) 조회 ②

① RO에서 IB로 보내는 서류송부통지서 대상 리스트입니다. [서류별 선택]

번호	순번	국제출원번호	송부대상서류	발송/접수일	접수발원번호	송원인	대리인
1	1	PCT/R2018/008648	Record Copy	2018.07.30	612018004359098		
2	2	PCT/R2018/008685	Record Copy	2018.07.31	612018004384153		
3	3	PCT/R2018/008850	Record Copy	2018.08.03	612018004454285		
4	4	PCT/R2018/008901	Record Copy	2018.08.06	612018004490173		
5	5	PCT/R2018/008903	Record Copy	2018.08.06	612018004490218		
6	6	PCT/R2018/008907	Record Copy	2018.08.06	612018004491275		
7	7	PCT/R2018/008955	Record Copy	2018.08.07	612018004513629		
8	8	PCT/R2018/008980	Record Copy	2018.08.07	612018004519120		
9	9	PCT/R2018/008981	Record Copy	2018.08.07	612018004519276		
10	10	PCT/R2018/008982	Record Copy	2018.08.07	612018004519467		
11	11	PCT/R2018/008983	Record Copy	2018.08.07	612018004519658		
12	12	PCT/R2018/008986	Record Copy	2018.08.07	612018004520100		
13	13	PCT/R2018/009101	PCT/RO/136	2018.08.22	652018002879682		
14	14	PCT/R2018/009108	Record Copy	2018.08.09	612018004571601		
15	15	PCT/R2018/009112	Record Copy	2018.08.09	612018004572084		
16	16	PCT/R2018/009113	Record Copy	2018.08.09	612018004572129		
17	17	PCT/R2018/009114	Record Copy	2018.08.09	612018004572275		
18	18	PCT/R2018/009178	Record Copy	2018.08.10	612018004605980		
19	19	PCT/R2018/009196	Record Copy	2018.08.10	612018004608804		
20	20	PCT/R2018/009197	Record Copy	2018.08.10	612018004608949		

총 24 건 중 선택 0 건

④ 추가할 송부서류

☐ Record Copy	☐ Search Copy
☐ Priority Document	☐ Power of Attorney
☐ Substitute Sheet	☐ Fee Calculation Sheet
☐ PCT/RO/113	☐ PCT/RO/136
☐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 PCT/RO/106
초기화	

PCT/RO/113
Power of Attorney

국제출원번호 PCT / KR 18 X00000

추가, 삭제

⑤ 추가할 내용

순서	출원번호	송부서류
1	PCT/R2018/000001	PCT/RO/113
2	PCT/R2018/000001	Power of Attorney
3	PCT/R2018/000002	PCT/RO/113
4	PCT/R2018/000002	Power of Attorney
5	PCT/R2018/000003	PCT/RO/113
6	PCT/R2018/000003	Power of Attorney

총 6 건

⑤ 통지서작성

<RO/118통지서>

PATENT COOPERATION TREATY

From the RECEIVING OFFIC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PCT

**NOTIFICATION CONCERNING
DOCUMENTS TRANSMITTED**

Date of mailing
(day/month/year) 22 AUGUST 2018 (22.08.2018)

This receiving Office transmits herewith the following documents:

(number)

1. ☐ _____ record copies (Article 12(i))
2. ☐ _____ search copies (Article 12(i))
3. ☐ _____ translation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Rule 12.3 or 12.4)
4. ☐ _____ copies of purported international applications (Rule 20.4(iv))
5. ☐ _____ translation of earlier application(Rule 20.6(a)(iii) and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05or)
6. ☐ _____ copies of the request from the applicant to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under Rule 26bis.3(a), and any related document(s), with the exception of any document(s) or part(s) thereof found by the receiving Office to meet the criteria of Rule 26bis.3(b-bis)
7. ☐ _____ record copies and corrections not already transmitted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s which have been considered withdrawn (Rule 29.1(a)(ii))
8. ☐ _____ (copies of the) letters of corrections or rectifications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25(b) and (c))
9. ☐ _____ (copies of) replacement sheets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25(b) and (c))
10. ☐ _____ (copies of) later submitted sheets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09b(iv), 309c(v), 310(b)(v), 310(b)(b)(v), or 310ter(v))
11. ☐ _____ copy(ies)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es) and/or related documents and copy(ies) of the results of any earlier classification (Rules 12bis.1(a) and (b) and 23bis) (as specified in the Annex)
12. ☒ 27 _____ Power of Attorney
other documents (specify):

☒ The Annex contains a list identifying each document transmitted by the type of document it is, the corresponding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and, if necessary, other information.

This Notification is sent to the addressee in its capacity as:

☐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the International Bureau

Name and mailing address of the receiving Office
International Application Div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89 Cheongwon-ro, Seo-gu, Daejeon, 35508, Republic of Korea
Facsimile No. +82 42 472 3473
Form PCT/RO/118 (July 2017)

Authorized officer
COMMISSIONER
Telephone No. 82-42-481-8755

ANNEX TO FORM PCT/RO/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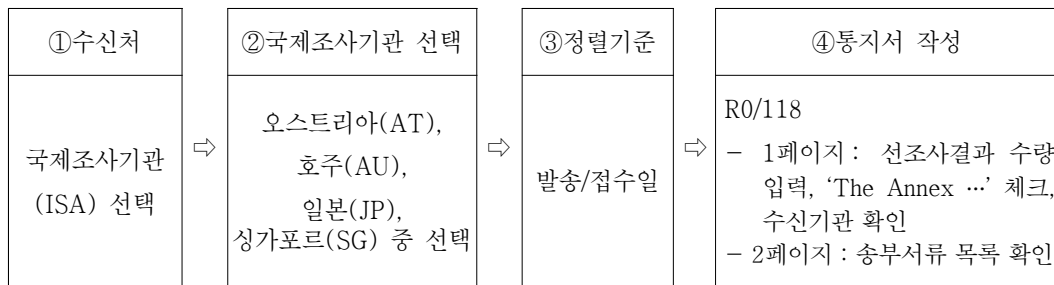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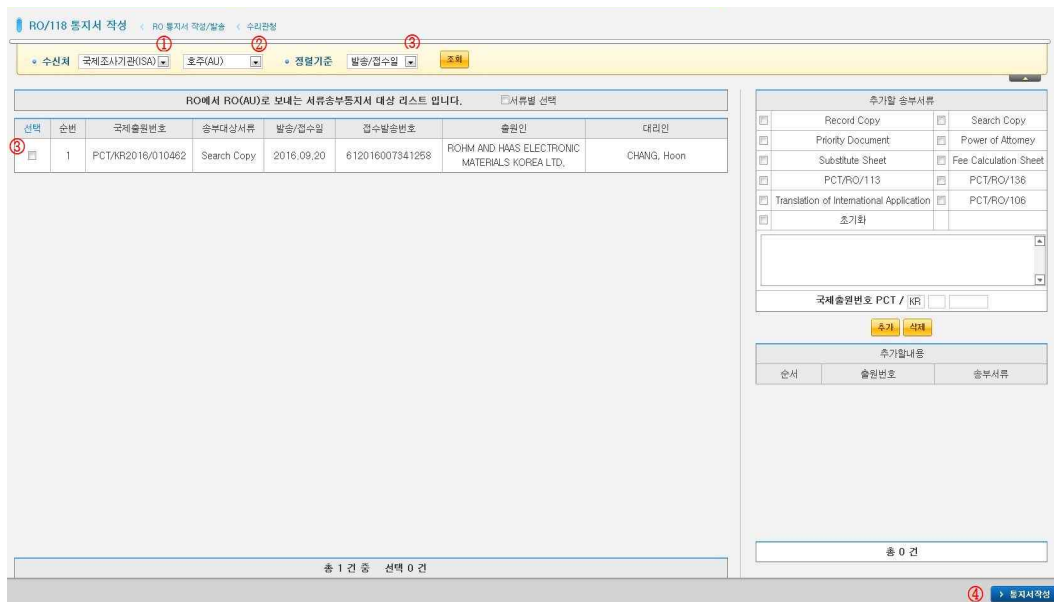
Type of docum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Other information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620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630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632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664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655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678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670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733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714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706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704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802	
Power of Attorney	PCT/KR2018/00802	

Form PCT/RO/118 (Annex) (July 2017)

4. 국제조사기관에 우편을 활용한 선조사결과 송부

수리관청이 국제조사기관(ISA/ AT, AU, JP, SG)에 우편으로 선조사결과를 송부하는 경우 송부내역을 기재한 서류송부통지서(RO/118)를 함께 송부한다.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 현재는 전자전송으로만 PCT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있음.

가. 작성 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RO통지서 작성/발송> RO/118통지서 작성
나.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RO/118통지서>

PATENT COOPERATION TREATY

From the RECEIVING OFFICE

To:
Austrian Patent Office
P.O.B. 95, Dresdner Strasse 87, A-1200 Vienna, AUSTRIA

PCT

NOTIFICATION CONCERNING
DOCUMENTS TRANSMITTED

Date of mailing (day/month/year) 03 MAY 2018 (03.05.2018)

This receiving Office transmits here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number)
1. ☐ _____ record copies (Article 12(1))
 2. ☐ _____ search copies (Article 12(1))
 3. ☐ _____ translation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Rule 12.3 or 12.4)
 4. ☐ _____ copies of purported international applications (Rule 20.4(iv))
 5. ☐ _____ translation of earlier application(Rule 20.6(a)(iii) and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05ter)
 6. ☐ _____ copies of the request from the applicant to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under Rule 26bis.3(a), and any related document(s), with the exception of any document(s) or part(s) thereof found by the receiving Office to meet the criteria of Rule 26bis.3(b-bis)
 7. ☐ _____ record copies and corrections not already transmitted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s which have been considered withdrawn (Rule 29.1(a)(i))
 8. ☐ _____ (copies of the) letters of corrections or rectifications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25(b) and (c))
 9. ☐ _____ (copies of) replacement sheets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25(b) and (c))
 10. ☐ _____ (copies of) later submitted sheets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309(b)(iv), 309(c)(iv), 310(b)(iv), 310bis(b)(v), or 310ter(iv))
 11. ☒ 1 copy(ies)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es) and/or related documents and copy(ies) of the results of any earlier classification (Rules 12bis.1(a) and (b) and 23bis) (as specified in the Annex)
 12. ☐ _____ other documents (specify):

☒ The Annex contains a list identifying each document transmitted by the type of document it is, the corresponding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and, if necessary, other information.

This Notification is sent to the addressee in its capacity as :

- ☒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the International Bureau

Name and mailing address of the receiving Office
International Application Div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89 Cheongsu-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Facsimile No. +82 42 472 3473

Form PCT/RO/118 (July 2017)

Authorized officer

COMMISSIONER

Telephone No. 82-42-481-5202



제5장 기간관리

PCT Manual

1. 기간관리의 의의

국제출원 흐름의 보정, 수수료 납부, 국제조사용번역문 제출 등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각 서류들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여 처리가 지연된 건에 대하여는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관청이 직권으로 국제출원 취하간주 통지서(RO/117)를 작성한다[Article 14(1) or (3), Rules 12.3(d) or 12.4(d), 29.1 or 92.4(g)(i)].

2. 기간관리의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서류별 제출기한 경과건

나. 기간관리 방법

1) 취하간주 대상 건(주로, 수수료 기간 관리)

국제출원수수료 미납, 국제출원의 조사용번역문을 미제출, 필요한 가산료 미납 등 더 이상 국제출원의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관리 담당자는 국제출원 취하간주 통지서(RO/117)를 작성하고 출원인·국제사무국·국제조사기관(조사용사본이 송부된 KR 이외의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한다. 실무상 수리관청에서 국제출원을 취하간주하는 경우는 가산료 납부 통지까지 되었음에도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국제출원의 취하간주는 국제출원을 종료시키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가급적 출원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그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취하간주의 대상이 아닌 것(주로, 국제출원보정요구서 기간 관리)

실무상 보정요구(RO/106) 하였으나, 보정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예: 위임장 미제출 등) 출원인(대리인)에게 안내 및 독려한다.

3. 특허넷 시스템을 통한 기간관리 방법

가. 수수료 기간관리

- 작성 메뉴 : 특허넷 > 수리관청 > RO 기간관리
- 작성순서 : 국제출원번호(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 ⇒ 통지서 작성
⇒ 국제출원취하간주통지서(117통지서)생성 ⇒ 통지서 3번 해당사항 체크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 남 파 트 장
발신: 수리관청 수신:	PCT 국제출원취하간주통지서 (PCT 14(1) 또는 (3); 규칙 12.3(d), 12.4(d), 29.1 또는 92.4(g)(i))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발송일 (일/월/년)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출원인		
당 수리관청에서는 아래 열거한 사유로 인하여 이 국제출원의 취하간주를 선언했음을 통지합니다. 1. ☐ 하자에 대한 보정 불이행: 당 수리관청에서는 _____ 자로 국제출원의 출결에 대한 보정요구서(서식 PCT/RO/106)를 송부했으나,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음. ☐ 출원인의 보정이 보정요구서에 지적된 출결을 치유하지 못했음. 2. ☐ 국제출원면역문 미제출 및/또는 가산료 미납: 당 수리관청에서는 _____ 자로 국제출원면역문의 제출 및 필요한 경우의 가산료 납부요구서(서식 PCT/RO/150) 또는 서식 PCT/RO/157을 송부했으나, 통 요구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 면역문을 제출하지 않았음. ☐ 필요한 가산료를 납부하지 않았음. 3. ☒ 수수료 미납: 당 수리관청에서는 <u>2018년</u> _____ 자로 수수료납부요구서 (서식 PCT/RO/133)를 송부했으나, 통 요구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 수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 ☐ 납부된 금액이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 및 가산료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4. ☐ 국제출원서류 원본 미제출: 당 수리관청에서는 _____ 자로(팩시밀리, 텔레프린터 등에 의하여 송달된) 국제출원서류의 원본제출요구서를 송부했으나, 통 요구서에 지정 된 기간 내에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니다. 5. ☒ 이 통지서의 사본은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작기관에 송부되었습니다.		

주 의

취하간주통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대리인(출원인)에게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의사
없는 경우에 취하간주통지서를 발행한다(메모 : 유선으로 진행의사 확인한 출원인(대리인) 기재).

나.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기간관리

☐ 작성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기간관리

☐ 작성순서

- 1) 국제출원번호(국제출원 보정요구서) ⇒ 보정사항 치유여부 확인 ⇒
치유완료 된 상태 또는 명백정정사항만 남은 경우 ⇒ 치유 및 확인처리
- 2) 국제출원번호(국제출원 보정요구서) ⇒ RO보정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
⇒ 132통지서 발행(보정 촉구)하거나 전화로 보정서 제출 독려

PATENT COOPERATION TREATY		단 당 사 무 관
From the RECEIVING OFFICE To:	PCT COMMUNICATION IN CASES FOR WHICH NO OTHER FORM IS APPLICABLE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_____	Date of mailing (day/month/year) _____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KR _____	REPLY DUE See paragraph 1 below International filing date (day/month/year) _____	
Applicant _____		
1. ☐ REPLY DUE within _____ months from the above date of mailing ☐ NO REPLY DUE, however, see below _____ ☒ IMPORTANT COMMUNICATION ☐ INFORMATION ONLY 2. COMMUNICATION: 1. 2017.12.02 일자 수리관청에서 발행한 "국제출원 보정요구서" 관련입니다. 2. 해당 보정요구가 기한내에(보정요청후 2월이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KR 직권정정 기간관리

☐ 작성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기간관리

☐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 1) 국제출원번호(국제출원서) 선택 후, 국제출원 열람 화면에서 해당 출원서 확인(국내우선권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제외 항목(V)에 KR이라고 기재된 경우에 해당)

V	지정국	
V-1	본 출원서의 제출료, 규칙 4.9(a)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지역특허 및 국내특허 모두를 위하여 당해 국제출원일에 PCT에 기록되는 모든 제약국이 지정된다.	
V-2	V-2란은 출원서 제출시 또는 규칙 26의2.1에 의해 그 이후 출원서 제6기제안에 위 특정 관련 제약국의 국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해 제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해당 국내 선출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제약국의 지정을 제외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지정 제외시 이의 취소 불가능)	KR
VI-1	우선권 주장	없음
VII-1	국제조사기관(ISA) 선택	대한민국 특허청 (ISA/KR)

- 2) 통지서 작성 클릭 => 직권정정 통지서(RO/146) 작성

* 문안예시 : Box No.V-2, Exclusion of designation of “KR” was deleted
Box No.V-2, Exclusion of designation of “JP” was deleted

특 허 협 령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당 당 사 부 관
발신: 수리관청 수신:		
PCT 직권정정통지서 (PCT 시행세칙 319 및 327)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장소기호	발송일 1999/10/19	답변기간 없음 단, 3.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	국제출원일 1999/10/19	
출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 당 수리관청에서는 첨부된 다음 서류의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출원의 형식상의 결함을 지적함으로써 정정하였습니다 ☒ 출원서, 용지번호: 1/4 ☐ 명명의 설명, 용지번호: _____ ☐ 청구범위, 용지번호: _____ ☐ 도면, 용지번호: _____ ☒ 기타(명시): Box No. V-2, Exclusion of designation of "KR" was deleted.		

- 3) 수리관청 → RO 서지입력 → RO 국제출원서 입력/수정을 선택하고, 해당 국제출원번호를 조회한 후 Box No.V DESIGNATIONS 항목에서 KR로 체크된 것을 해제한다. 다시 출원번호를 조회 후 정정을 확인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RO 국제출원서 입력/수정' (RO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KR2015/004269) form. The 'Box No.V DESIGNATIONS' section is highlighted, showing checkboxes for 'DE Germany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JP Japan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and 'KR Republic of Korea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The 'KR' checkbox is checked. The form also shows 'Box No.VI PRIORITY CLAIM' and 'Box No.VII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sections. The 'KR' checkbox in the 'Box No.VII' section is also checked.

라. 우선권서류 기간관리

- 작성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기간관리
- 조치사항 : 우선권서류보정요구서(RO/110) 통지 후 우선권보정이 출원일로부터 4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은 날까지 당해 우선권 주장에 대해 보정(추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무효처분한다.

예외

우선권 주장 무효 간주의 예외 [Rule 26bis.2(c)]

- 다음과 같은 사유만으로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 선출원번호의 기재 누락
 - 우선권 주장에 대한 기재사항이 우선권서류상의 해당 기재와 상이
 - 우선일이 국제출원일 이전 12개월 ~ 14개월 사이
- ※ 이 경우,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기재한 우선권 주장을 계속한다.

마. 조사용 번역문 기간관리

- ☐ 작성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기간관리
- ☐ 조치사항 : 조사용 번역문이 1개월 내 제출되지 않으면 가산료 납부를 통지하며, 우선일로부터 14개월이 경과한 경우 취하간주한다.
 - 국제출원 기본료의 25%가 가산료(수수료 변경시 가산료변경 적용 확인)
 - 2.a체크 출원서 접수일자 기재

바. 수리관청 자기지정 화면방식 기간관리

- ☐ 작성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자기지정 화면방식
- ☐ 작성순서 및 특허넷 작성화면
 - 1) 국내우선권에 기초한 국제출원에서 KR 자기지정 제외를 하지 않을 경우 특허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선출원이 취하 간주되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출원번호를 선택하여 국제출원정보와 우선권 주장에 대한 출원인 명칭, 주소를 비교한다. 선출원(우선권주장)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건별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
- 3) 출원인이 동일할 경우 동일 여부는 YES로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132 통지서가 생성된다. 작성문구는 132 통지서의 문구에서 선택하면 된다.
 - 또한, 다수 선출원인 중 1명의 후출원인만 같을 경우 동일여부는 NO로 체크하고, 132 통지서는 작성을 하지 않는다.

사. 국제출원 보완요구서 기간관리

- ☐ 작성메뉴 : 특허넷> 수리관청> 기간관리
- ☐ 조치사항 : 국제출원보완요구서 통지후 2개월 내 제출되지 않으면 국제출원 불취급 통지서(RO/104)를 작성, 발송한다.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당 당 사무 관
발신: 수리관청 수신: 김만전 대한민국 5902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우체국-6-432		
PCT 국제출원 불취급 통지서 (PCT 규칙 20.4(i))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420160099497		발송일 (일/월/년)
국제출원번호 PCT/KR2021/007201		중요통지사항
출원인 김만전		접수일 (일/월/년) 2021년 06월 09일 (09.06.2021)
발명의 명칭 BG, 진품등록 [BTF]		
1. 이 출원은 아래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국제출원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당 수리관청에서는 2021.06.22자로 출원인에게 보완요구서(서식 PCT/RO/103)를 발송했습니다. 3. 그러나 ☒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출원인의 답변은 보완요구서 _____항에서 제기한 요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 출원인 기 납부한 국제료와 조사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환불됩니다. 5. 위에 기재한 번호가 더 이상 국제출원번호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알리기 위하여 이 통지서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했습니다.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 42 472 3473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5202
서식 PCT/RO/104 (2007년 4월)		

제 2 편

국제출원수수료

제1장 수수료 점검

제2장 수수료 송금

제3장 수수료 변경

제1장 수수료 점검

1. PCT 국제출원수수료 점검의 의의

수리관청은 Article 3(4)(iv)에 따라 출원인이 규정된 수수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다[Rules 14, 15 and 16].

2. PCT 국제출원수수료

(2026.06.01. 기준)

종 류			납부액	비고
국제 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서면출원 시)		1,330스위스프랑	
	출원서류 30매까지(온라인 출원시)		1,030스위스프랑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15스위스프랑	
조사료	한 국	한국어	450,000원	
		영 어	1,200,000원	
	오스트리아*		3,250,000원	
	호 주		2,268,000원	
	일 본		1,356,000원	
	싱가포르		2,765,000원	
송달료			45,000원	
*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 75% 감면				

- 국제출원료: 각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리관청이 수납하는, 국제사무국의 수입으로 하는 수수료
- 조사료: 국제조사의 수행 및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위임되는 기타 모든 임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
- 송달료: 국제출원의 접수, 국제사무국 및 관할 국제조사기관으로의 국제출원 서류의 송부, 그리고 수리관청으로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처리하여야 할 기타 모든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수리관청의 수입으로 하는 수수료

3. 납부기준 및 반환

가.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조사료, 송달료) 납부기준

- 1)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 납부금액은 접수일에 적용되는 금액임 [Rule 15.3]

나. 국제출원수수료의 반환 [Rule 15.4, 16.2, Section 326(c)]

- 1) 사유
 - 조약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부정적인 경우
 - 국제사무국에 기록원본을 송부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국제출원료)
 - 국제조사기관에 조사용 사본을 송부하기 전에 국제출원을 취하하거나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조사료)
 -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국제출원으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
 - * 단, 송달료(45,000원)는 반환대상이 아님
- 2) 수수료반환통지서(RO/119) 작성

국제출원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국제출원취하서를 수리시 PCT/RO/119 작성 팝업창이 생성되고 확인을 누르면 반환 통지서 화면으로 이동함

참고 : 특허협력조약

[PCT Article 11(1)]

- (1) 수리관청은 다음의 요건이 수리 시에 충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수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
 - (i) 출원인이 해당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할 권리에, 주소 또는 국적상의 이유에 따른 명백한 흠결이 없는 자일 것
 - (ii) 국제출원이 정해진 언어로 작성되어 있을 것
 - (iii) 국제출원에 적어도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 (a)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 (b) 적어도 하나의 계약국 지정
 - (c) 출원인 성명의 특정된 표시
 - (d) 발명의 설명이라는 것이 외견상 인정되는 부분
 - (e) 청구범위라는 것이 외견상 인정되는 부분

<PCT/RO/119>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KR2016/01												
발신: 수리관청 수신: 특허법인 대한민국 06292 서울시		PCT 수수료납부통지서 (PCT 규칙 15.6 및 16.2; PCT 시행세칙 326(c))													
		발송일 (일/월/년) 2016년 12월 20일 (20.12.2016)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장조기호		통지용													
국제출원번호 PCT/KR2016/01	국제출원일(일/월/년) 2016년 12월 15일 (15.12.2016)	의향국제출원 접수일(일/월/년) 2016년 12월 15일 (15.12.2016)													
출원인 주식회사															
1. 이 (의향)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인이 납부하신 아래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환불됩니다. a. ☐ 이 출원은 제11조(1)에 의한 결정에 따라서 국제출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b. ☒ 이 국제출원은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이전에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었습니다. c. ☒ 이 국제출원은 조사용 사본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이전에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었습니다. d. ☐ 이 출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국제출원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2. 환불금액: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40%;">국제출원료:</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CHF 1,00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조사료:</td> <td style="text-align: right;">₩ 450,000</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 style="text-align: right;">CHF 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 450,000</td> </tr> </table>				국제출원료:	CHF 1,000			조사료:	₩ 450,000			합계:	CHF 1,000	*	₩ 450,000
국제출원료:	CHF 1,000														
조사료:	₩ 450,000														
합계:	CHF 1,000	*	₩ 450,000												
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 42 472 3473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8552 													

서식 PCT/RO/119 (2004년 1월)

4. 수수료 확인

가. 납부기간 만료 이전

[Rules 14, 15 and 16, Sections 304, 323(b), 707(b)]

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 미납한 경우 : 수리관청은 납부기간 내에 적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출원인에게 수수료납부통지서(PCT/RO/102)를 작성하여 안내한다.

나. 납부기간 만료 후

- 1) 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 미납한 경우: 수리관청은 규칙 제14.1조(c), 제15.3조 및 제16.1조(f)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당해 관청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당해 관청에 납부된 금액이 송달료,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 및 규칙 제16조의2.2의 규정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즉, 수리관청은 수수료 및 가산료납부요구서(Form PCT/RO/133)을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 2) 수리관청이 RO/133을 발송하기 전에 수납한 수수료는 적용기간의 만료 이전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3) 가산료 금액은 RO/133에 전산으로 자동입력되며, 가산료는 미납액을 기초로 하여 상한액(국제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은 국제출원료 금액의 50%) 및 하한액(송달료)을 따를 조건으로 미납액의 50%이다. RO/133작성시 해당부분에 체크한다.

다. 특허넷시스템 화면조작요령

- 1) 수리관청> RO 수수료> RO 수수료 통지서 작성; 수수료 납부요구서(RO/102) 및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RO/133) 작성대상건의 리스트가 보여진다.

RO 수수료 통지서 작성 < RO 수수료

• 국제출원번호 PCT/KR /

☐	국제출원번호	상태
☒	PCT/KR2022/016351	RO/102(기간경과)
☒	PCT/KR2022/016516	RO/102(기간경과)
☒	PCT/KR2022/018348	일부미납
☒	PCT/KR2022/018481	일부미납
☒	PCT/KR2022/018482	일부미납
☐	PCT/KR2022/018495	20221222
☐	PCT/KR2022/018517	20221222
☐	PCT/KR2022/018519	20221222
☐	PCT/KR2022/018548	20221223

수수수료 납부 1개월이 경과하여
수수료 가산 대상인 건 표기

수수료가 납부되었으나, 방식이 안된 건
또는 일부 금액이 미납된 건이 표기됨

수수료 미납 상태를 표기(표기된 날짜는
수수료 가산이 불가 전까지의 날을 표기)

2) 해당 출원번호를 클릭하고, 국제출원열람을 통해 수수료납부상태를 확인한 후 통지서를 작성한다.

가) 수수료납부통지서(RO/102) 작성

- 대상 : 특허넷 화면상 국제출원번호 옆에 수수료납부만료 예정일이 있는 건

※ 참조 : 출원서 접수 후 15일 이내 수수료미납 건이 화면에 뜨며, 이중 '일부 미납'으로 표시되는 건은 현재 수수료납부서가 제출되었으나, 방식이 안 된 건이거나 일부 미납된 건임

- 작성 : 국제출원번호를 클릭하여 취하서 또는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제출이력이 없으면 우측하단 [통지서작성]*을 클릭⇒ RO/102 통지서 작성화면 이동 ⇒ 통지서 2건 (국제출원료, 조사료 및 송달료) 확인 후 [결제상신]

* '22. 하반기부터 여러 건을 클릭한 후 동시에 통지서 작성이 가능하다.(최대 PCT 출원 10건)

※ 참조 : 취하서 또는 수수료납부서 제출 상태이면 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류한다.

나)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요구서(RO/133) 작성

- 대상 : 국제출원번호 옆에 'RO/102(기간경과)'라고 표시된 건
- 작성 : 국제출원번호를 클릭하여 취하서 또는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이력이 없으면 [통지서작성] ⇨ RO/133 작성화면 ⇨ RO/133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 가산료 부분에서 해당 항목에 체크

<RO/133 두 번째 페이지 예시>

가산료

가산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총 미납액의 50% ⇨ 계산된 가산료가 가산료의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

☐ 송달료(가산료의 하한액) ⇨ 계산된 가산료가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

☐ 국제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은 국제출원료 금액의 50%(가산료의 상한액) ⇨ 계산된 가산료가 가산료의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 * 참고: 가산료의 상한액은 1,330CHF의 50%

※ 참조 : 취하서 또는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상태면 방식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고, 수수료가 소액 일부 미납인 경우 통지서를 작성하지 말고 전화로 나머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 가산료 ⇒ 원화 + 외화의 50%. 외화는 30매 초과인 경우 1,330 CHF로 계산됨.

다) 취하간주 통지서(RO/117) 작성

- 대상 : 국제출원번호 옆에 'RO/133(기간경과)'라고 표시된 건
- 작성 : 제1편 5장 기간관리 부분의 PCT/RO/117 작성방법과 동일
- ※ PCT/RO/117은 국제출원절차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취하서 또는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이력이 없으면 대리인(또는 출원인)과 통화하여 진행의사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제2장 PCT Manual 수수료 송금

1. PCT 국제출원수수료 송금의 의의

수리관청은 전월에 수납한 국제출원료[Rules 15.2(a)] 및 조사료[Rule 16.1(b),(c)]를 각각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에 매달 송금한다. 송달료 [Rule 14], 가산료[Rule 16bis.2]는 수리관청의 수입이 된다[PCT RECEIVING OFFICE GUIDELINES (Paragraphs 272, 273)].

2. PCT 국제출원수수료 : 외화금액(스위스프랑) 송금

기 관	국 제 사 무 국
송 금 액(통화)	국 제 출원료 1,330(CHF) : 출원서류 30매까지 300(CHF) : SAFE 작성에 따른 감면 15(CHF) : 30매 초과시 1매당
수 신 은 행	Credit Suisse (Switzerland) Ltd
계 좌 번 호	Beneficiary: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BAN Number :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 Code : CRESCHZZ80A

3. PCT 조사료 : 원화금액을 송금당일 환율로 환산한 외화금액 송금

(기준: 2026년 06월)

기 관	조사기관			
	오스트리아특허청	호주특허청	일본특허청	싱가포르특허청
기준금액 (건당)	1,885EUR = 3,250,000원	2,200 AUD = 2,268,000원	143,000 JPY = 1,356,000원	2,350 SGD = 2,765,000원
수 신 은 행	Credit Suisse (Switzerland) Ltd			
계 좌 번 호	Beneficiary: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BAN Number :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 Code : CRESCHZZ80A			

※ 한 - WIPO간, PCT Fee Service 관련 MOU 체결('20.2.10)에 따라, 국제조사료 송금 절차가 변경됨(RO가 받은 원화를 스위스프랑으로 환전하여 IB로 송금)

4. 특허넷시스템 화면조작요령

가. 송금요청시기 : 매월 20일경 내외

나. 송금대상확인 : 『수리관청』 ⇨ 『RO 수수료』 ⇨ 『RO 수수료 송금』

다. 송금화면 설명(아래 숫자 순서대로 진행)

RO 수수료 송금 < RO 수수료 < 수리관청

● 수수료 송금 조회 조건

작업일자 2020년 09월 18일

② ● 일자별 송금 대상 조회 2019.08.01 ~ 2020.08.31

① 대상 IB 년도 ○ 2004년 이전 출원건송금 ○ 2004년 이후 출원건 ③ ● 2013년 이후 출원건송금

○ 국제출원번호 조회 PCT/KR /

⑤ 조회

(Currency : Swiss francs)

삭제 대상	PCT Number Applicant (first named in request)	International filing fee (I1+I2)		Reductions (r)			Reduced international filing fee (I1+I2-r) or (I1+I2-r) x 25%, as applicable	Reduced international filing fee (CHF)
		first 30 sheets (I1)	fee per sheet over 30 (I2)	PCT-EASY	Electronic filing not character coded	Electronic filing character coded		
☐		TOTAL						

④ 은행납부일 : 2020 년 08 월 31 일

삭제 추가 출력 저장 재저장

① : 송금 대상을 선택한다(최초 값은 IB로 세팅됨).
 ② : 송금 일자별 1년 이상 기간을 조회한다.(ex, 2022.11월분 송부, 2021.11.01.~ 2022.11.30.)
 ③ : 2013년 이후 출원건 송금 체크를 확인한다.
 ④ : 은행납부일을 송금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지정 한다.(ex. 2022.11.30.)
 ⑤ : 조회를 클릭한다.(총건수, 총금액 별도 메모)

라. 송금작업 절차

1) 국제출원료(대상 : IB)

조회하여 목록이 화면에 나오면 [④]아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폴더(c:\kipodir)에 파일명 그대로 파일들을 저장한다.

※ “추가”를 클릭하면 리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행이 생성되며, 출원번호, 출원인, 금액 등을 입력하여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주의 : 추가하는 경우, 시스템 상에서는 합계 계산이 되지 않으나, 다운 받으면, 합계가 올바르게 생성됨)

2) 조사료(ISA/AT, ISA/AU, ISA/JP, ISA/SG)

[①]의 송금 대상을 변경하여 다시 순서대로 작업한다.

※ 조회해서 대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조회대상은 송금 작업할 필요가 없다.

Tip

파일 저장시 생성되는 파일 목록들

수수료송금내역_IB2013(NEW)_20xxxxxx → 이 파일은 불필요하니 삭제
 수수료송금내역_KR_IB2013(NEW)_20xxxxxx → e-mail 발송시 첨부용
 KR-IB-201xxxxx-fpay-xxxxxx-en → winSCP 프로그램 전송용(총금액 확인, 위에서 4번째)
 수수료송금내역_ISA(해당 조사기관명)_201xxxxx → 이 파일은 불필요하니 삭제
 수수료송금내역_KR_ISA(해당 조사기관명)_201xxxxx → e-mail 발송시 첨부용

- 3) 송금내역 저장한 폴더로 이동하여 ‘수수료송금내역_KR’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열어 총 건수와 총 금액을 확인하여 엑셀파일(수수료 이체 현황)에 내용 갱신을 한다.
- 4) 온나라문서에서 운영지원과에 PCT 국제출원료 송금요청공문을 발송한다. 공문 발송 후 인터넷클라우드 PC의 ‘winSCP’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KR-IB-202xxxxx-fpay-xxxxxx-en’ 파일을 업로드 한다.
- 5) 업로드 후 수리관청과 IPEA의 송금 관련 파일 등을 수리관청 공유폴더(N:05.WIPO 수수료송금)에 저장한다.
- 6) 운영지원과 세입담당자가 송금 후 송금영수증 스캔본 파일을 쪽지로 전달하면 파일을 업무용PC에 저장하고, 요청했던 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운영지원과에서 송금결과통보 공문을 받고 재확인한다.
- 7) 운영지원과 공문 수신 후 IB에 송금 관련 이메일을 송부한다.(이전 메일 참고), 이메일을 송부하면 수일 내로 회신 답장이 온다.(내용 확인)

※ WIPO(IB) 수수료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주소	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income.pct@wipo.int fee.pct@wipo.int	Income Section / Finance Division / WIPO	Tel: +41 22 338 71 45 (Infoline) +41 22 338 77 44 Fax: +41 22 338 89 10

[주 의]

1. 이메일 송부는 공직자통합메일에 로그인하여 기존 발송 정보 클릭한 뒤 다시쓰기를 누르고 수수료를 정정한 다음에 송금목록을 첨부하여 전송한다.
2. 국제사무국에 이메일 발송시 ‘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IPEA_FEE_REMIT_KR_’로 시작하는 파일을 메신저로 받아서 송금목록(수수료송금내역_KR_IB~)과 함께 전송한다.
3. 수수료 관련하여 WIPO/PCT Administrative Support Section에서 문서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잘 검토하여 적절히 대처하도록 한다. 주로 송금이 누락 되었거나, 부족 및 과납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송금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송금목록 작성시, 누락 및 부족된 금액은 추가하고 과납한 금액은 전체 송금액에서 감액하여 송금한다.
4. 과거에는 RO/KR이 국제조사료를 원화로 받아 각 ISA의 공식통화로 환전하여 각국 특허청에 개별송금 및 이메일 수수료송금정보 통지를 하였으나, 한&WIPO간, PCT Fee Service 관련 MOU 체결('20.2.10) 등에 따라, 국제조사료 송금 절차가 변경되어, 현재는 모든 국제조사료를 스위스프랑으로 환전하여 IB로만 통합송금 및 이메일 수수료송금정보 통지한 후, 이를 IB가 각 ISA에 재송금 하도록 변경됨
 - * 2020.03.01: ISA/KR, ISA/AT, ISA/JP 개정된 수수료절차 시행
 - * 2020.07.01: ISA/AU 개정된 수수료절차 시행 추가, ISA/SG가 조사기관으로 신규도입 및 개정된 수수료절차 시행
 ⇒ RO/KR에 출원한 자가 지정가능한 모든 국제조사기관은 개정된 수수료절차 시행

제3장 PCT Manual 수수료 변경

1. 국제출원수수료 변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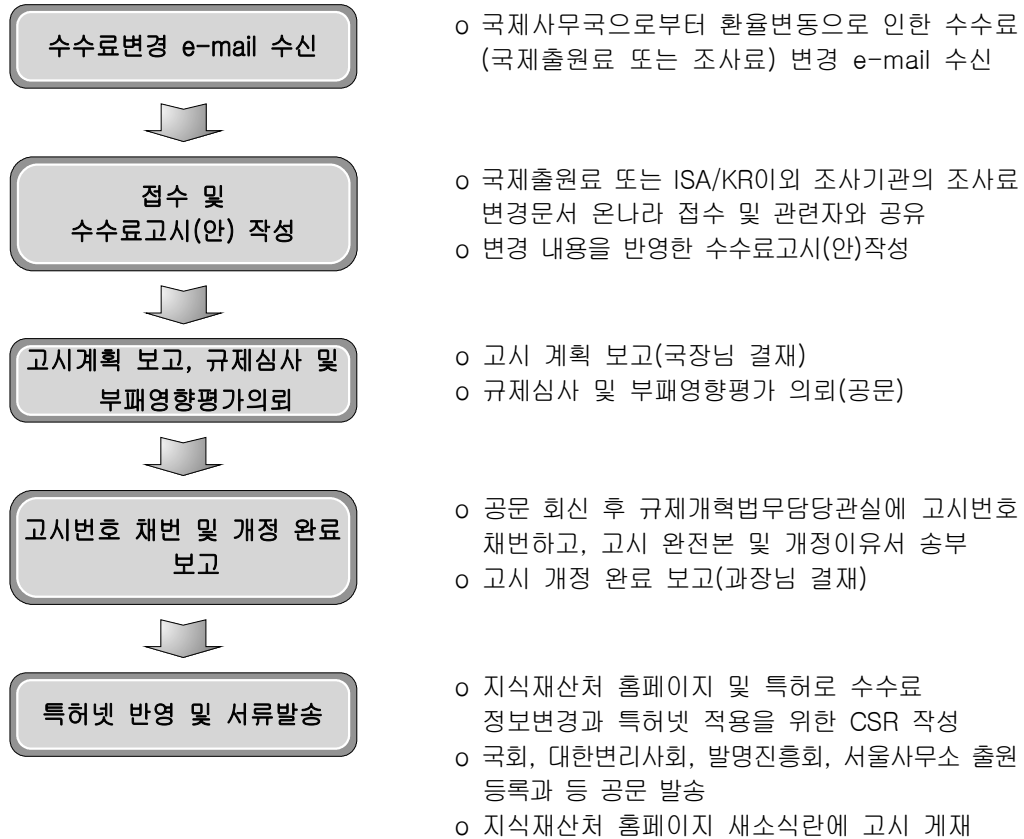
수수료 표(Schedule of Fees)에 규정된 수수료(국제출원료 및 감면료)는 WIPO 총회를 통해, 조사료의 납부금액은 WIPO 총회(매년 검토) 또는 환율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다. 매년 검토되는 수수료는 다음 해 1.1.부터, 환율에 의한 납부금액의 변경은 국제사무국의 변경 금액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일자부터 적용된다.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를 수리관청통화로 납부할 수 있고, 국제사무국은 그 금액을 PCT Gazette에 고시하며 공식통화와 수리관청 통화간의 환율이 종전 적용환율과 다르게 된 경우는 수리관청에 새로운 금액과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리관청의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금액을 PCT Gazette에 게재한다(제네바 시간 정오 기준으로 4주 연속 금요일의 환율 변동폭이 $\pm 5\%$ 이상일 때).

2. 국제출원수수료 책정

	해당 기관	공식 통화	비고
국제출원료	WIPO/IB	CHF	국제사무국 수입의 수수료로 수수료 표(Schedule of Fees)에 정한다. 수리관청통화로 납부할 경우* 그 금액은 공식통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사무국장이 수리관청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금액을 결정한다.[Rule 15] * 우리청은 수수료표에 규정된 스위스프랑으로 징수한다.
조사료	ISA/KR	KRW	국제조사업무의 수행 및 조사기관에 부여된 기타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로 해당 조사기관 공식통화로 일정금액을 책정한다. 수리관청통화로 납부할 경우 그 금액은 공식통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사무국장이 수리관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Rule 16]
	ISA/AT	EUR	
	ISA/AU	AUD	
	ISA/JP	JPY	
	ISA/SG	SGD	
송달료	RO/KR	KRW	국제출원의 접수 및 서류의 송부 등 수리관청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로 수리관청 공식통화로 일정금액을 책정한다. [Rule 14]

3. 변경 수수료의 적용

가. 개 요



나.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변경 절차

- 1) 수수료 변동관련 e-mail 수신 후 개정필요(한국지식재산처 이외의 기관을 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문서를 문서등록대장에 비전자 문서로 접수한다.
- 2) 변경 내용을 반영한 수수료고시(안) 작성 후 내부 결재(국장님) 실시한다.
-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규제검토,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공문을 보낸다.
- 4) 규제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회신을 받은 이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고시

번호 채번요청(직무가 ‘규제개혁’인 담당자에게)한다.

- 5) 채번이후 수수료고시(안)에 고시번호, 고시일자를 채워 완전본을 만들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완전본 및 개정이유서를 메신저로 전송한다(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처 연동하여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에 기재함).

- 6) 고시채번 완료 후 고시개정 완료 보고를 한다.(과장님 내부 결재)

- 7)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특허로 및 특허넷에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CSR을 작성한다.

※ 주의 : 즉시 반영이 아닌 해당 날짜에 반영될 수 있게 요청한다.

- 8) 지식재산처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공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공문 작성일 중요)

- 9) 공문 송부이후에 인쇄물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위원회 명단 및 호실은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담당자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국회법 제98조에 근거하여 변경된 고시내용을 개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 제출처 : 위원회 의원실(본관 위원장실 포함) 및 행정실
- 제출 부수 : 각각 2부 제출하고 수령증 사인받기

- 10)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공문을 송부한다.

※ 출원과의 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및 특허고객센터에 미리 메신저로 수수료안내를 공지한다.

- 11) 대한변리사회, 여성발명협회 및 지식재산처 산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공문을 송부한다.

[참고] 법령개정 및 고시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법령을 개정한다(정보고객정책과).
 2. 국제출원료, 조사료(한국 지식재산처 이외의 기관을 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취급료 및 감면 대상 국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내용을 고시한다(국제출원과).
- ※ 지식재산처 훈령(예시, 고시, 공고) 제·개정 절차(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사무국(WIPO)의 국제조서료 변경공문(비정기적으로 실시)>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 PCT FEES 0666 May 25, 2020

Madam,
Sir,

ESTABLISHMENT OF A NEW EQUIVALENT AMOUNT

This Circular is addressed to your Office in its capacity as receiving Office (RO)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for the purposes of consultation regarding a new equivalent amount in your currency of the search fee charged by the Australian Patent Office in its capacity as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The exchange more than fo used for esta

In accordance (held from St established as follows, with effect

**해외조사기관의 조사료가
해당 위치에 존재하면
고시작업 실시**

the Won (KRW) has been, for higher than the exchange rate

ably at its fortieth session ent amount in KRW will be

AUD 2,200 = KRW 1,757,000

August 1, 2020:

Unless we hear from you to the contrary on or before June 1, 2020, the new amount wi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Notices (PCT Gazette) shortly after that date.

Yours sincerely,



John Sandage
Deputy Director General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T +41 22 338 91 11 F +41 22 730 64 26
www.wipo.int

<10월 정기총회 개최이후 수수료 변경공문(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Table 1 - PCT Fees: New equivalent amounts for international filing fee and handling fee (in prescribed currencies)
(applicable from January 1, 2020)

Currency	Exchange rate in Swiss franc on 07.10.2019	International filing fee Rule 15.2(a)	Fee per sheet in excess of 30 Rule 15.2(a)	E-filing reductions according to Schedule of Fees			Handling fee Rule 57.2(a) Schedule of fees Item 3	
				Item 4(a)	Item 4(b)	Item 4(c)		
Reference currency Swiss franc		1,330	15	100	200	300	200	Current amount
AUD - Australian dollar	0.6703732	2,005 1,984	23 22	n.a n.a	302 298	452 448	302 298	Current amount * New amount
CAD - Canadian dollar	0.7474476	1,730 1,779	20 20	n.a n.a	260 268	390 401	260 268	Current amount New amount
DKK - Danish krone	0.1462633	8,710 9,090	100 100	n.a n.a	1,310 1,370	1,970 2,050	1,310 1,370	Current amount New amount
EUR - Euro	1.0925160	1,169 1,217	13 14	68 92	176 183	264 275	176 183	Current amount New amount
GBP - Pound sterling	1.2253796	1,112 1,085	13 12	n.a n.a	167 163	251 245	n.a n.a	Current amount * New amount
HUF - Hungarian forint	0.0032745	400,500 406,200	4,500 4,600	n.a n.a	60,200 61,100	90,300 91,600	n.a n.a	Current amount ** New amount
				n.a			739	Current amount
				n.a			706	New amount
			1,800	n.a	24,600	36,900	n.a	Current amount
			1,900	n.a	25,000	37,500	n.a	New amount
JPY - Japanese yen	0.0092893	143,200 143,200	1,600 1,600	n.a n.a	n.a n.a	32,700 32,300	21,800 21,500	Current amount New amount
KRW - Korean won	0.0008309			n.a	n.a		250,000	Current amount *
				n.a	n.a		241,000	New amount
NOK - Norwegian krone	0.1089379	12,100 12,210	140 140	n.a n.a	1,830 1,840	2,740 2,750	n.a n.a	Current amount * New amount
NZD - New Zealand dollar	0.6256909	2,044 2,126	23 24	n.a n.a	307 320	461 479	n.a n.a	Current amount New amount
SEK - Swedish krona	0.1004617	13,150 13,240	150 150	n.a n.a	1,980 1,990	2,970 2,990	1,980 1,990	Current amount * New amount
SGD - Singapore dollar	0.7201197	1,854 1,847	21 21	n.a n.a	279 278	418 417	279 278	Current amount New amount
USD - US dollar	0.9944478	1,352 1,337	15 15	102 101	203 201	305 302	203 201	Current amount New amount
ZAR - South African rand	0.0656674	20,440 20,250	230 230	n.a n.a	3,070 3,050	4,610 4,570	n.a n.a	Current amount ** New amount

* Amounts applicable since November 1, 2019.
** Amounts applicable as from December 1, 2019.
*** Those amounts correspond to the exchange value, applicable on the date of payment, in New Israeli sheqels of the amounts in US dollars indicated above.
**** Those amounts correspond to the exchange value, applicable on the date of payment, in Korean won of the amounts in Swiss francs indicated above.

※ 정기총회 이후, 변경 공문에서는 취급료를 비롯하여, 모든 조사료 확인 필수

<수수료고시 예시>

특허청 고시 제2020-19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소관 : 국제출원과]

개정 2008년01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7-16호	개정 2013년02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13-5호
개정 2008년05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6호	개정 2013년04월12일 특허청 고시 제2013-10호
개정 2008년07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14호	개정 2013년07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13-17호
개정 2008년09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08-18호	개정 2013년08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3-18호
개정 2009년01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23호	개정 2013년12월04일 특허청 고시 제2013-37호
개정 2009년02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09-1호	개정 2014년02월10일 특허청 고시 제2014-4호
개정 2009년04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9-3호	개정 2014년03월24일 특허청 고시 제2014-9호
개정 2009년07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09-13호	개정 2014년06월30일 특허청 고시 제2014-19호
개정 2009년08월24일 특허청 고시 제2009-20호	개정 2014년11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14-30호
정정 2009년10월20일 특허청 고시 제2009-28호	개정 2015년03월12일 특허청 고시 제2015-3호
개정 2009년11월02일 특허청 고시 제2009-37호	개정 2015년06월23일 특허청 고시 제2015-9호
개정 2009년12월04일 특허청 고시 제2009-40호	개정 2015년11월18일 특허청 고시 제2015-32호
개정 2010년01월26일 특허청 고시 제2010-2호	개정 2015년12월14일 특허청 고시 제2015-37호
개정 2010년02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0-3호	개정 2016년05월11일 특허청 고시 제2016-10호
개정 2010년04월05일 특허청 고시 제2010-7호	개정 2016년09월02일 특허청 고시 제2016-22호
개정 2010년06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0호	개정 2016년11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6-26호
개정 2010년07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10-12호	개정 2017년02월28일 특허청 고시 제2017-6호
개정 2010년07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10-13호	개정 2017년09월22일 특허청 고시 제2017-21호
개정 2010년09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6호	개정 2017년11월22일 특허청 고시 제2017-25호
개정 2010년11월2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7호	개정 2017년12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7-28호
개정 2011년03월31일 특허청 고시 제2011-5호	개정 2018년02월12일 특허청 고시 제2018-1호
개정 2011년07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11-14호	개정 2018년05월23일 특허청 고시 제2018-8호
개정 2011년10월06일 특허청 고시 제2011-20호	개정 2018년09월03일 특허청 고시 제2018-21호
개정 2011년12월06일 특허청 고시 제2011-25호	개정 2018년11월14일 특허청 고시 제2018-25호
개정 2012년03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2-2호	개정 2018년12월21일 특허청 고시 제2018-32호
개정 2012년04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2-4호	개정 2019년07월17일 특허청 고시 제2019-10호
개정 2012년05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12-5호	개정 2019년09월24일 특허청 고시 제2019-13호
개정 2012년06월18일 특허청 고시 제2012-7호	개정 2019년10월28일 특허청 고시 제2019-18호
개정 2012년08월22일 특허청 고시 제2012-31호	개정 2019년12월19일 특허청 고시 제2019-23호
개정 2012년09월17일 특허청 고시 제2012-32호	개정 2019년12월31일 특허청 고시 제2019-26호
개정 2012년10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12-33호	개정 2020년05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20-14호
개정 2012년12월13일 특허청 고시 제2012-38호	개정 2020년06월26일 특허청 고시 제2020-19호

1. 국제출원료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330스위스프랑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2,334,000원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757,000원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일본 법령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출원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조사료 감면 신청 시, 조사료 감면 여부는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특허청에서 결정한다.)	783,000원
라.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955,000원
3. 취급료	255,000원
4. 감면료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c)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고고시된 매매 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6. 삭제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국가 : 필리핀, 인도 네시아, 베트남, 몽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8. 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9호, 2020. 6. 26.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 조정에 의거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0년 8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수령증 예시>

제출자료 수령확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 관 명 : 특허청

□ 제 출 일 : 2020.6.30.

□ 제출자료 :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연번	위원명	호실	부수	서명	비고
1	이환영(더불어민주당)	본539	2		
2	송갑석(더불어민주당)	1020	2		
3	강민국(미래통합당)	1007	2		
4	이동주(더불어민주당)	933	2		
5	이용선(더불어민주당)	931	2		
6	엄태영(미래통합당)	821	2		
7	한무경(미래통합당)	822	2		
8	최승재(미래통합당)	830	2		
9	이재익(미래통합당)	844	2		
1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735	2		
11	강훈식(더불어민주당)	722	2		
12	김정호(더불어민주당)	609	2		
13	신영대(더불어민주당)	610	2		
14	김경만(더불어민주당)	611	2		
15	김성환(더불어민주당)	614	2		
16	윤두현(미래통합당)	602	2		
17	고민정(더불어민주당)	629	2		
18	홍석준(미래통합당)	634	2		
19	이성만(더불어민주당)	532	2		
20	신정훈(더불어민주당)	547	2		
21	이소영(더불어민주당)	546	2		
22	조정훈(시대전환)	544	2		
23	김기현(미래통합당)	550	2		
24	류호정(정의당)	513	2		
25	황운하(더불어민주당)	416	2		
26	구자근(미래통합당)	408	2		
27	정태호(더불어민주당)	422	2		
28	박수영(미래통합당)	437	2		
29	이장섭(더불어민주당)	442	2		
30	이규민(더불어민주당)	334	2		
31	산업통상행정자원위원회 행정실	본관542	2		
	합계		62		

* 각 의원실에 2부씩 배부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539호) : 2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실(542호) : 2부

4. RO 환율 입력/수정

수리관청 ⇨ RO 수수료 ⇨ RO 환율 입력/수정

가. 매 분기 1일에 환율 변경 사항을 입력한다(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1일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 그 이후 첫 개장일의 환율 변경 사항을 입력한다.

나. 하나은행 외환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현재환율 ⇨ 일자선택 ⇨ 고시회차 (최초) ⇨ 조회

다. 스위스 프랑 (CHF), 오스트리아 유로화 (EUR), 호주 달러 (AUD), 일본 엔 (100JPY), 싱가포르 달러(SGD) 의 매매기준율을 특허넷에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환율표>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 고시회차 : 1회차 고시시간 : 08시 23분 25초 조회시각 :

통화	현환				송금		T/C 사실때	외화 수표 파실때	매매 기준율	환가 료율	미화 환산율
	사실 때		파실 때		보낼 때	받을 때					
	환율	Spread	환율	Spread							
일본 JPY(100)	1,129.50	1.75	1,090.66	1.75	1,120.95	1,099.21	1,121.18	1,098.69	1,110.08	1.89583	Q 9262
유로 EUR	1,373.55	1.99	1,319.95	1.99	1,360.21	1,333.29	1,366.95	1,332.74	1,346.75	1.49057	1.1237
싱가포르 SGD	877.14	1.99	842.92	1.99	868.63	851.43	Q 00	850.94	860.03	2.32500	Q 7176
호주 AUD	843.67	1.97	811.09	1.97	835.65	819.11	839.79	818.55	827.38	2.50500	Q 6903
스위스 CHF	1,290.44	1.97	1,240.58	1.97	1,278.16	1,252.86	Q 00	1,252.44	1,265.51	1.20760	1.0559

<특허넷 입력 화면>

RO 환율 입력/수정 < RO 수수료 < 수리관청

환율입력 ☒ 입력 ☐ 조회 2020 년 07 월 01 일

입력대상일 : 2020년 09월 04일

국가	매매기준율
스위스 프랑(CHF)	1265 . 51
오스트리아EURO화(EUR)	1346 . 75
호주 달러(AUD)	827 . 38
일본 엔(100JPY)	1110 . 08
싱가포르 달러(SGD)	860 . 03

확인

제 3 편

기 타

1. PCT 체약국 현황
2. WIPO 표준 국명코드 목록
3. PCT 수리관청 주요 기간
4. PCT 국제출원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1. PCT 제약국 현황

< 2026. 6. 현재 158개국 >

PCT Contracting States and Two-letter Codes (158 on 1 April 2026)



[참고] WIPO 홈페이지의 PCT NEWSLETTER 중 PCT Contracting States and Two-letter Codes

2. WIPO 표준 국명코드 목록

< 알파벳 순서로 >

AFGHANISTAN	AF	COSTA RICA	CR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¹⁾ (13)	OA	CÔTE D'IVOIRE	CI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 ⁽¹⁾ (13)	AP	CROATIA	HR
ALBANIA	AL	CUBA	CU
ALGERIA	DZ	CURAÇAO	CW
ANDORRA	AD	CYPRUS	CY
ANGOLA	AO	CZECHIA	CZ
ANGUILLA	AI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P
ANTIGUA AND BARBUDA	AG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D
ARGENTINA	AR	DENMARK	DK
ARMENIA	AM	DJIBOUTI	DJ
ARUBA	AW	DOMINICA	DM
AUSTRALIA	AU	DOMINICAN REPUBLIC	DO
AUSTRIA	AT		
AZERBAIJAN	AZ	ECUADOR	EC
		EGYPT	EG
BAHAMAS	BS	EL SALVADOR	SV
BAHRAIN	BH	EQUATORIAL GUINEA	GQ
BANGLADESH	BD	ERITREA	ER
BARBADOS	BB	ESTONIA	EE
BELARUS	BY	ESWATINI	SZ
BELGIUM	BE	ETHIOPIA	ET
BELIZE	BZ	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¹⁾ (13)	EA
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BOIP) ⁽²⁾ (13)	BX	EUROPEAN UNION ⁽¹⁴⁾	EU
BENIN	BJ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¹³⁾ (14)	EM
BERMUDA	BM	EUROPEAN PATENT OFFICE (EPO) ⁽¹⁾ (13) (14)	EP
BHUTAN	BT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	FALKLAND ISLANDS (MALVINAS)	FK
BONAIRE, SINT EUSTATIUS AND SABA	BQ	FAROE ISLANDS	FO
BOSNIA AND HERZEGOVINA	BA	FIJI	FJ
BOTSWANA	BW	FINLAND	FI
BOUVET ISLAND	BV	FRANCE	FR
BRAZIL	BR		
BRITISH VIRGIN ISLANDS	VG	GABON	GA
		GAMBIA	GM
BRUNEI DARUSSALAM	BN	GEORGIA	GE
BULGARIA	BG	GERMANY ⁽²⁾	DE
BURKINA FASO	BF	GHANA	GH
BURUNDI	BI	GIBRALTAR	GI
		GREECE	GR
CAMBODIA	KH	GREENLAND	GL
CAMEROON	CM	GRENADA	GD
CANADA	CA	GUATEMALA	GT
CABO VERDE	CV	GUERNSEY	GG
CAYMAN ISLANDS	KY	GUINEA	GN
CENTRAL AFRICAN REPUBLIC	CF	GUINEA-BISSAU	GW
CHAD	TD	GULF COOPERATION COUNCIL (see Patent Office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CHILE	CL	GUYANA	GY
CHINA	CN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EUROPEAN UNION) (CPVO) ⁽¹³⁾ (14)	QZ	HAITI	HT
COLOMBIA	CO	HOLY SEE	VA
COMOROS	KM	HONDURAS	HN
CONGO (see Congo, below;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HONG KONG, China	HK
CONGO	CG		
COOK ISLANDS	CK		

HUNGARY	HU
ICELAND	IS
INDIA	IN
INDONESIA	ID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4) (12)}	IB, WO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¹³⁾	XU
IRAN (ISLAMIC REPUBLIC OF)	IR
IRAQ	IQ
IRELAND	IE
ISLE OF MAN	IM
ISRAEL	IL
ITALY	IT
JAMAICA	JM
JAPAN	JP
JERSEY	JE
JORDAN	JO
KAZAKHSTAN	KZ
KENYA	KE
KIRIBATI	KI
KOREA (s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KUWAIT	KW
KYRGYZSTAN	KG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LA
LATVIA	LV
LEBANON	LB
LESOTHO	LS
LIBERIA	LR
LIBYA	LY
LIECHTENSTEIN	LI
LITHUANIA	LT
LUXEMBOURG	LU
MACAO, CHINA	MO
MADAGASCAR	MG
MALAWI	MW
MALAYSIA	MY
MALDIVES	MV
MALI	ML
MALTA	MT
MARSHALL ISLANDS	MH
MAURITANIA	MR
MAURITIUS	MU
MEXICO	MX
MOLDOVA (see Republic of Moldova)	
MONACO	MC
MONGOLIA	MN
MONTENEGRO	ME
MONTSERRAT	MS
MOROCCO	MA
MOZAMBIQUE	MZ
MYANMAR	MM
NAMIBIA	NA
NAURU	NR
NEPAL	NP
NETHERLANDS	NL
NEW ZEALAND	NZ
NICARAGUA	NI
NIGER	NE
NIGERIA	NG

NIUE	NU
NORDIC PATENT INSTITUTE (NPI) ^{(11) (13)}	XN
NORTH MACEDONIA	MK
NORTHERN MARIANA ISLANDS	MP
NORWAY	NO
OMAN	OM
PAKISTAN	PK
PALAU	PW
PANAMA	PA
PAPUA NEW GUINEA	PG
PARAGUAY	PY
PATENT OFFICE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GCC Patent Office) ⁽¹²⁾	GC
PERU	PE
PHILIPPINES	PH
POLAND	PL
PORTUGAL	PT
QATAR	QA
REPUBLIC OF KOREA	KR
REPUBLIC OF MOLDOVA	MD
ROMANIA	RO
RUSSIAN FEDERATION	RU
RWANDA	RW
SAINT HELENA, ASCENSION AND TRISTAN DA CUNHA	SH
SAINT KITTS AND NEVIS	KN
SAINT LUCIA	LC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C
SAMOA	WS
SAN MARINO	SM
SAO TOME AND PRINCIPE	ST
SAUDI ARABIA	SA
SENEGAL	SN
SERBIA	RS
SEYCHELLES	SC
SIERRA LEONE	SL
SINGAPORE	SG
SINT MAARTEN (Dutch part)	SX
SLOVAKIA	SK
SLOVENIA	SI
SOLOMON ISLANDS	SB
SOMALIA	SO
SOUTH AFRICA	ZA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GS
SOUTH SUDAN	SS
SPAIN	ES
SRI LANKA	LK
SUDAN	SD
SURINAME	SR
SWEDEN	SE
SWITZERLAND	CH
SYRIAN ARAB REPUBLIC	SY
TAIWAN PROVINCE OF CHINA	TW
TAJIKISTAN	TJ
TANZANIA (se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HAILAND	TH
TIMOR-LESTE	TL
TOGO	TG
TONGA	TO
TRINIDAD AND TOBAGO	TT

TUNISIA	TN	VANUATU	VU
TÜRKİYE	TR	VATICAN CITY STATE (See Holy See) ..	
TURKMENISTAN	TM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	VE
TURKS AND CAICOS ISLANDS	TC	VIET NAM	VN
TUVALU	TV	VISEGRAD PATENT INSTITUTE (VPI) ⁽¹⁾ ⁽²⁾ ..	XV
UGANDA	UG	WESTERN SAHARA ⁽²⁾	EH
UKRAINE	UA	WORLD INTELLECTUAL PROPERTY	
UNITED ARAB EMIRATES	AE	ORGANIZATION (WIPO)	
UNITED KINGDOM	GB	(INTERNATIONAL BUREAU OF) ⁽⁴⁾ ⁽¹⁾ ⁽²⁾ ..	WO, IB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Z		
UNITED STATES OF AMERICA	US	YEMEN	YE
URUGUAY	UY		
UZBEKISTAN	UZ	ZAMBIA	ZM
		ZIMBABWE	ZW

[참고] WIPO 홈페이지 중 ST.3

3. PCT 수리관청 주요 기간

< 2024. 11. 기준 >

구 분			기 간	비 고	
수 리 관 청	PCT 국제출원		우선권주장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 우선권회복 인정 국가의 경우 1년 2개월	Rule 26bis.3	
	국제출원수수료 납부서		①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1월이내 ② 1월이내 미납시 : 가산료와 함께 1개월연장 － 「납부요구서」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Rule 15.3 Rule 16bis.1	
	우선권 주장 관련	우선권서류 제출서	우선일로부터 17개월이내(공개준비 전 제출가능)	Rule 17.1(a)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우선일로부터 16월이내	Rule 17.1(b)	
		우선권주장 보정서 및 추가서	우선일부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 터 1년 4월과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	Rule 26bis	
	청	번역문	조사용	①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1월이내 ② 1월이내 미제출시 : 가산료와 함께 1월연장 － 「제출(납부)요구서」 발송일로부터 1월이내 또는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Rule 12.3(a)(c)
		보정제출서		「보정요구서」 발송일로부터 2월 이내	Rule 26.2
		누락된 서류의 제출		국제출원 접수일/누락서류 제출 요구일부터 2개월 이내	Rule 20.7(a) 출원일 변경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우선일로부터 26개월 이내	Rule 91.2
		취하서	국제출원 취하	우선일로부터 30월이내 ※ 단 국제공개전 취하를 원할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제출을 권장	Rule 90bis
우선권주장 취하			우선일로부터 30월이내		
지정취하	우선일로부터 30월이내 ※ 주의: KR 자가지정을 취하할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5개월이내 제출해야 선출원이 취하되지 않음				
기타 변경신고 (출원인/대리인, 명칭, 주소 등)		우선일로부터 30월 이내 (단, 수리관청에서는 통상 실무적으로 29월 10일까지 접 수된 건에 대해서 처리함.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국제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토록 안내)	Rule 92bis		

4. PCT 국제출원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 관	역 할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WIPO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관련 (PT01)	34, chemin des Colombettes, Geneva, Switzerland	(41-22) 338-7401	-
	민원안내 (서류제출)		(41-22) 338-8338	-
오스트리아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Dresdner Straß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43-1) 53424-450	(43-1) 53424-200
일본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81-3) 3592-1308	(81-3) 3592- 0659, 6803
호주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61-2) 6222-3626	(61-2) 6283-7999
싱가포르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65) 63 39 86 16	(65) 63 39 02 52

PCT 수리관청 방식심사 매뉴얼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발행일 2026년 6월
- 발행인 총괄 사 무 관 김지원
집필 전 문 관 나양희
집필 주 무 관 광민정
집필 주 무 관 박영민
집필 주 무 관 조승훈
집필 주 무 관 김민국
- 발행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전 화 042-481-8770
- 팩 스 042-472-3473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경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